Ⓔ 03-2016-8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16. Vol. 192 8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메가(Mega) FTA Ⅰ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대두산업 Ⅰ
국가별 농업자료
네팔
국제기구 동향
OECD
해외 농업·농정 동향
세계 농업 브리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편집자문위원

•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수 석** 선임연구위원

• **자문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 상 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 준 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종 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경 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학 균**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정 길**	연 구 위 원	서 울 대 학 교	**임 정 빈**	교 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 경 택**	연 구 위 원	전 남 대 학 교	**김 윤 형**	교 수

Ⓔ 03-2016-8

제 192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16. 8.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은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어 명 근 명예연구위원 myongeor@krei.re.kr TEL 061-820-2364 / FAX 061-820-2407
홍 예 선 연 구 원 hongye0330@krei.re.kr TEL 061-820-2298 / FAX 061-820-2407

목차

1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메가(Mega) FTA Ⅰ

TPP협정 내용과 농업분야 시사점 ····· 안수정 · 이상현 ▌ 9

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대두산업 Ⅰ

주요 대두 수입국들의 수급변화와 관련 정책 ····· 이상현 ▌ 37

3 국가별 농업자료

네팔

네팔의 농업 현황과 정책 ····· 신세린 ▌ 63

4 국제기구 동향

OECD

OECD국가 간 농가 규모 분포 비교 논의 ····· 엄진영 ▌ 101

5 해외 농업·농정 동향 ····· 121

6 세계 농업 브리핑 ····· 135

PART 1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메가(Mega) FTA Ⅰ

TPP협정 내용과 농업분야 시사점 | 안수정 · 이상현

2016년 8월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기획주제로 「**메가(Mega) FTA**」를 선정하고 TPP협정 내용과 농업분야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계농업 HISTORY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직접지불제도** 일본의 직접지불제(1):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성과와 특징 EU 직접지불제: 현황과 개혁을 둘러싼 논쟁들 캐나다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2월	**농업협동조합** 프랑스 브레따뉴 채소협동조합연합 미국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 일본 JA전농의 경제사업 활성화 전략
	3월	**농업보험제도** 미국 작물보험의 유형 및 현황 일본의 농업보험: 농업재해보상제도
	4월	**식량안보** 글로벌 식량위기와 한국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현실적 전략 지수로 본 세계의 식량안보 추이 중국의 식량안보 체계와 시사점 EU의 식량안보 논의와 영국의 식량안보 정책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동향과 시사점
	5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업개발협력** 동남아시아 농업개발 협력의 과제와 발전 전략 캄보디아의 쌀 증산 및 수출 전략 대(對)아프리카 농업 원조의 방향 모잠비크 농업과 비료산업 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6월	**유기농업**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 동향과 발전 전망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동향 주요국의 유기농업정책 추진현황
	7월	**식품안전** 세계 식품안전정책 동향
	8월	**Farmer's Market** EU 농식품 직거래와 파머스마켓 일본 직거래 확대정책과 직매장 운영의 특징 미국 파머스마켓 운영현황과 시사점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9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M농산물 무역동향과 쟁점 분석 세계 GMO 표시제 현황 GMO 표시제 주요 쟁점
	10월	**농촌개발정책** 미국의 농촌개발정책 EU의 농촌개발정책 일본의 농촌진흥정책과 시사점
	11월	**농업의 6차산업화** 일본 6차산업화 정책 동향: 여성농업인 역할을 중심으로 일본 6차산업화 마을별 사례 중국 농업산업화(農業産業化) 정책 개요 중국 농업산업화(農業産業化) 지역사례 연구
	12월	**농식품산업의 국제화 전략** 국제농업협력 강화 과제와 전략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과제와 전략 농식품 수출 활성화 과제와 전략
2014년	1월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미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일본 유기농업 인증제도 중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2월	**농업예산** 일본의 농정개혁과 2014년 농림수산예산 미국 농업예산과 성과 평가
	3월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 동향 일본의 동물복지정책과 사례 국내 동물복지정책 동향
	4월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 정책 동향 미국 식품법의 변화 일본 식품안전 정책 동향 중국 식품안전 정책 현황

ㅁ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4년	5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 동향 미국-EU FTA, TTIP 협상 현황과 전망
	6월	**국제농업개발협력** 유럽 주요 공여국의 농업 ODA 체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사업 추진체계와 전략 미국의 농업부문 ODA 현황과 사례
	7월	**협동조합금융** 독일 협동조합 금융 네덜란드 협동조합은행 라보뱅크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행의 농업부문 정책 및 동향 일본 협동조합 금융
	8월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의 배경과 개요 EU CAP 개혁 주요 배경과 개요 일본 농정개혁 배경과 특징
	9월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EU CAP 개혁의 주요 내용 일본 경영안정정책의 내용과 특징
	10월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의 작물보험과 긴급재해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U CAP 직불제 개혁의 주요 내용 일본의 새로운 농업보호와 다원적 기능 직불제
	11월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 환경보전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 주요내용 일본의 6차산업화 추진과 특징
	12월	**농업법** 2014년 미국 新농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정책시사점 EU 2014~2020 CAP의 특징과 평가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와 시사점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월	**농업 R&D 정책 및 예산** 미국의 정부 농업 연구개발과 보급체계
	2월	**농산물수출진흥정책** 미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일본 농산물 수출추진체제 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동향 및 개선 과제
	3월	**토양정보·농산물수출진흥정책** FAO의 세계토양정보 구축과 대응 중국 농산물수출의 특징과 지원 정책
	4월	**농업혁신시스템** 농업혁신을 위한 국제농업연구협력 현황
	5월	**선진가축방역체계** EU 가축방역체계 : 네덜란드, 덴마크, 국제수역사무국 일본 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6월	**도시농업** 일본 도시농업진흥기본법 제정의 의의 미국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
	7월	**식생활교육** 주요 선진국의 식생활교육 현황과 시사점 식품 선호도 형성에 따른 효과적인 식생활교육 방안 친환경 식생활과 식생활교육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식생활교육 현황과 향후 과제
	8월	**REDD+** REDD+ 체제 구축과 이행 인도네시아 롬복 REDD+ 연구의 성과와 경험 한국의 REDD+ 시범사업 추진현황
	9월	**토양과 농업** 일본의 토양관리제도 캐나다의 토양환경정책 독일의 토양환경정책
	10월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세계 주요국의 농업·농촌 에너지 정책 세계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11월	**협동조합 I** 세계 협동조합의 동향 펠레르보 연합 116년 역사, 핀란드 협동조합의 도전과 혁신 카자흐스탄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2월	**협동조합 II** 이탈리아 농업 협동조합에 관한 통계와 사례 일본종합농협: 지역 협동조합의 모델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과 사례
2016년	1월	**스마트농업** 해외 스마트농업 사례 일본의 스마트농업 현황 한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주요 과제
	2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경제부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속의 농업 SDGs와 농업부문 성과평가 및 쟁점 SDGs와 농업개발: 식량안보와 포용적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3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환경부문** SDGs 농업·환경 연관 목표 이행방안 SDGs와 기후변화 대응: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4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사회개발부문** SDGs와 농촌개발 현황 및 시사점 SDGs와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방향과 전략
	5월	**식품표시제도** 미국의 식품영양표시제도 개정안 논의 동향 유럽연합의 식품표시제도 일본의 식품표시제도 특징 및 시사점
	6월	**도시농업 I** 일본의 도시농업과 관련 기술 동향 싱가포르의 도시농업 현황과 정책 쿠바의 도시농업
	7월	**도시농업 II** 독일의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영국의 도시농업과 시사점 해외 도시양봉의 현황과 사례

세계농업「해외농업농정포커스」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4

TPP협정 내용과 농업분야 시사점 *

안 수 정·이 상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부연구위원)

1. TPP 추진 배경 및 과정

2015년 10월 5일,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타결되었다. TPP는 오랫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와는 달리, 다양한 지역과 경제규모의 국가들이 모여 단일경제권 형성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TPP 회원국들의 교역량은 세계 총 교역량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지 않은 TPP 회원국 간의 관세철폐효과는 역내국의 무역시장과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TPP 타결에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처음 TPP 협상이 출범하였을 때 미국은 협상 회원국이 아니었다. TPP협상의 시초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2005년 6월에 개시한 “Pacific 4(P4)” 협정이 발전되면서 TPP가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P4 협정은 발효 1년차부터 회원국 간에 90%의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P4 협정은 2006년 5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 (crystalism14@krei.re.kr), (shlee@krei.re.kr). 본고는 이상현 외(2015)의 '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연구를 상당부문 발췌 및 요약하고, 일본의 TPP 대응방안과 최근 정보는 업데이트한 것임.

칠레, 브루나이 4개국만의 무역협정으로 발효되었다.

발효 3년 차쯤 접어들었을 때, P4 국가만의 무역협정은 미국의 참여로 흐름이 바뀌게 된다. 당시 미국과 함께 호주와 페루가 P4 국가와 FTA를 맺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TPP로 명칭이 바뀌고, 2010년 3월에는 베트남까지 합류하면서, P4 국가와 새롭게 협상에 참가한 4개국의 TPP 협상이 시작된다. 같은 해 10월에 개최된 협상에서 말레이시아가, 2012년 10월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TPP 협상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일본이 TPP 협정의 마지막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지금의 TPP 회원국의 구성을 갖추게 된다. 12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TPP는 2015년 10월 5일자로 타결되었다.

그림 1 TPP 협정 회원국

자료: (http://www.inboundlogistics.com/cms/article/global-logistics-december-2015/).

미국의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어왔던 TPP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적인 측면까지 고려된 다자간 무역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TPP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미국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일본을 영입하며 세계 경제에서 TPP의 영향력을 강화시켰고, TPP는 성공적으로 타결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미국의 견제대상인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위해 ASEAN+6(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TPP 협정문 구성 및 주요내용

TPP 협정문은 협상 타결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5년 11월 5일에 공개되었다. 협정문의 본문은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도 전문, 부속서, 관련기구와 함께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 결과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표 1 참조>. TPP 협정문은 아직까지 각 국가에서 TPP 협정문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거의 완성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TPP는 우리나라의 기 체결 FTA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미 FTA와 비교해보았을 때, 시장접근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관세 자유화가 이루어졌지만, 규범 측면에서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강화와 경쟁력 및 비즈니스원활화, 개발, 중소기업, 규제통합에 대한 새로운 규범들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TPP 협정의 기본 목표는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과 투명성 강화이며, 협정문의 규범 분야에는 WTO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들이 포함되었다. WTO를 통해 불공정한 교역환경 개선을 위해 논의되었던 의제들이 TPP에 반영되면서 향후에 TPP의 규범 내용이 글로벌 규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게 TPP의 규범 분야는 시장접근 분야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TPP 참여 희망국들은 협상에 앞서 국내 관련 규범들을 TPP 수준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PP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설립 조항 및 일반 정의, 시장접근 분야와 각종 규범, 예외조항, 최종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조항 및 일반 정의(제 1장)에서는 TPP 협정과 다른 협정과의 관계와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고, 시장접근 분야(제 2장)에서는 역내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 및 인하 방식과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규범 분야 중 원산지 규정(제 3장)은 TPP 역내산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 및 증명, 검증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TPP 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및 공정에 대해 원산지 누적이 적용되며 역내산 상품으로 인정

되어 TPP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역내 산업의 분업화와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제 5장)는 상품의 통관절차와 관세 등 통관 관련 규범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무역구제(제 6장)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상계관세에 대한 투명한 이용절차를 담고 있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제 7장)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와 동시에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검역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제 8장)에서는 각 회원국의 기술 규정과 표준이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두 분야는 무역장벽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무역장벽이 완화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제 17장)에서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영기업 혹은 지정독점이 보조금을 받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으로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새로 추가된 5개의 규범관련 장은 다자간 협정의 특성상 추가된 내용으로, TPP 회원국 및 전 세계적인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협력 및 역량강화(제21장)는 다양한 경제수준의 국가들이 TPP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TPP 협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경쟁력 및 비즈니스 원활화(제 22장)는 각 회원국과 아태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매커니즘을 담고 있다. 개발(제 23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여성의 경제 개발 참여, 교육 및 과학기술 등 경제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제 24장)은 회원국이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지원을 강화하고 서류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수출과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TPP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통합(제 25장)은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회원국 국내에서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섬유 및 의류(제 4장), 투자(제 9장), 국경 간 서비스공급(제 10장), 금융서비스(제 11장), 기업인의 일시입국(제 12장), 통신(제 13장), 전자상거래(제 14장), 정부조달(제 15장), 경쟁(제 16장), 지식재산권(제 18장), 노동(제 19장), 환경(제 20장), 투명성 및 반부패(제 26장), 행정 및 제도규정(제 27장), 분쟁해결(제 28장), 예외조항(제 29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규정(제 30장)에는 TPP 발효, 개정, 가입, 탈퇴 등에 대한 절차내용을 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신규 국가가 가입을 요청할

경우 작업반을 설치하여 가입조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TPP의 발효는 모든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에 발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서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는 GDP 합계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 회원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국가들 사이에서 발효되도록 하고 있다.[1)]

표 1 TPP 협정문의 구성

장	내용	장	내용
전문		제 18장	지적재산권
제 1장	설립 조항 및 일반 정의	제 19장	노동
제 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20장	환경
제 3장	원산지 규정 및 절차	제 21장	협력 및 역량강화
제 4장	섬유 및 의류	제 22장	경쟁력 및 비즈니스원활화
제 5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 23장	개발
제 6장	무역구제	제 24장	중소기업
제 7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제 25장	규제통합
제 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제 26장	투명성 및 반부패
제 9장	투자	제 27장	행정 및 제도규정
제 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 28장	분쟁해결
제 11장	금융서비스	제 29장	예외조항
제 12장	비즈니스 목적의 일시적 입국	제 30장	최종규정
제 13장	전기통신	부속서 Ⅰ& Ⅱ	비합치조치
제 14장	전자상거래	부속서 Ⅲ	금융서비스
제 15장	정부조달	부속서 Ⅳ	국영기업
제 16장	경쟁정책	관련기구	
제 17장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미국-일본 양자 간 협상 결과	※ 미국: 일본 자동차 무역 비관세 조치 ※ 일본: 비관세조치 병렬 협상

자료: 이상현 외(2015).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1) 산업통상자원부(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보도참고자료. 2015.11.06.

3. 농업분야 타결내용

TPP 협정문 내 농업분야의 내용을 보면, 규범은 기존 WTO 규범 대비 높은 수준으로, 시장접근 분야는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규범분야는 TPP 협정 내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시장접근 분야는 개별국의 협상결과에 따라 각 품목의 관세 수준과 감축 일정에 차이가 있다. 본 장에서는 농업관련 규범분야와 TPP 회원국 중 미국과 일본의 시장접근분야 타결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규범분야 타결내용

TPP 협정문 내 농업관련 규범내용은 농산물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 TRQ 관리방식,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협정문 제 2장 21조에서는 역내 회원국 간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 보조금은 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수출보조금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작용되는 조치를 새롭게 도입할 수 없으며, 기존 제도에 대한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신용(Export Credits),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s) 또는 수출보험(Insurance Programmes)에 대해 다자간 협상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수출경쟁에 관한 내용인 만큼, 투명성 및 상환기간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규율을 개발해 나가는데 WTO와 공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 2장 22조). 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규범도 WTO와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 승인에 대한 무역 왜곡제한요소 제거, WTO 회원국 중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영향력 있는 국영무역기업에 직간접적인 특혜 금융제도 철폐, 수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및 유지 관련 투명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제 2장 23조).

협정문 제 2장 28조부터 32조까지 TRQ 관리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범위 및 일반조항, 관리 및 자격요건, 할당, 회수 및 재할당에 대한 규정과 마지막으로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은 TRQ를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해야하며, TRQ를 운영하는 회원국은 TRQ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소 90일 전까지 지정된 웹사이트에 공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원국은 기본적으로 TPP 협정문의 부속서 2-D에 규정되어있는 내용 이외의 새로운 조건이나 자격요건을 수입품에

부과할 수 없으나,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시행 45일 전에 다른 회원국들에게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새로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이해당사국과의 합의를 얻고, 다른 회원국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하며, TRQ 운영 담당기관, 각 국의 TRQ 물량, 수입권자 정보, 이행률 등에 대한 정보를 지정된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TPP 규범분야에서는 회원국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3.2. 주요국의 시장접근분야 타결내용

TPP 협상은 12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별국가들의 상품양허협상이 진행되어야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각 회원국별로 자국에 민감한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유형을 더 세분화하였으며, <표 2>의 각국의 즉시철폐 이외 세번 비중을 통해 민감성을 보이고 있는 부류의 품목을 알 수 있다. TPP 12개 회원국 중 농산물 세번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과 일본으로, 다른 회원국보다 복잡한 관세 구조를 갖고 있다. 그 중 미국은 개별 회원국마다 양허수준을 다르게 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민감성을 확보하였고 일본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TRQ와 특정국가에 제공되는 TRQ를 구분하여 부여하는 방식으로 타결하였다.

표 2 TPP 회원국의 즉시철폐 이외 세번 비중

단위: %

HS2	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총세번수	700	1103	1328	1067	1593	1166	1093	974	919	1112	1707	1143
01류	산동물	3.1	3.4	2.4	2.5	3.3	3.8	5	2.3	3.5	3.3	1.6	3.3
02류	육류	8.3	6.3	7.9	7.2	7.1	5.5	7.2	6.5	7.3	6.2	5.8	6.1
04류	낙농품	4.1	4.3	6.6	5.5	4.5	5.1	4.7	3.5	5.1	4.3	14.7	4.8
05류	기타동물성생산품	2.3	2.8	1.2	2.2	2.1	1.4	2.7	1.5	2.6	2.8	1.2	2.7
06류	산수목·꽃	2.3	2.4	2	2.8	1.3	1.7	6.4	2	2.6	2.3	1.8	2.3
07류	채소	8.9	8.4	10.8	8.2	7.2	6.9	8.1	7.1	8.9	8.4	9.8	8.2
08류	과실·견과류	7.9	6.6	6.8	10.3	5.9	7.8	6.8	6.3	8.9	6.6	7	6.4
09류	커피·향신료	4.4	4.4	3.5	3.1	4.5	3.2	3.3	4.8	4.1	4.4	2.8	4.3
10류	곡물	2.3	2.3	1.6	1.9	1.9	1.8	2.4	1.6	3.9	2.2	1.2	2.3
11류	밀가루·전분	4	3.7	4.5	2.7	3.6	3	3.4	3.5	3.5	3.4	2.2	3.4

2) 이상현 외(2015), USTR(ustr.gov/tpp/).

(계속)

HS2	국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총세번수	700	1103	1328	1067	1593	1166	1093	974	919	1112	1707	1143
12류	채유용종자·인삼	5.4	5.5	3.5	7.2	4.5	4.5	8.2	4	7	5.5	3.2	5.5
13류	식물성엑스	1.6	1.7	0.8	1.1	1.3	0.9	3.4	1	2	1.7	0.8	1.7
14류	기타식물성생산품	0.7	0.8	0.4	0.7	1	0.7	0.8	0.5	0.9	0.6	0.6	0.6
15류	동·식물성유지	6.6	13.6	4.8	5.6	5.4	14.2	6.3	6	7	13.5	3.9	13.2
16류	육·어류조제품	3.7	5.3	5.9	9.4	6.2	6.6	4	7.2	4.4	5.3	5.2	5.2
17류	당류·설탕과자	2.4	2.5	3	2.7	3	2.7	2.6	2	3	2.5	3.9	3
18류	코코아	1.6	2.1	1.3	1.9	1.7	1.1	1.1	1.1	2	1.4	4.6	1.4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9	3.8	11.3	2.7	7	4.5	2.7	2.9	2.6	4	4.1	4.5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8.6	6.3	6.8	8.8	15.9	14.2	7.8	13.2	7.9	6.6	10.8	6.4
21류	기타조제식료품	2.6	3.8	3.4	2.7	5.7	2.9	3.5	5.3	4	4	5.2	4.1
22류	음료·주류·식초	11.3	5.1	7.3	5.2	3.5	3.5	4.7	12.6	4	5.3	4.3	5.2
23류	조제사료	3.3	2.8	3.1	4.1	2.6	2.5	3.6	2.8	3.5	3	2.1	2.9
24류	연초	1.9	2	1.2	1.3	0.7	1.6	1.3	2.4	1.3	2.6	3.3	2.5

자료: 이상현 외(2015).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을 재가공함.

3.2.1. 미국

미국의 농산물 관세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이며, TPP 회원국 중 가장 많은 1,707개의 세번을 갖고 있다. 이 중 기존에 관세가 0%인 세번은 330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19.3%에 해당된다. TPP 협상에서도 미국은 대부분의 회원국과 달리 개별국과 복잡한 형태로 양허안을 체결하였다. TPP 발효 시, 미국의 전체 농산물 중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42.8%에 해당되는 730개 세번이며, 나머지 977개 세번은 회원국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국가별로 다른 양허안을 채택하였다<표 3 참조>. 특히, 낙농품, 채소·과실의 조제품, 채소, 기타 조제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보이며, 회원국들의 철폐 기간에 대해 차등을 두었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낙농품과 설탕을 주로 생산하는 국가들에게 TRQ를 제공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였다.

미국의 양허안 중 낙농품은 251개의 세번 중 즉시 철폐 세번은 13개에 불과하고, 24류 품목 중 가장 많은 238개의 세번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어 자국의 산업에 민감한 품목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낙농품에 대한 자국의 민감도를 반영하여 TPP회원국 중 낙농품 강대국인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페루에 대해 단계적인 관세 철폐 일정과 TRQ를 부여하였다. 미국의 호주에 대한 양허안을 살펴보면, 251개의 낙농품 세번

중 23개 세번(9.2%)은 미·호주 FTA 양허안을 따르고, 77개의 세번에 대해 TRQ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TRQ가 부여된 품목에는 크림과 아이스크림, 농축우유, 버터, 분유, 기타 낙농품, 치즈(미국타입, 체다, 스위스 타입, 유럽타입) 등이 있다. 미국의 캐나다 대한 양허안을 살펴보면, 77개의 세번에 대해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품목으로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요구르트(건조), 사워크림, 유장, 우유가공품, 농축우유, 크림, 아이스크림, 우유음료, 버터 등이 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양허안을 살펴보면, 즉시 철폐, 5년 철폐, 10년 철폐, 15년 철폐, 20년 철폐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좀 더 세분화된 철폐 기간을 설정하였다. 일본은 전체 낙농품 세번 중 13개 세번(0.1%)만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고, 22개 세번은 5년 철폐, 141개 세번은 10년 철폐, 42개 세번은 15년 철폐, 33개 세번은 20년 철폐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TRQ를 부여한 품목은 없다. 이 중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은 분유, 농축크림, 유장, 치즈 등(15년 철폐)과 농축우유, 사워크림, 치즈(미국타입, 스위스타입, 유럽타입 등), 아이스크림, 버터 대용품 등(20년 철폐)이다.

미국의 뉴질랜드에 대한 양허안을 살펴보면, 주요 낙농품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철폐하지 않는 품목은 5개에 불과하며, 77개의 품목에 대해서 TRQ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양허안을 체결하였다. 뉴질랜드에게 제공된 TRQ 품목은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농축우유, 크림, 버터와 버터대용품, 유기농버터, 기타 낙농품 등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페루에 대한 양허안을 살펴보면, 낙농품 중 16개 세번에 대해 미·페루 FTA 양허안을 준수하기로 하였고, 62개 세번에 대해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국가마다 다른 방식의 양허안을 설정함으로써 미국은 국내 낙농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늦추고, 그 기간 동안 국내 낙농품 업계의 발전방향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낙농품뿐만 아니라, 채소·과실의 조제품, 채소, 기타조제식료품, 코코아, 당류·설탕과자, 육·어류 조제품, 육류, 과실·견과류 등도 즉시 철폐되지 않는 많은 세번 설정을 통해 미국의 민감성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TPP 협정문 내 미국의 농산물 양허결과

품목		MFN 평균 관세율 (%)	양허안		세번 합계	세번 비중 (%)
			즉시철폐 세번 수	즉시철폐 외 세번 수		
01류	산동물	1.1	26	1	27	1.6
02류	육류	6.1	56	43	99	5.8
04류	낙농품	12.4	13	238	251	14.7
05류	기타동물성생산품	0.6	20	1	21	1.2
06류	산수목·꽃	3.2	21	9	30	1.8
07류	채소	9.0	83	84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78	41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6	2	48	2.8
10류	곡물	2.2	15	6	21	1.2
11류	밀가루·전분	4.2	29	9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0	5	55	3.2
13류	식물성엑스	0.8	12	1	13	0.8
14류	기타식물성생산품	1.3	11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34	33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43	46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8	58	66	3.9
18류	코코아	5.8	11	67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15	55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61	123	184	10.8
21류	기타조제식료품	7.8	12	77	89	5.2
22류	음료·주류·식초	1.4	39	34	73	4.3
23류	조제사료	1.8	27	8	35	2.1
24류	연초	90.7	20	36	56	3.3
합계 (비중)		9.1	730	977	1,707	100
			(42.8)	(57.2)		

자료: 이상현 외(2015).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3.2.2. 일본

일본은 TPP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농산물 세번이 많은 국가로, 1,593개의 세번을 갖고 있다. 일본의 관세구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가운데, TPP 농업협상에서도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양허하였다. 미국은 국가

별로 다른 관세 감축 일정의 양허안을 체결한 반면, 일본은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13개 유형으로 양허하였다고 볼 수 있다<표 4 참조>. 하지만 13개의 양허 유형을 더욱 세분화해 살펴보면 총 62개의 양허방식을 채택하였고, 50개 세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르게 양허하였다. 일본의 즉시철폐 세번은 총 784개 세번으로 전체 세번의 49.2%를 차지하고 있고, 4년 철폐부터 10년 철폐까지의 세번은 총 301개로, 전체 세번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11년 철폐부터 21년 철폐까지 세번은 총 243개로, 전체 세번의 15.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일본의 양허안은 계절관세(0.1%)와 부분감축 세번(6.2%), TRQ(7.2%), 국가별로 다른 양허안(3.1%)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양허안에서 주목할 만한 품목은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감축하는 세번으로, 총 99개의 세번이 있다. 부분 감축 세번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밀크와 크림, 요구르트(기타), 유장(기타,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에 사용되는 것), 아이스크림 등이 해당되며, 일본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품목들임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다른 양허안을 채택한 세번은 총 50개로, 낙농품, 곡물, 밀가루·전분, 당류·설탕과자, 곡물·곡분의 조제품, 기타 조제식료품 등이며, 해당 세번들은 모두 일본의 주요 민감 품목이다. 일본은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에 대해서만 품목별로 추가적인 관세혜택이나 TRQ를 제공하고, 다른 TPP 회원국에 대해 민감 품목의 개방을 막음으로써, 자국의 민감 품목을 최대한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TRQ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TRQ와 특정 회원국에 적용되는 TRQ가 있다. 모든 회원국에 제공되는 TRQ는 총 33개 품목으로, 밀, 면류(우동, 소바), 베이커리조제식품, 빵가루, 보리, 천연치즈(체더치즈원료), 버터, 탈지분유, 식용기름(지방과 식용유), 커피, 초콜릿, 설탕 등이다. 특정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TRQ는 총 25개 항목으로, 쌀,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밀, 맥아, 가공치즈, 유장, 포도당과 과당, 옥수수와 감자전분 등이며, 품목에 따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에만 적용된다.

부분감축과 국가별로 다른 감축 일정, TRQ를 통해 일본의 쌀, 밀/보리, 쇠고기/돼지고기, 낙농품, 가당 조제품(설탕) 등 5대 민감 품목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쌀은 미국과 호주에 대해서만 TRQ를 설정하였다. 미국은 TPP 발효와 동시에 5만 톤의 TRQ를 부여받고, 13년차에는 최대 7만 톤까지 증량하기로 하였고, 호주는 발효 즉시 6,000톤에서 13년차에 8,400톤까지 증량하기로 하였다. 밀과

보리에 대해서는 현행 국영무역제도를 유지하면서 각각 25만 3,000톤과 6만 5,000톤의 TRQ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쇠고기는 발효와 동시에 현행관세 38.5%를 27.5%로 감축하고, 16년에 걸쳐 9%까지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돼지고기는 품질에 따라 다른 관세를 적용하며 수입가격과 국내 기준 수입가격과의 차액을 관세로 징수하는 차액관세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낙농품은 품목별로 다른 관세방식을 설정하였으며, 숙성치즈는 16년에 걸쳐 철폐, 블루치즈는 11년차까지 현행관세의 50%를 감축하고, 가공치즈에 대해서는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민감 품목인 가당 조제품에 대해 일본은 9만 6,000톤의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표 4 TPP 협정문 내 일본의 농산물 양허결과

품목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즉시 철폐	4	6	8	9	10	11	13	16	21	계절	부분	TRQ	국가별		
01류	산동물	0.4	46	0	0	0	0	0	0	0	6	0	0	0	0	0	52	3.3
02류	육류	10.4	48	0	3	1	0	8	16	2	5	0	0	30	0	0	113	7.1
04류	낙농품	26.4	3	0	5	1	0	0	7	2	4	1	0	17	23	9	72	4.5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0.3	33	0	0	0	0	0	0	0	0	0	0	0	0	0	33	2.1
06류	산수목·꽃	0.4	21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1.3
07류	채소	5.9	87	1	15	0	0	0	9	0	0	0	0	2	0	0	114	7.2
08류	과실·견과류	7.8	69	0	14	0	0	0	10	0	0	0	1	0	0	0	94	5.9
09류	커피·향신료	3.4	65	0	7	0	0	0	0	0	0	0	0	0	0	0	72	4.5
10류	곡물	2.4	19	0	1	0	0	0	0	0	0	0	0	0	1	9	30	1.9
11류	밀가루·전분	19.5	4	0	16	3	0	0	6	0	0	0	0	0	19	10	58	3.6
12류	채유용종자·인삼	3.0	61	0	0	2	0	0	0	0	0	0	0	8	0	0	71	4.5
13류	식물성엑스	2.9	19	0	1	1	0	0	0	0	0	0	0	0	0	0	21	1.3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3.1	15	0	1	0	0	0	0	0	0	0	0	0	0	0	16	1.0
15류	동식물성유지	3.8	51	2	22	1	1	0	9	0	0	0	0	0	0	0	86	5.4
16류	육·어류조제품	13.2	46	0	9	0	0	0	25	0	19	0	0	0	0	0	99	6.2
17류	당류·설탕과자	16.3	9	2	2	0	0	0	11	0	0	0	0	0	15	9	48	3.0
18류	코코아	57.4	5	0	3	1	0	0	4	0	0	0	0	2	12	0	27	1.7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0.3	2	0	8	4	5	0	33	0	0	0	0	22	26	12	112	7.0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2.6	77	1	108	18	0	0	45	0	0	0	0	2	3	0	254	15.9

(계속)

품목		평균 관세율 (%)	양허안														합계	비중 (%)
			즉시 철폐	4	6	8	9	10	11	13	16	21	계절	부분	TRQ	국가별		
21류	기타조제식료품	17.7	24	1	17	1	0	0	14	0	0	1	0	16	16	1	91	5.7
22류	음료·주류·식초	5.3	34	2	5	5	0	0	10	0	0	0	0	0	0	0	56	3.5
23류	조제사료	0.5	39	0	3	0	0	0	0	0	0	0	0	0	0	0	42	2.6
24류	연초	5.1	7	0	0	0	0	0	4	0	0	0	0	0	0	0	11	0.7
합계 (비중)		12.9	784	9	240	38	6	8	203	4	34	2	1	99	115	50	1593	100
			(49.2)	(0.6)	(15.1)	(2.4)	(0.4)	(0.5)	(12.7)	(0.3)	(2.1)	(0.1)	(0.1)	(6.2)	(7.2)	(3.1)		

자료: 이상현 외(2015).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4. 일본의 TPP 대응방안

일본정부는 TPP가 타결되기 전, 2013년 「농림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시산계산방법」을 통해 TPP 발효 이후 예측되는 19개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율과 생산 감소액을 공개하였다. 동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물의 생산 감소액은 약 3조 엔으로 추정되며, 그 중 쌀은 일본의 농림수산물 중 가장 감소 규모가 큰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쌀 다음으로는 돼지고기, 쇠고기, 우유유제품, 설탕 등의 순으로 생산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전망되었다<표 5 참조>.[3] TPP 타결 후 일본정부는 TPP 협정문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일본의 TPP 정부 대책본부는 2015년 12월 24일자로 TPP 분야별 현황과 경제적 효과 분석자료를 공개하였다.[4] 일본 정부는 TPP 발효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13.6조 엔의 경제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하였다. TPP 타결로 인해 자동차 관련 기계 산업과 철광 및 금속, 화학 산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반면, 농림수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TPP 타결 이후 농림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2020년을 목표로 농림수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 1조 엔의 수출실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공격적인 농림수산업으로의 전환) 방안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책을 제시하였다<그림 2 참조>.

3) TPP政府対策本部(2013). 「(別紙) 農林水産物への影響試算の 計算方法について」.
4) 일본 내각관방 TPP 정부 대책 본부(http://www.cas.go.jp/jp/tpp/kouka/index.html).

표 5 TPP 발효 이후 일본의 주요 농산물 생산 감소 추정(TPP 타결 및 정책 반영 전)

품목	생산량 감소율	생산 감소액	계산방법
쌀	32%	약 1조 100억 엔	국내 생산량의 약 30 %가 수입을 대체, 국내 생산은 남아 있지만,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
밀	99%	약 770억 엔	국내산 밀 100을 판매 기점으로 하고, 밀가루 용 밀을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보리	79%	약 230억 엔	주식용 및 된장용은 그대로, 맥주용, 소주용, 보리차용 등은 대체될 것으로 예상
녹두	23%	약 30억 엔	고급과자용, 콩자반용 등을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팥	71%	약 150억 엔	고급과자용을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땅콩	40%	약 120억 엔	미탈각용은 그대로, 탈각용은 대체될 것으로 예상
설탕	100%	약 1,500억 엔	모두 대체될 것으로 예상
전분 원료 작물	100%	약 220억 엔	모두 대체될 것으로 예상
곤약 감자	–	–	TPP 협상 관계국에서의 수입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을 고려
차	–	–	TPP 협상 관계국에서의 수입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을 고려
가공용 토마토	100%	약 270억 엔	케첩 등 토마토 가공제품은 모두 대체될 것으로 예상
감귤류	8%	약 60억 엔	스트레이트 과즙은 그대로, 농축과즙 및 통조림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사과	8%	약 40억 엔	스트레이트 과즙은 그대로, 농축 과즙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파인애플	80%	약 10억 엔	통조림 대체에 따라 생과용 감소할 것으로 예상
우유·유제품	45%	약 2,900억 엔	신선도가 중시되는 생크림 등을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쇠고기	68%	약 3,600억 엔	3등급 이하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돼지고기	70%	약 4,600억 엔	고급상품을 제외하고 대체될 것으로 예상
닭고기	20%	약 990억 엔	가공용의 절반이 대체될 것으로 예상
계란	17%	약 1,100억 엔	도시락용과 가공용의 절반이 대체될 것으로 예상
농산물 계		약 2조 6,600억 엔	

자료: TPP政府対策本部(2013).「(別紙) 農林水産物への影響試算の 計算方法について」.

첫 번째로, TPP 발효로 수입 농림수산물의 관세 감축에 따른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농림어업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농림어업자의 경영 발전을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일명, 체질 강화 대책이라고도 일컬으며, 일본정부는 미래 농업계를 이끌 수 있는 경영 감각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논(벼), 밭(채소, 과수), 산지(임산물) 등 지역의 강점을 살려 혁신적인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원 계획에는 6차 산업화와 지산지소(地産地消)[5]를 통해 지역 농

업의 수익능력을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축산 및 낙농분야에서 수익 강화 종합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본 프로젝트에는 사료와 농업기계의 가격형성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통한 수익성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쌀, 쇠고기, 과일, 차, 임산물, 수산물 등 일본의 중요 품목들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 확대 방안으로 농가의 자금 50%를 투입하여 판촉 전략을 수립하는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동식물 검역관련 협의를 통해 일본 농림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림 2 일본의 농업분야 TPP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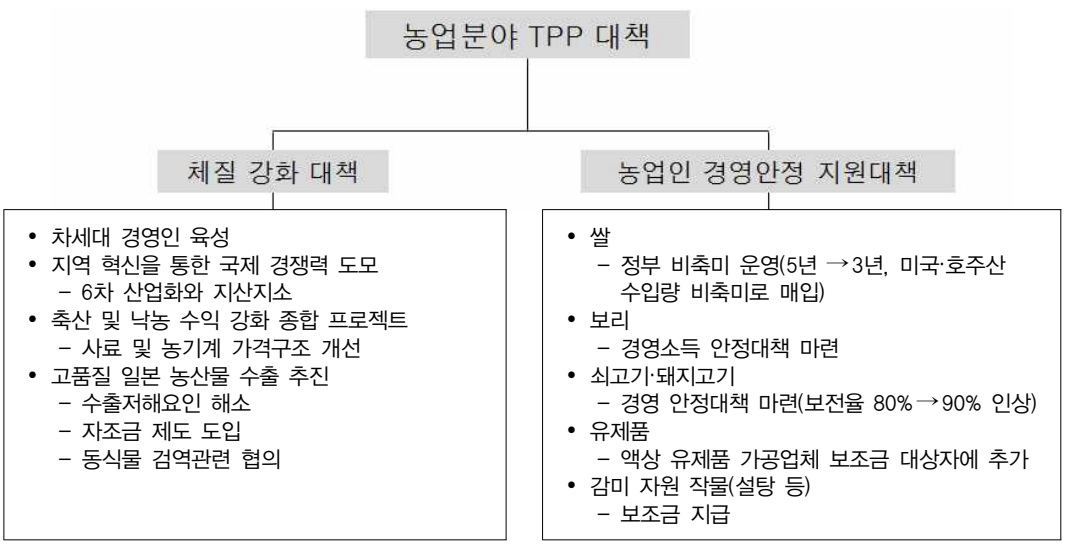

두 번째로 중요 5대 품목에 대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수입 증가분보다 많은 양의 쌀을 정부의 비축미로 매입하여 운영하며, 5년 동안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미국과 호주에서 별도로 수입되는 기준 수입량에 해당하는 쌀을 정부가 비축미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보리와 관련하여, 일본산 보리의 가격 인하 우려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 소득 안정 대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본산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에 대해서는 공급안정화를 위해 육우 비육 경영 안정 특별 대책사업과 양돈 경영 안정 대책사업을 법제

5)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활동을 말함.

화하였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경영 안정대책 사업을 통한 평균 생산비용에 대한 보전 비율을 80%에서 90%로 인상하고, 기존에 육우농가에만 적용되던 보전금에 대한 정부의 부담 수준(정부 3: 생산자 1)을 양돈농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그림 3 참조>. 또한 육우용 송아지에 대한 보증 기준가격을 현재 경영 실정에 맞는 수준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생크림 등의 액상 유제품을 가공하는 우유 생산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감미 자원 작물(설탕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6)]

그림 3 육우 및 양돈 경영 안정대책사업 중 보전비율 및 정부 부담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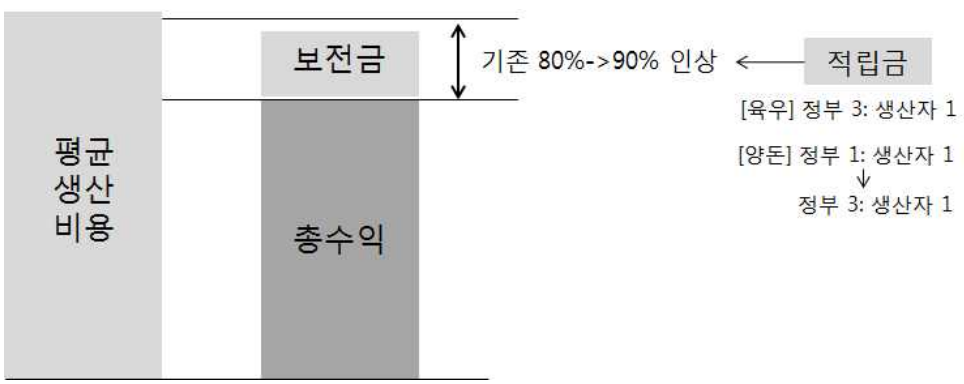

자료: 農林水産省(2016).「農政新時代: 農林水産分野における品目別ＴＰＰ対」.

일본 정부는 TPP에 대한 농림수산업 분야의 대책을 통해 2013년 TPP에 따른 농림수산 분야 영향평가에서 분석되었던 생산 감소 효과를 축소시켜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TPP 타결 이후, 지원정책의 효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통해 TPP가 일본의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피해액이 기존 추정치였던 3조 엔에서 최대 1,516억 엔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표 6 참조>.

6) TPP政府対策本部(2015). TPP分野別ファクトシート:「農林水産分野」.

표 6 TPP 발효 이후 일본의 주요 농산물 생산 감소 추정(TPP 타결 및 정책 반영 후)

품목	생산 감소액	계산방법
쌀	0억 엔	현재 국영무역 수입제도와 TRQ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국영 무역 이외의 수입 증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 국산 밥상용 쌀의 생산량과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밀	약 6억 엔	국영 무역 체제 하에서 TPP 발효 시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밀수입은 국내산의 일부를 대체하겠지만,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소득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보리	약 4억 엔	국영 무역 체제 하에서 TPP 발효 시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보리수입은 국내산의 일부를 대체하겠지만,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소득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설탕	약 52억 엔	설탕 가치 조정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현재 수입되고 있는 태국산 원당의 일부가 TPP 회원국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반면,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소득 안정 대책 등의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전분원료 작물	약 12억 엔	설탕 가치 조정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TRQ는 현행 TRQ와 큰 차이가 없음. 국내산 전분 제조비용 절감 등의 체질 강화 대책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쇠고기	약 311– 약 625억 엔	장기 관세 감축 기간을 확보하고 세이프 가드를 도입함. 국내산 쇠고기 중 일부는 품질과 가격 면에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되는 점 등으로 당분간 수입의 급증이 없을 것으로 전망.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돼지고기	약 169– 약 332억 엔	장기 관세 감축 기간을 확보하고 차액 관세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세이프 가드를 도입함. 콤비네이션 수입(고가 상품에 저가상품 끼워 수입)1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수입 급증은 없을 것으로 전망.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생산과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우유· 유제품	약 198– 약 291억 엔	버터 탈지 분유 등은 현재 TRQ 관세를 유지 한 후, TPP 관세 범위를 설정함. 유청은 장기 관세 철폐 기간 및 세이프 가드를 도입했고, 숙성 치즈 등은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분간 수입 급증은 없을 것으로 전망.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팥	0억 엔	TRQ 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산 팥과의 대체는 없고, TPP 회원국 외 수입이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강낭콩	0억 엔	TRQ 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산 강낭콩과의 대체는 없고, TPP 회원국 외 수입이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땅콩	0억 엔	국산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경쟁국의 큰 품종이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PP 회원국 외 수입이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곤약감자	–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이 미미함.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차	–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이 미미함.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가공용 토마토	약 1억 엔	국산 토마토 주스의 소비가 최근 증가추세인 가운데, 국산 토마토 가공 업체가 계약 재배를 증가시킴으로써, 국산 케첩의 생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계속)

품목	생산 감소액	계산방법
감귤류	약 21– 약 42억 엔	국산 귤은 수입 오렌지와의 가격 차이가 있는 가운데 품질 면에서 차별화되어있고, 국산 감귤 주스도 외국산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사과	약 3– 약 6억 엔	국산 사과는 품질 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산 사과 과즙도 외국산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파인애플	0억 엔	TRQ 제도가 유지됨.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닭고기	약 19– 약 36억 엔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이 미미하고, 용도가 한정되어 있음.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생산과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계란	약 26– 약 53억 엔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이 미미하고, 용도가 한정되어 있음. 체질 강화 대책 및 경영 안정 대책 실시로 생산과 농가 소득이 보장되며 국내 생산량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
농산물 계	약 878– 약 1,516억 엔	

주: 일본은 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차액관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차액관세제도는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을 상회할 경우 종가세를 부과하고,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수입가격과 기준가격 차이만큼을 관세로 징수하는 제도임. 수입업계에서는 저렴한 돼지고기를 수입할 경우 차액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싼 고기와 저렴한 고기를 섞어서 수입(콤비네이션 수입)하여 수입 평균가격이 기준가격과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자료: TPP政府対策本部(2015). 「(別紙) 農林水産物への影響試算の 計算方法について」.

5. 시사점

2015년 10월 오랜 세월 끝에 TPP가 타결되었다. TPP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TPP 협상국들의 큰 이견 차로 협상타결 여부가 불투명하게 전망되었다. 하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던 자동차 부품, 의약품 특허, 낙농품 개방 마지막 이슈들에 대하여 해당 협상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TPP가 타결되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대선후보들이 보호주의 무역을 지지하며 TPP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회 비준을 고려하면 TPP 발효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TPP 가입 희망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TPP 발효가 늦춰지는 것이 오히려 협상을 준비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TPP는 협상 초기에 예외 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모든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일부는 계절관세나 부분감축 형태로 양허하거나 TRQ를 제공하였다. 미국의 경우 회원국 별로 개별협상을 통해 양허

수준을 다르게 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민감성을 확보하였고, 일본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TRQ와 특정국가에 제공되는 TRQ를 구분하고 즉시철폐부터 부분감축 유형까지 13개의 세번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관세를 개방하였으나 TPP 내 회원국 별로 개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TPP 가입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에 대한 개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범분야에서는 기존에 WTO에서 논의되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결과가 있었고, 일부 규범분야에서는 WTO와 공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TPP 가입에 앞서 TPP 가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규범 분야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TPP 수준에 맞춰 조금씩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민감한 농업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TPP 협상을 주도하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에서 민감 품목에 대한 개방을 완전히 방어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TPP 가입에 따른 국내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하였다. 기존에 보호주의 무역을 고수하던 일본은 TPP 협상을 계기로 기존의 입장을 탈피하고 농림수산업분야에서 2020년까지 1조 엔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겠다고 보다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과 같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에 대한 지원율을 인상하는 지원책을 제시하였지만, 체질 강화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일원으로 미래 농업인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TPP 가입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TPP 발효에 따른 국내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분석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5개의 FTA를 성사시킨 FTA 선진국으로서, FTA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 직불제도나 폐업지원 제도 등 FTA로 인한 피해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수입농산물과 농가 경영 환경의 악화로 우리나라의 농업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체질 강화 대책과 같이 농업경영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 수입개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보도참고자료. 2015.11.06.
이상현, 정대희, 안수정(2015).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P2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 11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PP政府対策本部(2013).「(別紙)農林水産物への影響試算の 計算方法について」
TPP政府対策本部(2015).「(別紙)農林水産物への影響試算の 計算方法について」
TPP政府対策本部(2015). TPP分野別ファクトシート:「農林水産分野」
TPP政府對策本部(2015).「總合的なＴＰＰ關連政策大綱.」
農林水産省(2016).「農政新時代: 農林水産分野における品目別ＴＰＰ対」

참고사이트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Participating Countries
(http://www.inboundlogistics.com/cms/article/global-logistics-december-2015/)
USTR (ustr.gov/tpp/)
日本 内閣官房 TPP 政府対策本部 (http://www.cas.go.jp/jp/tpp/kouka/index.html)

PART 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대두산업 I

주요 대두 수입국들의 수급변화와 관련 정책 | 이상현

2016년 8월호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기획주제로 「**대두산업**」을 선정하고, 주요 대두 수입국들의 수급변화와 관련 정책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계농업 HISTORY

ㅁ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와인산업** 세계 와인산업 동향 EU 와인산업 동향 북·남미 와인산업 동향 신흥 와인 생산국의 와인산업 동향
	2월	**전분산업** 세계 전분산업의 동향 세계 전분의 유형별 소비 동향
	3월	**사료산업** 세계 사료산업의 동향과 전망 일본 사료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중국 사료산업의 동향
	4월	**곡물수송** 미국 곡물 수송 전망
	5월	**면화산업** 세계 면화산업 현황 및 전망 중국 면화산업의 동향과 전망 미국 면화산업 동향 브라질 면화 생산과 정책 동향 **곡물수송** 해외농업개발의 현황과 확보곡물의 비상시 해상운송(안) 세계 곡물 유통, 물류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
	6월	**낙농산업** EU의 낙농정책 변화와 영국의 낙농정책 미국 낙농산업 수급 현황 및 자조금제도 구조 호주와 뉴질랜드의 낙농산업 동향 일본 낙농 근대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시사점
	7월	**화훼산업** 네덜란드 화훼산업 현황과 특징 중국 화훼산업 현황 케냐 화훼산업 동향 북미지역 화훼산업 동향
	8월	**유지종자산업** 세계 유지종자산업 동향 브라질 유지종자산업 동향 인도 유지종자산업 동향 미국 유지종자산업 동향

ㅁ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9월	**양돈산업** 미국 양돈산업 동향 중국 양돈산업 동향과 전망 EU 양돈산업 동향 칠레 양돈산업 동향과 시사점 일본 양돈산업 동향
	10월	**담배산업** 세계 담배산업 동향 세계 잎담배 생산 동향 세계 담배가공산업 동향
	11월	**곤충산업** 곤충산업 현황과 전망 농업부문 곤충자원 활용현황과 시사점 중국 곤충산업 동향
	12월	**주류산업** 세계 주류시장 동향 독일 주류시장 동향 미국 주류시장 동향 일본 주류시장 동향 중국 주류시장 동향
2014년	1월	**종자산업** 세계 종자시장 동향과 전망 미국 종자산업 동향 EU 종자산업 동향 일본 종자산업 동향
	2월	**바이오매스** 영국·독일 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 정책 현황 일본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정책 국내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활성화 방안
	3월	**카카오산업** 가나 카카오 생산 동향
	4월	**펄프제지산업** 유럽 펄프제지산업 동향 아시아 펄프제지산업 동향 북미 펄프제지산업 동향

ㅁ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4년	5월	**열대과일산업** 미국 오렌지산업 동향 칠레 포도산업 동향 필리핀 바나나산업 동향
	6월	**양념채소산업** 세계 건고추산업 동향 세계 마늘산업 동향 세계 양파산업 동향
	7월	**양봉산업** 세계 및 국내 양봉산업 동향 호주·뉴질랜드 양봉산업 동향
	8월	**외식산업** 세계 외식산업 현황과 전망 세계 외식산업 성장과 트렌드
	9월	**식품제조업** 세계 식품제조업 동향과 산업구조 주요국 식품제조업 현황과 트렌드
	10월	**제분산업** 세계 제분산업 동향
	11월	**제당산업** 세계 설탕 수급 및 주요국 동향 브라질 설탕 및 에탄올산업 동향 태국 설탕산업 동향
	12월	**유지종자산업** EU 유지종자산업 동향 중국 유지종자산업 동향 아르헨티나 유지종자산업 동향
2015년	1월	**농업기술** 네덜란드 시설원예 산업 동향
	2월	**농기계산업** 세계 농기계 시장의 변화와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

ㅁ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3월	**할랄 · 코셔인증제도** 할랄식품시장의 의의와 동향 코셔인증제도의 개념과 시장 동향
	4월	**천연식물보호제** 천연식물보호제의 특성과 시장 동향
	5월	**난(卵)가공산업** 국내 난가공산업의 문제와 발전방향
	6월	**유기농업** 세계 유기농업 현황과 시사점 유럽 유기농업 현황 아프리카 유기농업 추이와 시사점 아시아 유기농업 동향과 과제
	7월	**버섯종균산업** 중국의 버섯종균산업 현황 미국의 양송이 종균생산 현황
	8월	**비료산업** 세계 비료산업 현황과 전망 일본 비료산업의 가격구조
	9월	**난(卵)가공산업** 세계 난가공산업 현황 미국과 EU의 계란 및 난가공산업
	10월	**낙농업** 네덜란드의 낙농업 현황과 시사점
	11월	**쇠고기산업** 미국의 쇠고기산업 호주의 쇠고기산업과 정책 동향
	12월	**양돈산업** 미국의 양돈산업 동향 일본의 양돈산업과 에코피드 정책 호주의 양돈산업과 정책

ㅁ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양계산업** 세계 양계산업 동향 일본의 양계산업 동향 호주의 양계산업과 주요 정책
	2월	**견과류산업** 세계 견과류 수급 동향 미국의 견과류산업 동향과 전망 터키의 견과류산업
	3월	**베리류산업** 미국의 베리류산업 동향 폴란드의 베리류산업 동향과 관련 정책 일본의 딸기산업과 관련 기술 동향
	4월	**자몽산업** 세계 자몽산업 동향
	5월	**초콜릿산업** 세계 초콜릿산업 동향 스위스의 초콜릿산업
	6월	**차(茶) 산업 I** 스리랑카의 차산업 동향 인도의 차산업 동향과 정책
	7월	**차(茶) 산업 II** 케냐의 차산업 동향 중국의 차산업 동향

세계농업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5

주요 대두 수입국들의 수급변화와 관련 정책*

이 상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2016년은 UN에서 지정한 '콩의 해(International Year of Pulses)'이다. Pulse은 대두(Soybeans)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콩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그 중 대두는 3,000년 전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이후 사료 수요의 급증,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중국의 시장개방, 바이오디젤에 대한 관심 증가로 대두의 세계 수급 여건은 크게 변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이들 지역의 가축 사료로서의 대두박의 수요와 요리 재료로서의 대두유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아시아 국가들의 대두 생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대두는 우리나라에도 식용, 사료용, 가공용으로 널리 소비되는 주요작물인 만큼, 중국, EU, 일본 등 주요 수입국들의 대두 수급변화와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 (shlee@krei.re.kr). 본고는 Lee(2014)의 2장을 중심으로 번역·요약하여 작성하였음.

2. 중국

2.1. 중국의 대두산업 개황

중국은 1995/96년[1)]에 처음 대두시장을 개방하였다. 2001년 중국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두 수입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2001/02년부터 2012/13년 사이의 중국의 대두 수입은 1,000만 톤에서 6,400만 톤으로 약 522%나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중국의 대두 수입의 95% 이상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수입된 대두는 대두박과 대두유 생산에 사용되는데,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두박, 대두유 생산국이다. 중국의 대두박 생산은 국내 대두박 수요를 거의 충족시키기 때문에 대두박의 교역량은 크지 않는 상태이나, 반면 대두유에 대한 국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대두유의 수입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대두유 수입은 2001/02년의 55만 톤에서 2012/13년에 140만 톤으로 약 166% 증가하였다.

중국에서의 최초의 대두 경작이 기원전 11세기 중반 주나라 때 중국의 북동부 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Hymowitz 1990). 대두 생산이 중국의 남부로까지 내려온 것은 1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Smith 2003). 오랜 역사만큼이나 1930년대까지는 중국의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33년 중국과 만주국(일제의 지배를 받던 괴뢰국)에서 생산되는 대두 생산량은 전체 세계 대두생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었다(Shurtleff and Aoyagi 2007b).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 사이 중국내 대두 생산은 중국혁명과 중일전쟁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감소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정부는 집약적 산업화를 추구하고 상대적으로 농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제1차 5개년 경제개발을 시작하였다(Williams 2012). 1950년대에 들어 중국 정부는 농산물 생산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대두 경작지는 크게 증가하였다(Shurtleff and Aoyagi 2007b). 당시 중국내 주요 대두 생산지는 산둥성, 허난성, 헤이룽장성, 안후이성 등 중부 및 동북부 지역이었다(Shurtleff and Aoyagi 2007b).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는 국내 정치적 환경으로 인하여 대두 경작지가 조금씩 감소하였다. 1976년 이후, 곡식작물에 비해 대두를 비롯한 환금작물의 생산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대두 생산 증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면서 대두의 생산 및 경작지는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Shurtleff and Aoyagi 2007b). 1980년대 초의 중국내 대두 생산의 증가는 주로 중부 지역의 허난성, 안후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

1) 작물연도.

국내 전체 대두의 40%는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지린성 등 동북부 지역에서 생산되었다(Shurtleff and Aoyagi 2007b). 198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은 식물성유지와 육류에 대한 국내 소비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에 대두의 연간 소비량은 1984/85년 대비 2011/12년에 6,500만 톤으로 36배가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대두 생산은 경작지 확대에 따라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림 1 중국 대두 수급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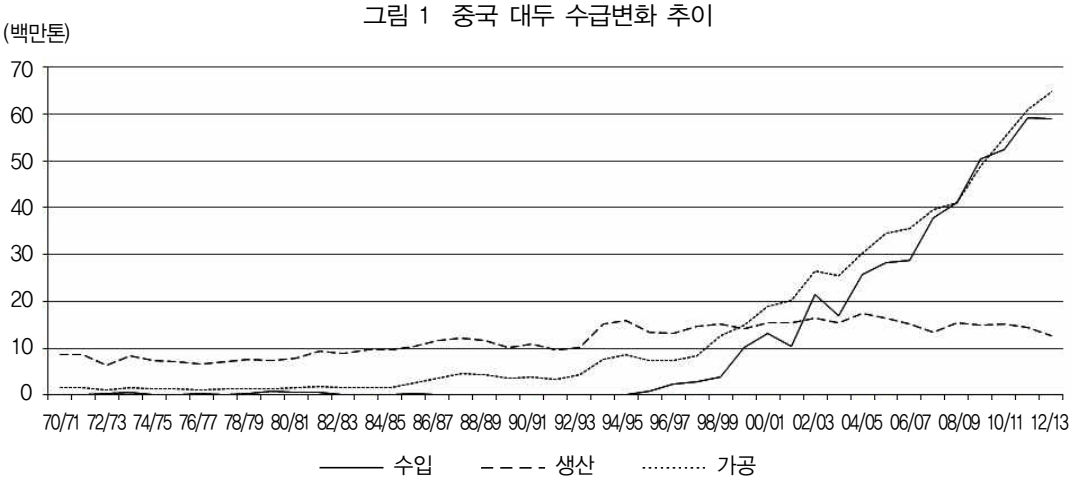

자료: USDA/FAS.2013.

대두 재배면적은 2005/06년에 960만 헥타르까지 이르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정부가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두 경작에 대한 지원을 쌀, 옥수수, 밀 등 곡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대두 재배면적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그림 2 참조>. 최근에도 중국내 대두 생산의 60%정도는 헤이룽장성, 지린성 등의 동북부 지역과 산둥성, 허난성 등의 황하 일대에서 생산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대두 생산국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대두 소비국이기도 하다. 소득 상승, 인구 증가, 도시화는 대두박과 대두유에 대한 소비를 급증시켰다(Tuan et al. 2004). 특히 중국 대두박 수요 급증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사료 생산의 산업화 확산으로 이어졌다(Tuan et al. 2004). 중국의 대두 가공량은 1984/85년에 170만 톤에 불과하였으나 2012/13년에는 6,50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대두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두 가공산업은 80% 정도가 주로 해안지역에 집중되어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대두 가공공장 중 약 절반가량이 산둥성(28.4%), 장쑤성(15.8%), 랴오닝성(5.8%)의 동부해안 및 동북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Meador and Xinping 2013).

그림 2 중국 대두 재배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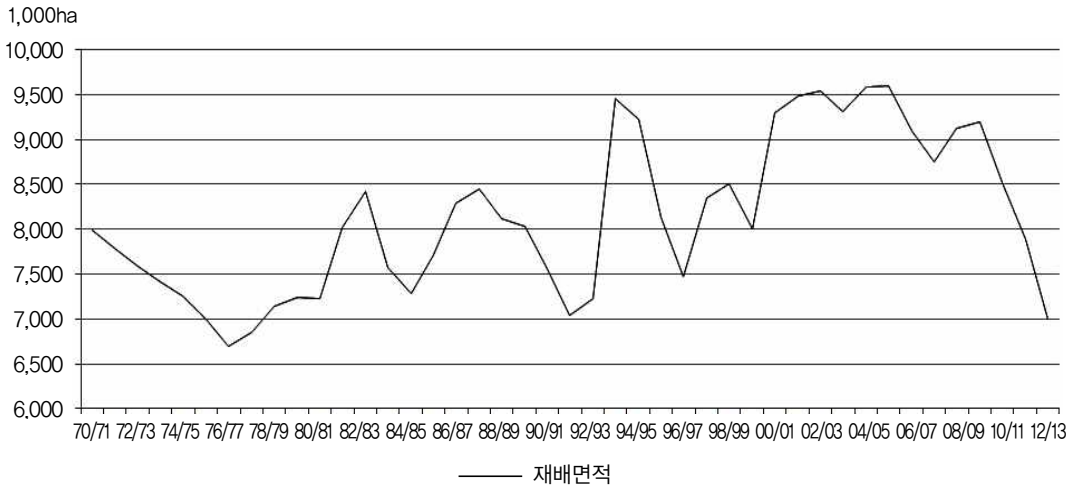

자료: USDA/FAS, 2013.

1980년대 이전까지의 중국내 대두박 생산은 대략 100만 톤에서 150만 톤 정도에 불과하였다<그림 3 참조>. 1990년에 초에 들어서야 대두박 생산이 점차 늘기 시작하였다. 1995/96년부터 1998/99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두박의 생산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중국은 대두박 순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대두박의 생산은 대부분 수입 대두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내 생산되는 대두는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Williams 2012). 중국의 대두박 생산과 소비는 2001/02년에서 2012/13년 사이 각각

그림 3 중국 대두박 수습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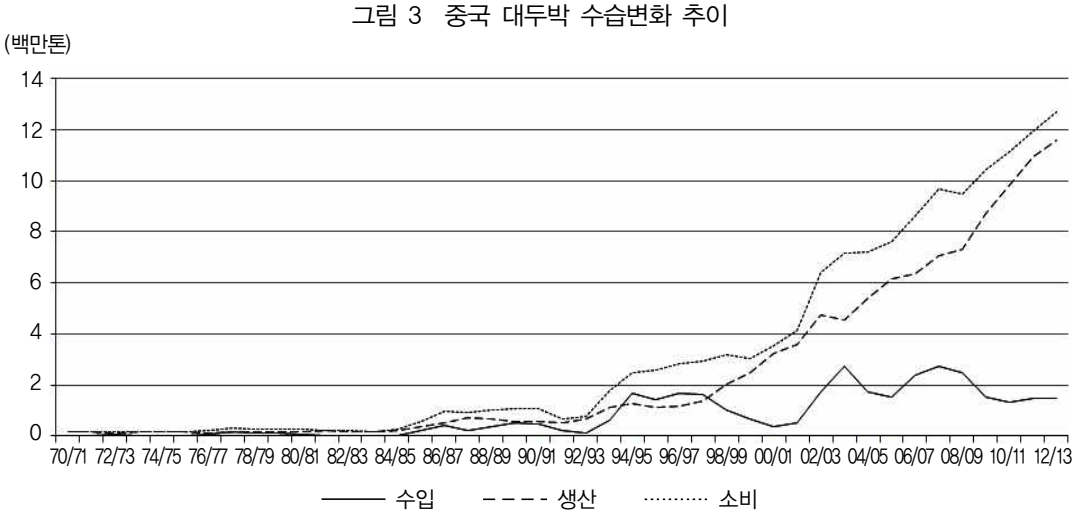

자료: USDA/FAS, 2013.

216%와 229% 성장하였다. 1990년대 후반 중국내 대두 가공능력의 확장은 대두유의 국내생산을 증가시키는 한편, 대두유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0년대 초 사스-코로나 바이러스(SARS)와 조류독감의 유행은 육류 소비를 감소시켰고, 이에 대두박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되었다(Tuan et al. 2004). 대두박의 초과공급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대두가공도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대두유의 공급을 감소시켜 대두유의 수입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12년 기준 중국의 대두유 자급율은 86%수준으로 중국의 대두유 수입은 대두유 생산량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인하여 대두유의 생산과 소비는 2001/02년과 2012/13년 사이에 각각 225%, 203% 증가하였다<그림 4 참조>.

그림 4 중국 대두유 수급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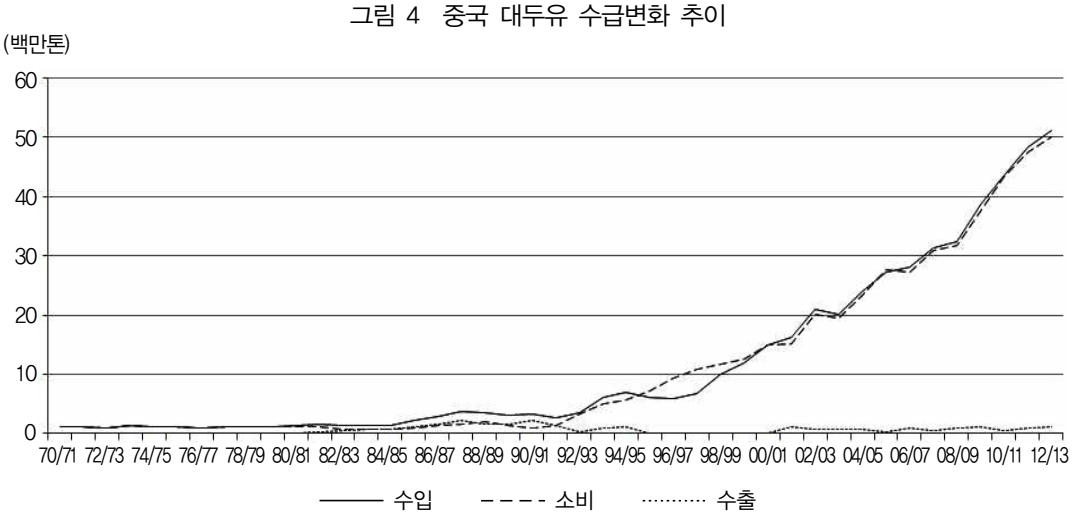

자료: USDA/FAS. 2013.

2.2. 중국의 대두관련 정책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내 대두 재배면적은 1950년대 중국정부의 농업 생산 증진 정책에 힘입어 확장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초에 들어서 중국정부는 곡물 중심의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이에 대두 경작지는 줄어들게 되었다(Williams 2012). 1970년대 말 이후부터 경제부흥정책들을 펼치게 되고 대두 연구에도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자되면서 대두 재배면적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Shurtleff and Aoyagi 2007b).

1994년의 중국의 대두박 수입은 5만 톤에 불과하였으나 이듬해 수입 대두박에 부과되던 13%의 부가가치세를 철폐하면서 대두박 수입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1997/98년

에는 대두박 수입이 420만 톤까지 증가하였다(Tuan et al. 2004). 하지만 대두박 수입의 급증은 가공을 위한 대두 수요를 감소시켰고 따라서 중국내 대두유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1999년부터 수입 대두박에 대해서 13%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하였다(Tuan et al. 2004).

1990년대 중반, 중국 정부는 대두 수입관세와 대두박 수입관세를 각각 3%, 5%로 감축시켰다. WTO 가입 이전에 중국은 대두유에 대해서 수입 쿼터와 수입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1999년 미국과의 포괄적양자무역협정에 따라 중국은 대두유에 대해서 저율관세할당(TRQ)를 도입하였고, 2000년에 170만 톤이었던 TRQ는 2005년에 330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은 쿼터외 물량에 대한 관세를 2000년 74%에서 2005년 9%으로 감축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대두유 수입을 증가시켰다. 2006년에 들어서는 독점적 교역권과 TRQ를 철폐함에 따라 대두유에 대한 교역이 자유화되었다.

중국은 WTO 가입에 맞춰 유전자변형대두를 함유한 대두유에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대두의 수입안전증명서 취득에 대한 승인절차를 도입하고, 유전자변형대두의 수입마다 개별적으로 수입안전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농업 GMO 안전성 관리규제 2001(Agricultural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Safety Administration Regulations 2001)를 도입하였다(Tuan et al. 2004). 2002년에는 유전자변형대두의 수입에 과한 검사 절차와 규칙 등을 공표하였다(Song et al. 2006). 중국 정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04년에 몬산토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의 수입에 관한 수입안전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3. 중국 대두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요소

중국 국내에서 생산된 대두와 수입 대두 간의 가격 격차의 심화는 남부해변 지역에 위치한 가공회사들에 비하여 대두 생산지에 인접해있는 내륙의 가공회사들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대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향후 중국내 대두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 대두 농가의 경쟁력도 제한된 경작지와 낮은 단수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Meador and Xinping 2011). 특히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중국내 대두 경작은 보다 수익성이 높은 곡물 경작으로 지속적으로 대체되고 있어 중국내 대두 생산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일본

3.1. 일본의 대두산업 개황

대두는 수세기 동안 일본의 주요 작물로 재배되어왔다. 대두는 된장, 간장, 두부, 나토 등의 재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본의 전통요리에도 이용되어왔다. 일본에서 대두는 기원전 300년경인 야요이 시대에 처음 경작되었다(Takahashi 2009). 이후 1192년에서 1333년까지인 카마쿠라 시대에 대두 경작이 일본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카마쿠라 시대에는 불교의 성황에 따라 육류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었고, 단백질의 주공급원으로서 대두가 각광받게 되었다. 일본의 대두 가공은 수십 년 동안 수입산 대두에 의존해왔다. 1930년에서 1940년대 사이 전체 대두 가공량에서 일본에서 생산된 대두의 비중은 30~3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만주국으로부터 수입된 대두가 차지하였다(Nakamura 1961).

일본의 대두 경작면적은 1940년대 후반에 40만 헥타르를 넘으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애초 일본에서 대두는 주로 전통요리에 사용되었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 대두를 대두박과 대두유 생산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Nakamura 1961). 미국산 대두는 일본산 대두나 중국산 대두에 비하여 기름의 함량이 높아 일본의 대두 가공공장들은 미국산 대두를 선호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일본 내 대두 생산은 1960/61년의 42만 톤에서 1969/70년의 14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동기간 대두 수입은 120만 톤에서 330만 톤으로 300%나 증가하였다. 1970/71년에 이르면 일본 내 대두 소비의 대략 96%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1955년 일본의 GATT 가입이후 일본은 관세 자유화를 시작하였다. 일본의 대두 수입 자유화는 196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72년에는 대두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은 만주국으로부터 대부분의 대두를 수입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는 대두의 주요 수입대상국이 미국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미국 대두는 일본의 전체 대두 수입의 65%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로부터는 주로 가공용 대두를 수입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중국으로부터는 식용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Hayashi 2012).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 내 대두의 재배면적과 대두 생산은 조금씩 증가하였다<그림 5 참조>.

그림 5 일본 대두 수급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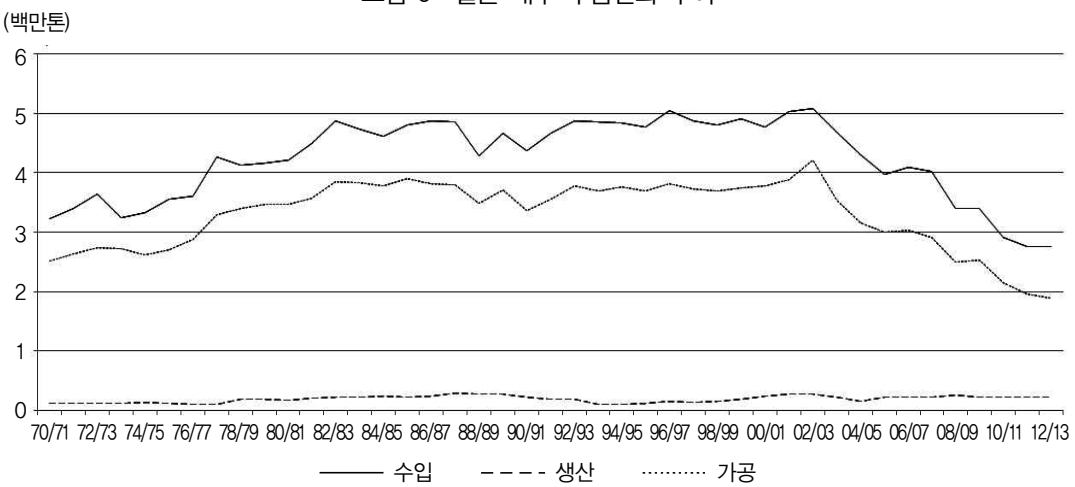

자료: USDA/FAS. 2013.

1990년대 중반에 쌀 과다재고 문제로 인하여 일본정부가 쌀전작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쌀에서 대두로 많은 경작전환이 이루어졌다(OECD 2009).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일본 내 대두 재배면적과 대두 생산은 증가하게 되었다. 2000년에 와서 대두 경작에 대한 부족분지불 지급이 중단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두 재배면적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그림 6 참조>. 일본 내 주요 대두재배 지역은 홋카이도, 아키타, 미야기, 니가타, 도치기 등의 현이 포함된 중남부 일대이다. 그 중 홋카이도는 일본 내 최대 대두 생산지로 전체 대두 생산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6 일본 대두 재배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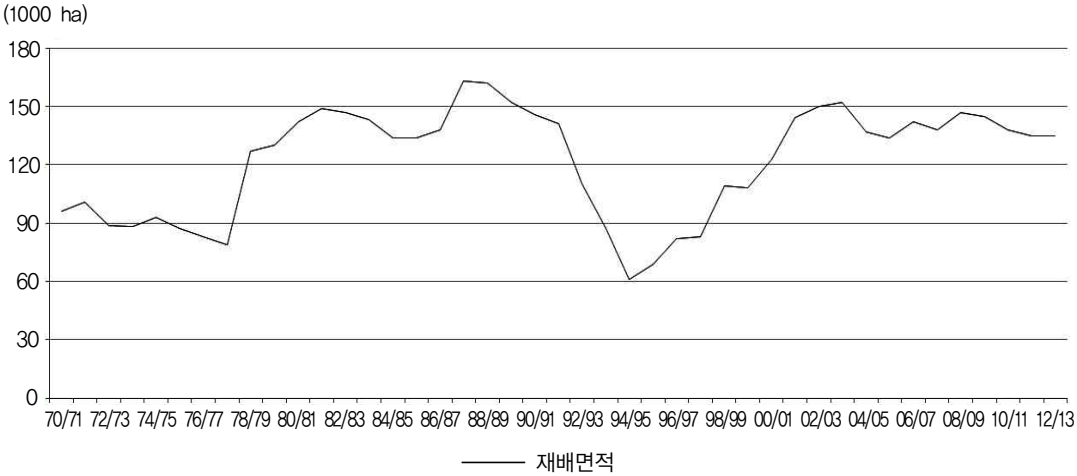

자료: USDA/FAS. 2013.

최근의 높은 대두 국제 가격과 일본 내 대두유 소비의 감소로 인하여 일본의 대두 수입은 2003/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5 참조>. 대두 수입은 2002/03년의 510만 톤에서 2011/12년에 280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대두박 소비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두 수입 감소에 따른 대두박의 공급 부족은 대두박의 수입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일본의 대두 가공산업은 오랜 기간 동안 국경조치들의 보호를 받아왔으며, 이에 2000년대 초까지 대두유의 수입량은 대두유 소비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일본 내 대두유의 생산과 소비는 2002/03년에 최고점에 이른 후 차츰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두유 생산의 감소폭이 소비의 감소폭보다 더 커서 대두유 수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989/90년에는 일본 내 117개의 가공공장이 있었지만(Hamamoto 2002),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합병, 폐쇄 등을 통하여 공장 수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Nozaki 2000). 1998/99년 기준으로 88개의 가공공장이 있었으며 총 가공처리량은 890만 톤이었으나 2009/10년에는 40개의 가공공장으로 축소되었고 총 가공처리량은 860만 톤이었다(Hayashi 2012).

일본 내 대두박 공급량의 80~90%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두부 등 대두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된다(Hayashi 2012). 특히, 일본에서 2001년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동물성사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2001/02년과 2002/03년에는 대두박 사료에 대한 수요가 잠시 급증하였다(Hamamoto 2003). 하지만 육류 소비의 감소에 따른 전체적 사료 수요의 감소로 총 대두박 수요는 2012/13년까지 정체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대두박 생산은 감소되어져 왔는데, 이는 대두 가공량이 계속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두박의 수입은 점차 늘어왔다. 대두박 수입량은 2001/02년과 비교하여 2012/13년에 119%나 증가하였는데, 동기간 일본 내 대두박 생산량은 300만 톤에서 140만 톤으로 감소하였다<그림 7 참조>.

그림 7 일본 대두박 수급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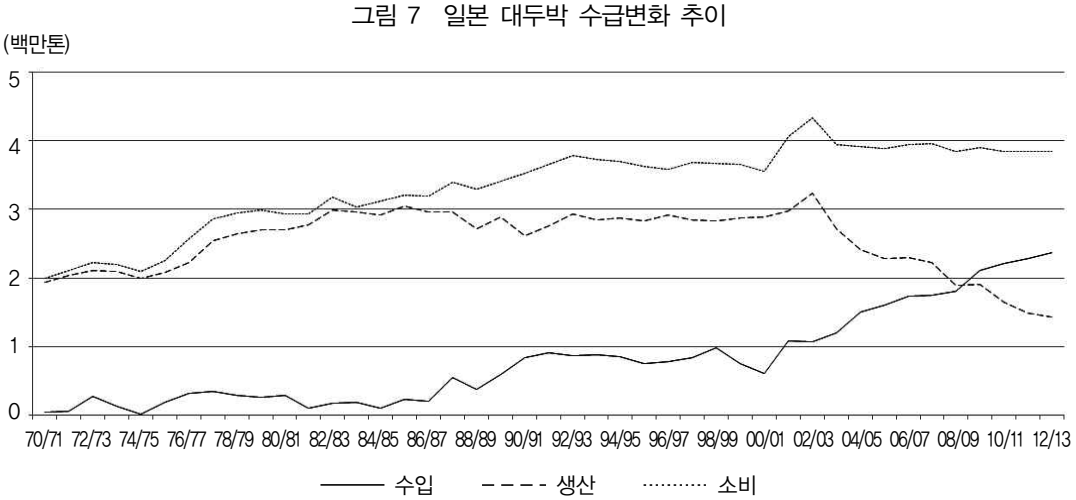

자료: USDA/FAS. 2013.

일본의 대두유 소비와 생산은 1980년대 초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정체되어왔다. 수입 대두유에 대한 높은 관세는 일본 내 대두유 생산업체들에게 낮은 경쟁 정도를 보장해왔다. 하지만 2002/03년 이후로 대두유의 높은 가격, 트랜스지방에 대한 우려 등으로 대두유의 소비는 팜유 등에 점차 대체되어 왔다. 일본 내 대두유의 생산은 감소하는 대신 유채유, 팜유의 수입은 늘어왔다(Wixom and Hayashi 2011). 일본의 대두유 소비는 2002/03년에서 2012/13년 사이 46.9% 감소하였고, 대두유 생산은 동기간 77만 톤에서 37만 톤으로 감소하였다<그림 8 참조>.

그림 8 일본 대두유 수급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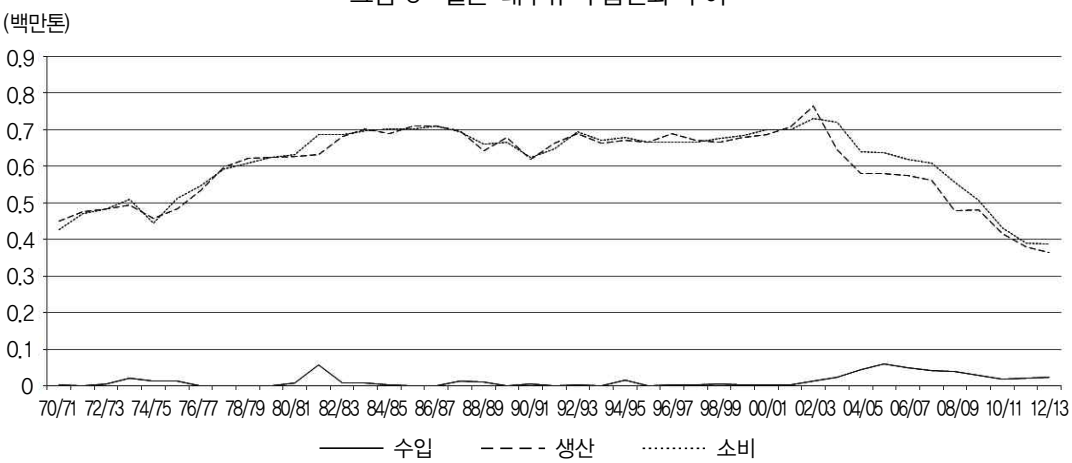

자료: USDA/FAS, 2013.

3.2. 일본의 대두관련 정책

1960년까지 일본은 수입 대두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점차 감축하여 1972년에는 관세를 완전철폐하였다. 따라서 대두에는 현재 관세가 없으나, 대두유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본은 국내 대두 가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두유 관세장벽을 활용해왔다.

수입 식용대두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일본 내 생산되는 대두는 가격 하락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일본 정부는 국내 생산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1961년부터 일본 대두 농가는 목표가격 아래로 시장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두 가격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부족분지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아왔다(Hamamoto 2002). 2000년에 부족분지불 프로그램은 시장가격과 추정생산비와의 차이를 지급하는 대두 보조금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Hamamoto 2002). 본 보조금프로그램에서는 생산자가

격과 고정보조금의 합이 정부가 정한 생산비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고정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며, 만일 생산자가격과 고정보조금의 합이 정부가 정한 생산비를 넘을 경우에는 고정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대신 생산자가격과 생산비의 차이만큼만 지급된다(Hamamoto 2003). 대두에 대한 보조금에 더하여 2000년에 일본 정부는 소득안정제를 도입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참여한 농가에게 올해의 시장가격과 지난 3년간 평균 시장가격의 차이의 80%를 보조한다(Hamamoto 2002). 앞서 언급한 쌀전작프로그램도 대두 생산을 지지한 정책이었다. 최근 일본 내 농업생산이 하락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1년에 대두 등 주요 작물의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가소득지지보조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본 프로그램 하에서 농가는 논에 대두를 경작할 경우 고정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3. 일본 대두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요소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채유와 팜유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 상승으로 일본 내 대두유 소비는 계속 감소해왔다. 일본 대두산업의 경쟁력에 미칠 또 다른 요소로는 대두유 수입관세가 있다. 현재 일본의 대두유에 대한 관세는 kg당 10.9엔이며 이는 유사한 다른 식물성유에 비하여 높다(예: 팜유 3.5엔/kg, 해바라기유 8.5엔/kg). WTO 체제하에서 높은 일본의 대두유 수입관세에 대한 감축 내지 철폐의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일본 대두 가공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증가로 유전자변형대두인 미국산 대두에 비하여 비유전자변형대두인 일본산 대두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선호가 늘고 있는 점은 일본 대두산업에 긍정적인 요소이다.

4. 유럽

4.1. 유럽의 대두산업 개황

1900년대 초 이후, 유럽은 동아시아로부터의 대두수입을 늘려왔다. 당시, 유럽 내 최대 대두 수입국은 영국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럽의 대두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대두와 대두유 수입은 빠르게 회복되었다(Shurtleff and Aoyagi 2007a). 1920년대 초 이후 유럽은 대두의 수입을 늘이고 대두유의 생산량을 늘여왔다. 이에 대두유의 수입은 감소하였다(Shurtleff and Aoyagi 2007a).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유럽의 대두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는 당시 유럽의 주요 대두 수입대상국이

었던 중국(특히 만주)에 대한 일본의 침략 때문이었다(Shurtleff and Aoyagi 2007a).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두 수입은 1945년에 10만여 톤에서 1960년에 280만 톤까지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유럽의 대두 주 수입대상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Shurtleff and Aoyagi 2007a). 1960년대 초 GATT의 딜런(Dillon) 라운드를 통하여 유럽경제공동체(EEC)는 대두 수입에 대하여 무관세를 도입하였다(Bertheau and Davison 2011). 1960/61년에서 1979/80년 사이, 유럽의 대두 수입은 200만 톤에서 1,63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그림 9 참조>. 동기간 유럽 내 대두 주요 수입국은 서독,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였다(Shurtleff and Aoyagi 2007a).

그림 9 유럽(EU-27) 대두 수급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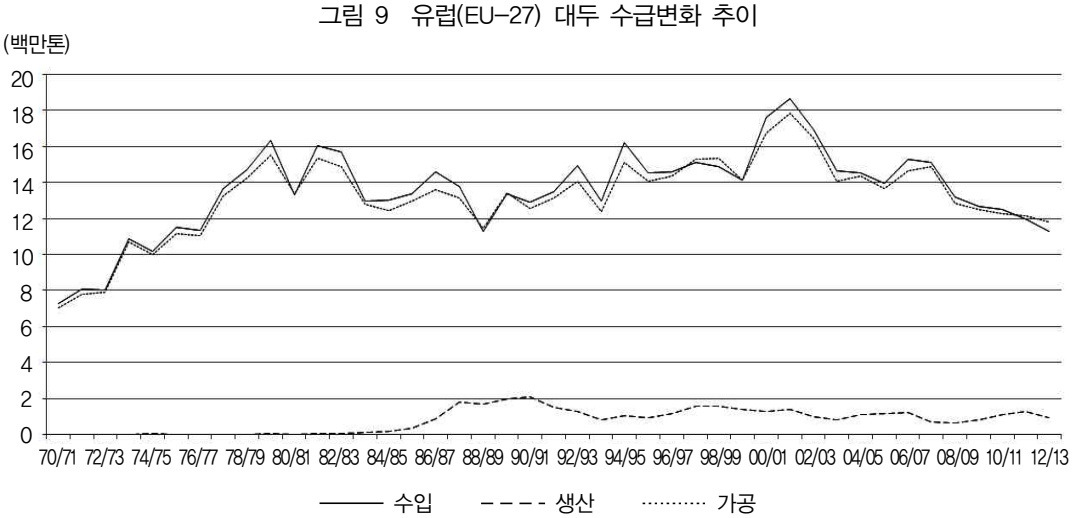

자료: USDA/FAS. 2013.

1990년대에는 유럽으로의 대두와 대두박 수입은 점차 늘어난 반면, 대두유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유럽의 전체 대두 수입의 45%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었다(Hasha 2002). 하지만 미국산 유전자변형대두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2007년에는 미국산 대두의 수입 비중이 22%까지 하락하게 되었다(van Gelder et al. 2008). 반대로 브라질산 유전자변형대두 및 비유전자변형대두의 수입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유럽의 대두 수입의 절반 이상을 브라질산 대두가 장악하게 되었고, 미국산 대두의 비중은 20%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3). 최근에는 파라과이산 대두와 캐나다산 대두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브라질산 대두의 수입 비중은 일정부분 줄어들게 되었다. 유럽의 총 대두 수입량은 지난 십년간 계속 감소해왔는데, 이는 유럽 내 사료용으로서의 대두박의 수

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Krautgartner et al. 2012). 현재 유럽 내 주요 대두 수입국은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로 이들 세 국가가 전체 유럽 대두 수입량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두박의 수입은 95%이상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두 개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지난 십년간 유럽은 대두를 수입하는 대신 대두박, 대두유를 수입해 왔다.

그림 10 유럽(EU-27) 대두박 수급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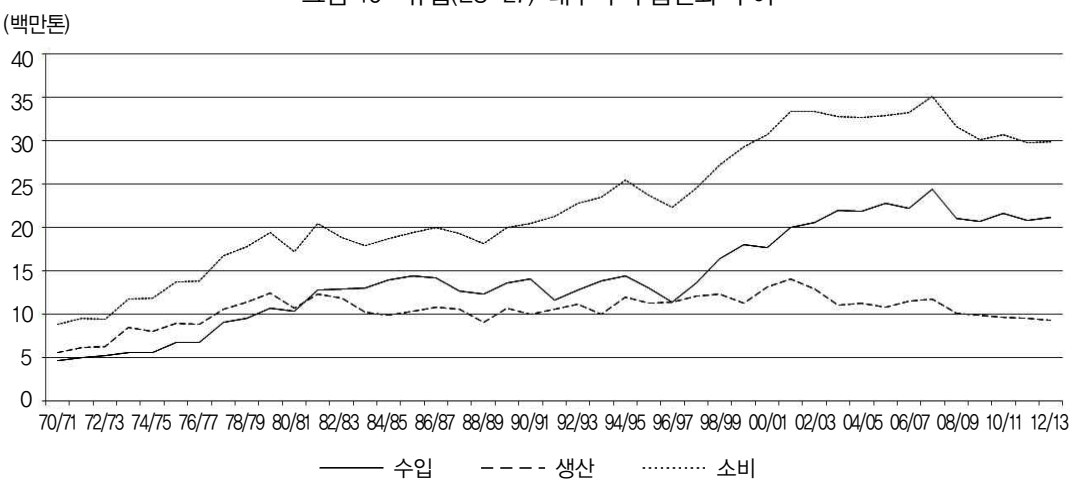

자료: USDA/FAS. 2013.

유럽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두 소비지역이긴 하지만, 대두의 생산은 미흡하다. 이는 기후와 토양에 있어서 유럽의 환경이 대두 경작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두보다는 경쟁 관계에 있는 유채, 해바라기, 면화 등의 경작이 유럽의 환경에 더 적합하기에 대두 생산은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였다. 유럽 내 대두 생산은 1933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시작되어졌다(Shurtleff and Aoyagi 2007a). 1941년에 이르면 이들 국가에서의 대두 생산이 12.5만 톤에 이르게 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생산량은 급감하게 된다(Shurtleff and Aoyagi 2007a). 1950년대 초의 기록을 보면 매우 적은 양의 대두만이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73년 미국 내 대두공급 부족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스페인,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이 대두 수입의존도를 낮추고자 대두 생산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Shurtleff and Aoyagi 2007a).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두의 자급률은 5%미만에 불과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면 유럽 국가들은 식물성 유지의 자급률을 제고하고자 유채와 해바라기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대두 가공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990년대에는 유럽 내 대두 가공량과 대두

수입량이 모두 30%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두는 경쟁작물인 유채 등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다. 1990년대 유럽 내 대두가 전체 식물성 유지류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Borremans 1998). 2000년대 초 유럽의 대두 생산은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유럽의 대두 가공은 2000년대 초 육류 생산과 소비의 증가에 따른 사료용 수요의 증가로 늘어났다(Talks 2003). 하지만 2005/06년을 기점으로 높은 가공비용과 상대적으로 높은 대두 가격으로 유럽 내 대두 가공량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말에 연간 대두 생산량은 60만 톤에서 85만 톤 정도로 전체 유지작물의 생산량의 3%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유럽 내 대두 생산량의 50% 이상이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육류의 생산지역 중 하나로, 이에 따라 가장 큰 대두박의 수입지역이기도 하다. 2000년대 초 대두박의 생산은 가공마진의 하락으로 감소하였지만, 2000년 광우병 발견 이후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대두박의 수요는 증가하였다. 대두박의 수요는 2007/08년에 정점을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해오고 있다<그림 10 참조>. 유럽 내 주요 대두박 소비 국가는 독일, 스페인, 프랑스이며 이들 국가들이 유럽의 전체 대두박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Krautgartner et al. 2011). 2000년대 초까지 유럽 내 대두유 생산은 점차 늘어났으나, 이후 가공마진의 하락과 높은 대두 가격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유럽의 대두유 수입은 2000년대 중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바이오디젤 수요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다.

그림 11 유럽(EU-27) 대두유 수급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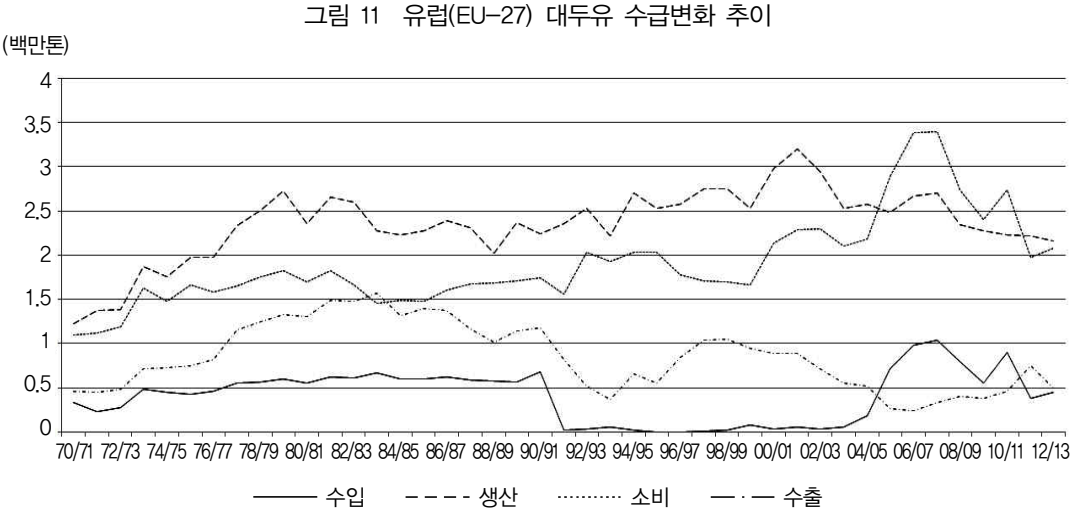

자료: USDA/FAS. 2013.

4.2. 유럽의 대두관련 정책

유럽 내 대두 생산량이 많지 않는 관계로 대두생산 증진과 관련된 유럽의 정책은 별로 없다. 무역정책 또한 유럽은 1960년대부터 대두와 대두박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1962년에 유럽은 역내 농업 생산성을 제고와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공동농업정책(CAP)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유럽의 농업정책은 대두 생산의 증진보다는 경쟁 작물인 유채와 해바라기의 생산 증진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왔다.

1993/94년 CAP 개혁을 통하여 유럽은 기존의 가격지지정책을 과거 단수에 기반한 직접지불로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2년 블레어 하우스 협약(Blair House agreement)에 따라 유럽 내 유지작물에 대한 지원가능 상한 면적이 설정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1). 또한 아젠다 2000 개혁에서는 유지작물에 대한 보상지원이 점차 직접지불로 대체되었다. 2003년 CAP 개혁에서 유럽은 단일농가지불제(SFP)를 도입하였는데, 생산과 비연계된 SFP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생산 환경이 열악한 대두 경작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유럽 내 대두 생산은 감소하게 되었다. 게다가 농경지에 대한 10% 의무 휴경 정책의 도입은 대두 경작지를 더욱 감소시켰다.

2008년에 유럽은 2020년까지 전체 운송연료의 10%를 재생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오디젤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유럽 내 바이오디젤의 주연료는 유채로 대두 생산은 본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유전자변형대두의 경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유전자변형에 의한 재화와 상품에 대하여 이력추적과 라벨링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유럽은 비승인된 유전자변형대두의 수입에 무관용정책(zero-tolerance policy)을 시행하고 있다.

4.3. 유럽 대두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요소

유럽의 기후 및 토양 환경은 대두 생산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이 수입대두를 역내 생산된 대두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두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 유럽 내 대두의 소비와 수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높은 대두 국제가격, 대두유에 대한 선호 감소, 사료용 수요의 감소가 있다. 특히, 대두박과 대두유에 적용되는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은 유럽의 대두 및 대두관련 제품의 수입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다.

5. 시사점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중국과 일본 모두 자국 내 대두 생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두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것보다는 대두박과 대두유 수입을 더욱 선호하는 유럽에 비하여 중국과 일본은 대두유 수입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국내 대두 가공산업을 보호해왔다. 이에 중국과 일본의 대두 및 대두관련 제품의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은 대두의 수입 비중이 높은 반면에 대두박 및 대두유의 자급률이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에 대두유 수입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대두유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두박과 대두유의 자급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가공마진의 하락과 높은 대두 국제가격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 대두 가공산업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대두 가공산업이 위축될 경우 국내 사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바, 대두박의 수입선 다변화, 대체 사료의 개발 등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유럽의 소비자 트렌드를 보면 트랜스지방에 대한 우려, 유전자변형대두에 대한 기피 등으로 식용 대두유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대두유에 대한 소비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팜유, 유채유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발전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유럽이나 일본과 유사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두유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바, 소비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대두 및 유전자변형대두제품에 대한 수입이력 관리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Bertheau, Y. and J. Davison. 2011. "Soybean in the European Union, Status and Perspective" Recent Trends for Enhancing the Diversity and Quality of Soybean Products, Prof. Dora Krezhova (Ed.), ISBN: 978-953-307-533-4, InTech, DOI: 10.5772/18896: http://www.intechopen.com/books/recent-trends-for-enhancing-the-diversity-and-quality-of-soybean-products/soybean-in-the-european-union-status-and-perspective (accessed April 3, 2014).

Borremans, D. 1998. "EU Oilseeds and Products 1998"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Report# BE9806A, June. 19, 2012, USDA, Washington, DC.

European Commission. 2011. Oilseeds and protein crops in the EU.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Unit C5, October 2011, Brussels, Belgiu: http://ec.europa.eu/agriculture/cereals/factsheet-oilseeds-protein-crops_en.pdf/(accessed July 2, 2013).

European Commission. 2013. Oilseeds Market situation. Management Committee for the Common Organisation of Agricultural Markets, AGRI C5, March. 14, 2013, Brussels, Belgiu.

Hamamoto, T. 2002. "Japan: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 JA2015, April. 12, 2002, USDA, Washington, DC.

Hamamoto, T. 2003. "Japan: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 JA3049, July. 23, 2003, USDA, Washington, DC.

Hasha, G. 2002. "Livestock Feeding and Feed Imports in the European Union - A Decade of Change" Economic Research Service report # FDS-0602-01, USDA, Washington, DC.

Hayashi, Y. 2012. "Japan: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 JA2010, April. 27, 2012, USDA, Washington, DC.

Hymowitz, T. 1990. Soybean: The Success Story. in: Advances in new crops, J. Janick and J. E. Simon, eds., Timber Press, Portland, OR.

Krautgartner R., M. Henard, S. Lieberz, M. Boshnakova, B. Flach, J. Wilson, A.Wideback, O. Bettini, M. Guerrero, K. Bendz, and and the group of FAS oilseeds specialists in the EU. 2011. "EU-27: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E60016, April. 7, 2011, USDA, Washington, DC.

Krautgartner R., M. Henard, L.E. Rehder, M. Boshnakova, M.Dobrescu, B. Flach, J. Wilson, A.Wideback, O. Bettini, M. Guerrero, K. Bendz, and and the group of FAS oilseeds specialists in the EU. 2012. "EU-27: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E70016, April. 12, 2012, USDA, Washington, DC.

Lee, S.H. 2014. "Upstream Transmission Effects of Generic Advertising and Promotion: The Case of Soybeans" Ph.D.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December 2014.

Meador, M.M. and W. Xinping. 2013c. "China - Peoples Republic of: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 CH13005, March. 1, 2013, USDA, Washington, DC.

Nakamura, H. 1961. "The Japanese Soybean Market" Illinois Agricultural Economics 1(2): 7-13.

Nozaki, S. 2000. "Japan: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 JA0050, April. 25, 2000, USDA, Washington, DC.

OECD. 2009.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Japan. OECD Publication. France.

Shurtleff, W. and A. Aoyagi. 2007a. "History of Soy in Europe" A Special Report on History of Soybean Production and Trade Around the World, Soyinfo Center. http://www.soyinfocenter.com/HSS/europe1.php (accessed May 3, 2013).

Shurtleff, W. and A. Aoyagi. 2007b. "History of Soybean Production and Trade in China (1949-1980s)" A Special Report on History of Soybean Production and Trade Around the World, Soyinfo Center. http://www.soyinfocenter.com/HSS/china1.php (accessed May 3, 2013).

Smith, K. 2003. "Soybeans - History and Future" Fact Sheet, Soybean Meal Information Center, United Soybean Board. MO. http://www.soymeal.org/FactSheets/HistorySoybeanUse.pdf (accessed April 25, 2013).

Song, B., M.A. Marchant, and S. Xu. 2006. "Competitive Analysis of Chinese Soybean Import Suppliers--U.S., Brazil, and Argentina" Selected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America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Meetings, July 23-26, Long Beach, CA.

Takahashi, R. 2009. "Symbiotic Relations between Paddy-Field Rice Cultivators and Hunter-Gatherer-Fishers in Japanese Prehistory: Archaeological Considerations of the Transition from the Jomon Age to the Yayoi Age" Senri Ethnological Studies 73: 71-98

Talks, P. 2003. "European Union: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 E23144, August. 1, 2003, USDA, Washington, DC.

Tuan, F.C., C. Fang, and Z. Cao. 2004. "China's Soybean Imports Expected To Grow Despite Short-Term Disruptions" Economic Research Service report # OCS-04J-01, USDA, Washington, DC.

van Gelder, J.W., K. Kammeraat, and H. Kroes. 2008. "Soy consumption for feed and fuel in the European Union" A research paper prepared for Milieudefensie. Profundo, Castricum, Netherlands.

Wixom, S. and Y. Hayashi. 2011. "Japan: Oilseeds and Products Annual"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AIN Report # JA1029, May. 13, 2011, USDA, Washington, DC.

Williams, G.W. 2012. "The Chinese Soybean Industry: A U.S. Success Story?" Paper prepared for the 4th CAER-IFPRI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ctober 18-19,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Beijing, P.R. China.

PART 3

국가별 농업자료

네팔

네팔의 농업 현황과 정책 | 신세린

세계농업 HISTORY

ㅁ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농업 및 농식품 교역
	2월	**프랑스·필리핀** 프랑스의 농업과 농정 필리핀의 식량자급 정책
	3월	**덴마크·캄보디아** 덴마크 농업의 이해 –농업발전 과정의 도전과 대응사례 캄보디아 농업 잠재력과 정책 방향
	4월	**인도** 인도 농업의 개황 및 정책
	5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농업 현안과제와 한국의 투자진출 전략
	6월	**스위스** 스위스 농업 개황 및 농정개혁
	7월	**러시아·호주** 러시아 아무르주 농업 현황 러시아 남부지역 농업 현황 호주 서부지역 농업 현황
	8월	**탄자니아·프랑스** 탄자니아 농업 개황 프랑스 농작물 보험제도 동향
	9월	**영국·우간다** 영국 농업 동향과 시사점 우간다 농업 개황
	10월	**르완다·칠레** 르완다 농업 현황 칠레 농업 현황
	11월	**태국** 태국 농업 개황
	12월	**네덜란드·인도** 네덜란드 농업 현황 인도 농업 농정 동향

ㅁ 국가별 농업자료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4년	1월	**라오스 · 스페인** 라오스의 화전농업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및 시사점
	2월	**러시아 연해주 · 일본** 러시아 연해주 농업현황과 한국의 진출 전략 일본 농업 6차산업화 정책 현황과 과제
	3월	**호주 · 베트남** 호주 쇠고기 생산 동향 베트남 농업 개황
	4월	**미얀마 · 필리핀** 미얀마 농업 현황 및 농업부문 투자정책 식량안보와 필리핀 쌀 사례
	5월	**우즈베키스탄 · 스위스** 우즈베키스탄 농업개황과 농업 진출 전략 스위스 농업경제 및 정책 동향
	6월	**콩고민주공화국 ·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농업 현황과 과제 우간다 농업 현황
	7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농업 실태 및 전망
	8월	**멕시코 · 페루** 멕시코 농업 현황 페루 농업현황 및 시사점
	9월	**이탈리아 · 덴마크** 이탈리아 농업 현황 덴마크 농업 현황
	10월	**모잠비크** 모잠비크 농업 현황 및 주요 발전전략
	11월	**독일** 독일 유기농업 현황
	12월	**터키 · 몽골** 터키 농업 현황 및 시사점 몽골의 농림업 현황

ㅁ 국가별 농업자료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월	**이스라엘 · 파라과이** 이스라엘 농업 개황 및 농업정책 파라과이 농업 현황과 시사점
	2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농업 현황 및 시사점
	3월	**볼리비아·대만 · 카자흐스탄** 볼리비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대만 농업 현황 카자흐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4월	**노르웨이 · 뉴질랜드** 노르웨이 농업 현황과 시사점 뉴질랜드 농업 현황과 시사점
	5월	**루마니아 · 콜롬비아** 루마니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콜롬비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6월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키르기스스탄 농업 현황과 시사점
	7월	**핀란드 · 쿠바 · 르완다** 핀란드 농업과 농정의 특성 쿠바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정책 르완다의 농업발전정책
	8월	**스웨덴 · 덴마크** 스웨덴의 농업혁명과 지속가능한 농업 덴마크 농업 현황과 시사점
	9월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타지키스탄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10월	**방글라데시 · 캐나다** 방글라데시의 농업현황과 농업정책 캐나다의 농업 및 농식품산업 현황
	11월	**우간다 · 르완다** 우간다 농업협동조합 르완다 농업 현황과 시사점

ㅁ 국가별 농업자료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2월	**엘살바도르 ·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아르헨티나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2016년	1월	**과테말라 · 에콰도르** 과테말라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에콰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2월	**니카라과** 니카라과 농업현황과 시사점
	3월	**브라질** 브라질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4월	**미얀마** 미얀마의 농업현황과 정책
	5월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농업현황과 정책
	6월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농업현황과 정책
	7월	**쿠바** 쿠바농업의 이해와 협력가능성

세계농업 「국가별 농업자료」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6

네팔의 농업 현황과 정책 *

신 세 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1. 네팔 일반현황

1.1. 개황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네팔의 정식명칭은 네팔 연방 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으로 인도와 중국 티베트 지역과 접경한 한반도 2/3 크기의 내륙국이다. 수도는 카트만두로 인구 2,840만 명 중 약 174만 명이 수도에 거주하고 있다. 공식언어는 네팔어이나 영어도 널리 통용되며 마이탈리아어(12%), 보즈푸리어(6%)도 함께 쓰이고 있다.

지리적 위치 상 중국의 불교문화와 인도의 힌두, 카스트 문화가 혼재해 있다. 1814년부터 1923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 1951년 왕정을 복고하고 입헌군주제 체제를 도입하였다. 2007년 임시헌법이 공표될 때까지 힌디 왕정체제를 유지해오다 2008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1] 2016년이 되어서야 국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신헌법이 통과되었으나 종족 간 갈등으로 인해 국가 안정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selynn@kiep.go.kr).

1) 외교부(2011) 서남아시아태평양국 네팔개황, 한국수출입은행(2016) 네팔 국가개황, Eonomist Intelligence Unit(2016) Nepal Country Report 2nd Quarter 참조.

카스트 제도와 왕정체제로 인한 사회불평등 문제는 1996년 모택동주의자(Maoist)들의 공화국 건설을 위해 일으킨 내전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2006년까지 내전이 지속되다 같은 해 대규모 민주화시위를 계기로 정부와 반군은 평화협상을 체결, 내전이 종료되었다.[2] 12년간의 내전 이후 사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나 2015년 4월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 지진으로 인해 8,7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3에 해당하는 8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재 네팔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재난 복구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3]

1.2. 자연 조건

국토의 크기는 작으나 지형과 고도에 따라 아열대부터 고산지대까지 다양한 기후가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자연조건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히말라야의 고지대부터 남동부의 해발 300m의 평야까지 고도에 따라 국토를 크게 테라이라 불리는 평원과 언덕, 산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테라이는 인도 인근의 남쪽을 따라 25km 넓이의 띠 모양을 띄고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이 농경작지로 농업 종사 인구가 많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남부의 언덕 지역은 평균 고도 760m로 경사가 가파르고 낭떠러지가 많은 지형으로, 히말라야 주변의 산지는 최고 높이가 5000m 이상까지 이르는 고지대로 이루어져 있다.[4]

그림 1 네팔의 지역별 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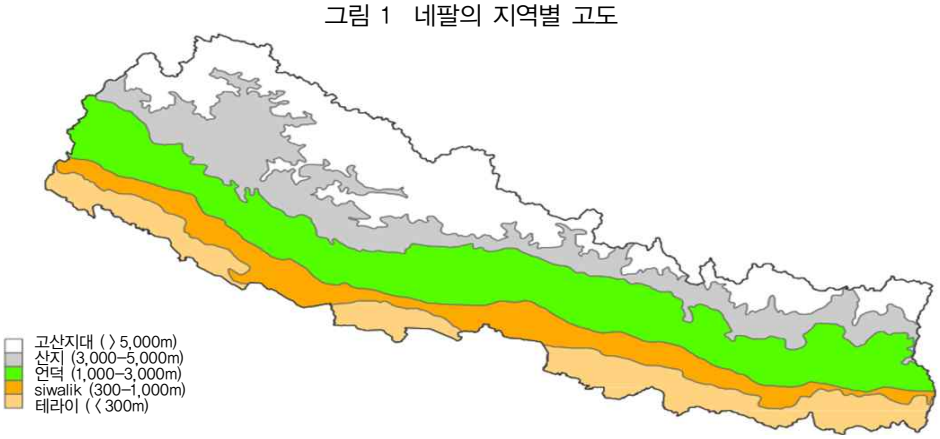

자료: 네팔 통계청 Population Atlas of Nepal 2014.

2)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3) Nepal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Nepal earthquake 2015 Post disaster needs assessment. 2015.
4) 세계식량기구 Nepal Geography. 2012.

기후 또한 고도에 따라 열대부터 고지대까지 다양한 기후가 혼재하고 있다. 저지대는 여름 평균 기온이 22-27도, 겨울은 10-15도로 온난다습한 아열대기후 지역인 반면, 고지대는 여름 평균 기온 5-15도,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한대 기후이다. 6월부터 8, 9월까지 지속되는 몬순 기간 동안 월평균 강우량은 250-450mm이나 북서부 산간지역의 강우량은 같은 기간 100-150mm, 겨울에는 월 강우량50mm에 미치지 못하는 건조한 날씨를 보인다.[5)]

그림 2 1990–2012년 네팔 월평균 기온과 강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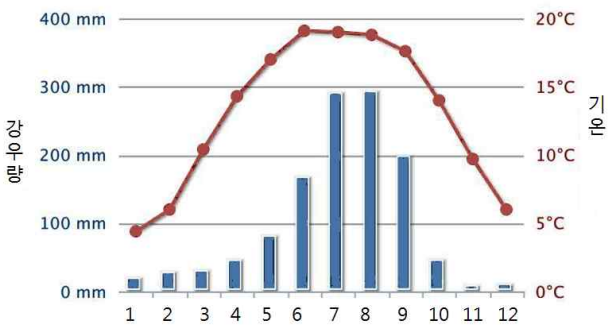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기후변화 지식포털(2016).

1.3. 인구 구성

인도-아리안 계열이 80%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 나머지는 북부지역, 무스탕의 셀파(Sherpas), 돌파(Dolpas), 로파(Lopas)와 같은 티벳인과 보티야인, 중부지역의 네왈(Newars), 타망(Tamang), 라이(Rais), 림부(Limbus), 수누와르(Sunwars), 머거르(Magars), 구룽(Gurungs)족과 같은 몽골리안이 17%를 차지한다.

입헌군주제 이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인구의 87%가 힌두교를, 8%가 불교를, 4%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1963년에는 전통적으로 전해오던 카스트 제도를 폐지하는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 카스트 제도가 존속하고 있다.

5) UNDP Climate change country profiles Nepal. 2008.

1.4. 정치 현황

네팔 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지만 총리와 내각이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2015년 새로운 총리와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의원 601명 중 575명은 선출되나 26명은 내각이 임명하는 체제이다. 2008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한 이후 2016년 1월까지 임시헌법으로 정부가 운영되어 왔다. 2016년 정부형태와 국정운영을 규정하는 신헌법을 공표하였으나 그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신헌법은 7개 주의 연방정부 구성안과 민족그룹의 수를 축소하고 선거구 확정 기준을 기존의 인구 및 지리에서 1차적 근거로 인구를, 2차적 근거로 지리로 개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주의 경계 분할 방식과 선거구 확정 기준의 변화로 종족의 세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인도와의 국경의 봉쇄될 정도의 큰 반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주요 정당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에 선거가 완료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가지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6)]

1.5. 외교 현황

네팔의 외교 정책은 주권 보호 및 경제개발을 위한 독자적 비동맹 중립노선과 모든 국가와의 평화공존을 기조로 해왔다. UN과 비동맹국, 남아시아지역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등 인근 국가와의 우호를 중시해 왔으며 해외 원조를 위해 서방국과도 협력을 지속해 왔다. 공식적으로는 인도-중국 양국 간 등거리 외교를 지향하고 있으나 내륙국가의 특성 상 무역과 유통망의 상당부분을 인도에 의존하면서 친인도 성향을 띄어왔다.[7)]

그러나 최근 인도와 중국이 원조경쟁을 통해 네팔에 대한 대외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면서 네팔의 외교정책은 재편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말 신헌법 공포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도가 네팔과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네팔은 에너지 등 물자 공급에 큰 타격을 입자, 네팔이 인도의 대안으로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어 네팔을 둘러싼 양국 간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8)]

6)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 Nepal Country Report 2nd Quarter 2016.
7) 외교부 서남아시아태평양국 네팔개황. 2011.
8)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 Nepal Country Report 2nd Quarter 2016.

2. 네팔 경제 현황

2.1. 네팔 경제 현황

네팔의 2014년 총 GDP는 198억 달러, 2015년 207억 달러로 2015년 2.7%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지진으로 인해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은 데다 재건 속도가 더뎌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또한 신헌법 관련 시위로 인도와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지진에 버금가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경 봉쇄가 종료되고 정상적인 에너지 공급이 재개되면서 성장세가 정상적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네팔 경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은 지진과 늦은 몬순 등으로 2014/15 회계연도[9]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올해 몬순 결과에 따라 농업 성장률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진으로 인해 많은 재산이 손실되면서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져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경제회복의 위험요소로 남아있다.[10]

2.2. 재정 및 물가

네팔은 2015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2015/16 회계연도 예산을 지난해 두 배인 약 67억 달러로 편성하고 정부지출은 지난 해 보다 두 배 이상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 중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에 불과한 상태로 예산의 대부분을 해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재정적자가 높다. 재건과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기조가 유지되면서 당분간 재정적자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진발생 이전에도 네팔은 7%이상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파괴와 인도와의 국경폐쇄는 네팔의 물가상승률을 10% 넘게 상승시켰다. 또한 에너지 전량을 인도를 경유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한데다 도로인프라 파괴로 물류비용이 높아져 비식품수입물가 또한 오르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진으로 파괴된 인프라가 재건될 때까지 네팔은 당분간 8%이상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11]

9) 네팔의 회계연도는 7월 16일~이듬해 6월 14일임.
10)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 Country Report 2nd Quarter 2016.
11)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 Country Report 2nd Quarter 2016.

2.3. 대외 현황

네팔은 의류, 카페트 등의 직물과 주스 등 1차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석유 등 에너지와 기계류, 전자제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내륙국가로 수입과 수출의 대부분이 인도를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4년 기준 수출의 59.7%, 수입의 57%가 인도와의 교역일 만큼 인도의 의존도가 높다. 복구에 필요한 자재 수입 때문에 수출규모가 점점 증가하여 수입은 2013년 65억 달러, 2014년 7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수출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 내외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해외 송금액이 상품적자보다 더 커서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해왔다.

표 1 네팔 주요 경제지표

	경 제 지 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f
국내경제	GDP	억 달러	189	193	198	214	241
	1인당 GDP	달러	686	693	703	751	837
	경제성장률	%	4.8	4.1	5.4	3.4	4.4
	재정수지/GDP	%	−0.6	2.1	2.2	1.4	−2.2
	소비자물가상승률	%	8.3	9.9	9.0	7.2	8.0
대외거래	환율 (달러당, 연중)	NR	85.2	93.0	99.5	103.5	108.8
	경상수지	백만 달러	909	635	908	1,067	−639
	경상수지/GDP	%	4.8	3.3	4.6	5.0	−2.7
	상품수지	백만 달러	−4,947	−5,545	−6,427	··	··
	수 출	〃	1,004	998	1,002	··	··
	수 입	〃	5,951	6,543	7,428	··	··
	서비스수지	〃	29	205	188	··	··
	외환보유액	〃	4,307	5,294	6,027	··	··
외채현황	정부채무/GDP	%	36.3	32.3	28.3	25.1	26.5
	국내정부채무/GDP	〃	13.6	12.3	10.4	7.1	7.3
	해외정부채무/GDP	〃	22.7	20.0	17.9	18.0	19.2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4,279	3,893	3,539	3,823	4,531
	총외채잔액/GDP	%	22.7	20.2	17.9	17.9	18.8
	단기외채	백만 달러	200	169	179	158	··
	외채상환액/총수출	%	6.0	2.5	2.9	1.7	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네팔 국가개황(2016).

3. 네팔 농업 현황

3.1. 농업 개황

네팔은 농업이 2014년 GDP의 33.7%[12]에 달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농업 자체는 낙후된 전형적인 최빈국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업 인프라 부족과 과밀한 인구, 구릉성 경작지, 토양 침식, 원시적 농경법, 비료 부족, 경작 품종의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낮다. 기후변화 취약국 중 하나로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관개시설은 미비하여 강우량 의존도가 높아 매해 작황이 불안정하다. 이 뿐만 아니라 농가당 평균 토지소유 면적이 작아 기업적, 근대적 농업 경영도 어려운 상황이다.[13]

네팔의 농업지대는 평원지대인 테라이(Terai), 언덕과 산지로 나눌 수 있다. 남부 인도와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평야 테라이는 전체 국토의 20%를 차지한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농사가 이루어지며 테라이 지역 중 열대 기후에서는 곡물과 채소, 과일을,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주요 작물인 쌀과 옥수수, 밀, 황마 등을 재배한다. 중부지역에 위치하며 전체 국토의 56%를 차지하는 언덕지역에서는 고도와 기후로 인해 재배 작물이 제한되어 있어 옥수수, 기장, 감자, 콩, 머스터드, 차 등을 재배한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지역의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국토의 24%로 이 지역의 농업은 감자, 옥수수와 가축에 의존하고 있다.[14]

7월~9월 몬순기간에 내리는 비는 네팔 전체 강우량의 80%를 차지하며, 몬순에 따라 작물의 경작시기가 결정된다. 주요작물인 옥수수와 쌀은 각각 8~9월과 10~12월 초에, 기장은 9~11월로 하반기에 수확하나 밀은 3월~6월로 상반기에 수확한다. 몬순기간인 7월, 8월은 수확이 거의 되지 않는 비수확기이나 이 기간의 강우량이 한해 수확량을 결정한다. 몬순기간의 집중 폭우, 고지대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빙하의 감소, 가뭄 등이 농업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5] 이로 인해 몬순기간에는 전년도 생산량에 따라 급격한 물가상승 등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네팔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2) World Bank Data base.
13) 외교부. 2011. 서남아시아태평양과. 네팔개황.
14) FAO. 2001. CROP DIVERSIFICATION IN NEPAL.
World Bank. 2009. Project for Agriculture Commercialization and Trade; FAO 1999a. Aquastat: Nepal. http://www.fao.org/nr/water/aquastat/countries/nepal/index.stm; USAID. PROPERTY RIGHTS AND RESOURCE GOVERNANCE에서 재인용.
15) 한국 정부관계부처 합동. 2013. 네발 국가협력전략.

그림 3 네팔의 주요 작물별 경작 시기

자료: GIEWS Country Brief Nepa, FAO(2015)를 바탕으로 저자 재편집함.

네팔의 농경지는 2013년 기준 412만 헥타르로 전체 국토의 28.7%에 이른다. 개간을 통해 1969년까지 356만 헥타르였던 농지가 79년에는 407만 헥타르로, 2001년 426만 헥타르까지 증가하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화로 인해 농지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농지면적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경지 중에서도 미경작지가 지역에 따라 17-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순환경작에 따른 휴경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실제 경작지는 전체 농경지보다 적다.[16)]

그림 4 네팔 농경지 현황

단위: 1,000헥타르

자료: FAO STAT. 2016. 자료: FAO STAT. 2016.

16) INSEC(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2007; Alden Wiley et al. 2008. Land Reform in Nepal: Where Is It Coming From and Where Is It Going? The Findings of a Scoping Study on Land Reform for DFID Nepal; USAID. Nepal Country Profile. PROPERTY RIGHTS AND RESOURCE GOVERNANCE. 재인용.

네팔의 농업생산성은 헥타르 당 2.3톤(쌀, 옥수수, 밀 기준)으로 인근 국가인 방글라데시(3.9톤), 스리랑카(3.8톤)[17]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농업생산량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쌀과 밀 등 수자원 집중 작물을 주로 경작함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개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면적은 총 농경지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기가 보급되는 농촌지역은 약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펌프를 사용하기 어려우며 농업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제한이 많아 관개시설의 효율성도 매우 낮다. 또한 농촌인구의 20%가 비포장도로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며 40%는 포장도로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농촌 인구의 시장접근성이 매우 낮아 농업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18]

종자개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낮은 농업생산성의 원인이다. USAID는 개량 종자 사용만으로도 네팔의 수확량이 20% 증가될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개량종자 사용율이 낮다. 높은 가격 장벽으로 개량종자를 사용 농가 비율은 약 25%에 그치는데다 종자전환도 대부분 곡물이 아닌 채소와 감자에 국한되어 있다.[19] 이에 농부 1인당 부가가치생산은 2014년 280달러 수준으로 1980년 210달러에 비해서 큰 발전이 없으며, 농업성장률 또한 매년 몬순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연평균 약 2%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태이다.[20]

비농업 노동력의 노동생산성(2,817달러)에 비해 농업분야의 노동생산성(705달러) 또한 현저히 낮은 편이다.[21] 농업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22] 또한 0에 수렴하여 발전이 미미하다. 네팔 농업의 기계화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주로 산지보다 평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트랙터와 경운기를 기준으로 테라이 지역에서는 기계화가 약 70%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나 언덕과 산지의 기계화 비율은 5-10%에 불과하다. 수확기와 탈곡기, 옥수수 탈립기의 기계화율은 매우 낮으며 보급된 농기계는 대부분 공동체 소유이거나 대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계화 전환은 노동력 부

17) USAID. 2014. USAID/Nepal Feed the future overview.

18) Karkee. 2008. Nepal Economic Growth Assessment, Agriculture.; Sharma. 2001. Crop Diversification in Nepal. In Crop Diversification in Asia Pacific Region (FAO RAP Publication 2001/03).; Silpakar 2008. Implications of Land Tenure on Food Sufficiency in Dang District, Nepal.; USAID. Nepal Country Profile. PROPERTY RIGHTS AND RESOURCE GOVERNANCE에서 재인용.

19) USAID. 2008. NEPAL ECONOMIC GROWTH ASSESSMENT Agriculture.

20) Worldbank Database.

21) 한국 정부관계부처 합동. 2013. 네발 국가협력전략.

22) 노동, 자본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 산출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생산효율성 수치임(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족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산비용이 약 30-40%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3)]

그림 6 네팔 농업 생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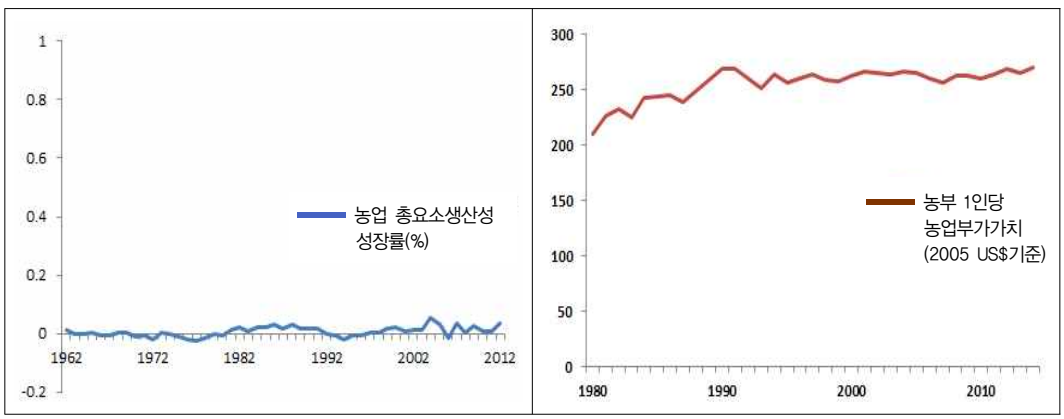

네팔 농업 총요소생산성(TFP) 성장률(%)
자료: 미국 농무부(2013).

농부 1인당 농업 부가가치(2005년 US$ 기준)
자료: 세계은행(2016).

그림 7 네팔 농업부분의 고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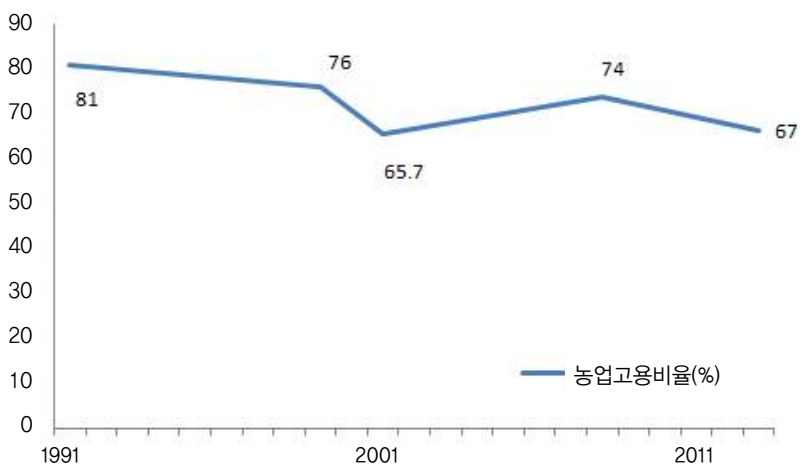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2016).

23) WFP. 2013. Crop Situation Update 2012/13.

3.1.1. 주요 농작물 생산·교역 현황

네팔의 농업에서 곡물이 전체 경작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로 그 중에서도 쌀이 40%, 옥수수 20%, 밀이 17%를 차지하여 작물다양성이 매우 낮다. 채소, 과일, 향신료, 차 등의 상업작물 재배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과일, 낙농업의 1995~ 2005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은 3%, 채소의 성장률은 5.1%로 성장속도가 더디다.[24] 저장・운송시설의 부족, 등급판정과 가공시스템의 미비로 고부가가치 상업작물의 재배 확대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25]

상업작물의 성장은 더디나 총 농업생산량은 정부의 자급자족 달성 노력과 관개지 확대로 인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전이 종료된 2000년 후반부터 식량생산이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곡물생산지수와 식량생산지수 모두 2004~06년 평균을 100으로 놓았을 때 2013년 130으로 약 30%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8 네팔 곡물·식량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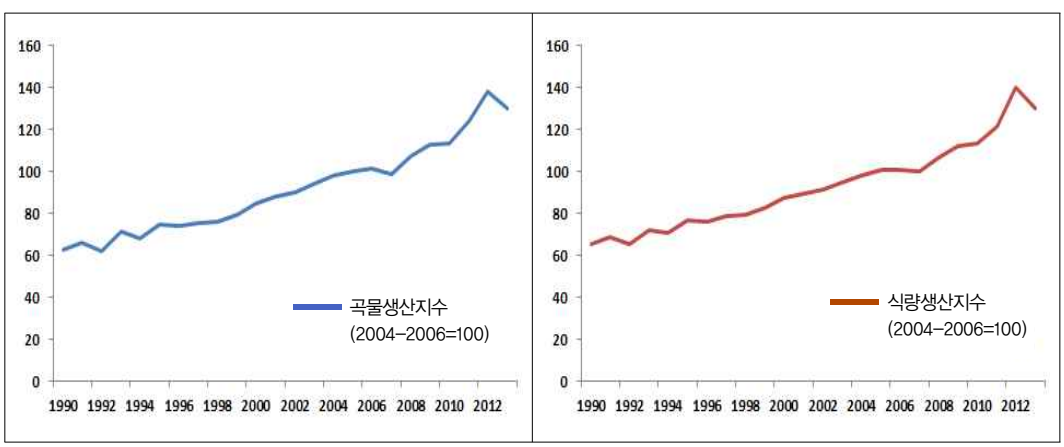

네팔 곡물생산지수(2004~06 평균=100)
자료: 세계은행(2016).

네팔 식량생산지수(2004~06 평균=100)
자료: 세계은행(2016).

그러나 2015/16년 하계 식량 생산은 지난해보다 5.6% 감소한 68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생산량보다 5.3% 감소한 수치이다. 지진으로 인해 하계 재배면적이 253만 헥타르로 지난해 대비 2.1% 감소했기 때문인데, 지난 5년간 평균과 비

24) USAID. 2008. NEPAL ECONOMIC GROWTH ASSESSMENT Agriculture.
25) Worldbank(2014.4.11.). Water and forests are Nepal's most abundant natural resources, with freshwater accounting for 2.27% of the total world supply.

교했을 때는 4.18%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해 늦은 몬순으로 인해 연기된 모내기도 수확량을 감소시켰다. 강우량은 지난 30년 평년 대비 78% 수준에 그쳤는데 국경봉쇄로 연료공급이 중단되어 관개시설 작동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료수입이 21.5% 감소하여 어려움을 가중시켰다.[26] 2016년은 재해 복구와 몬순 강우량의 평년 회복이 예상되면서 약 3.5%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물류·저장 인프라의 복구와 몬순 강우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27]

쌀

쌀은 경작 면적과 생산 모든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네팔의 주식이다. 전체 곡물 경작 면적의 42.5%에 달하며 일부 고산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재배된다. 다만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비중은 적은 편이며 전체 쌀 재배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동부, 중부 테라이 지역이 전체 쌀의 대부분을 생산한다. 계절별 생산량의 비중으로 보았을 때 여름 경작이 전체 곡물생산량의 51.5%를 차지하고 있다.[28]

그림 9 네팔 지역별 쌀 생산량

단위: 100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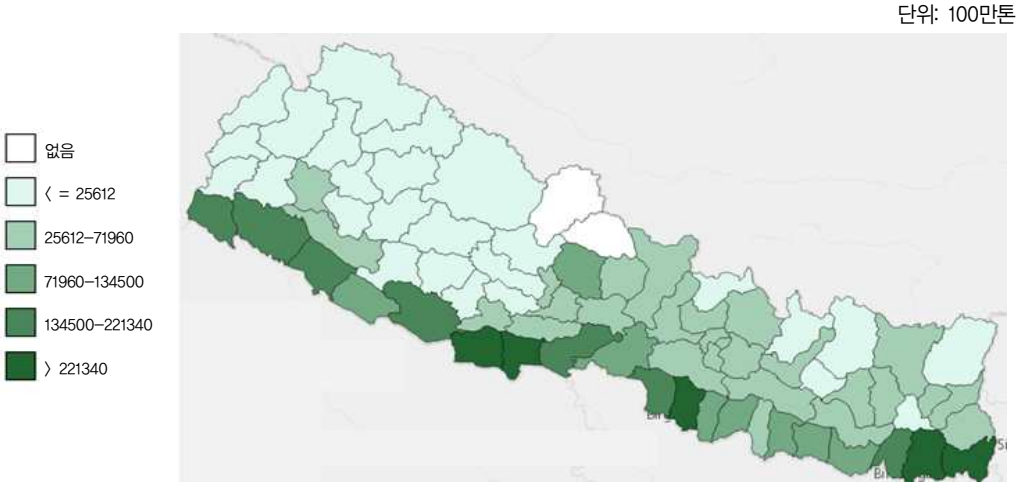

네팔농업부(MOAD). Nepal Agriculture Atlas. 기간: 1979/80–2013/14.

26) WFP. Crop Situation Update 2015/16
27) Economist Intelligencue Unit. 2nd Quarter report 2016.
28) WFP. Crop Situation Update 2015/16

표 2 네팔의 지역별 쌀 재배면적

단위: 헥타르

지역	2010/11	2011/12	2012/13	2013/14
동부산지	26,657	27,909	22,181	22,345
동부언덕	94,991	100,606	94,170	97,299
동부테라이	297,652	342,150	283,484	297,363
동부지역	419,300	470,665	399,835	417,007
중부산지	17,379	16,739	16,674	16,715
중부언덕	90,445	87,110	85,983	89,245
중부테라이	310,679	306,493	268,860	280,744
중부지역	418,503	**410,342***	371,517	386,704
서부산지	–	–	0	0
서부언덕	145,262	125,850	129,514	133,716
서부테라이	190,190	186,890	186,690	190,850
서부지역	335,452	312,740	316,204	324,566
중서부산지	8,372	8,607	8,257	7,764
중서부언덕	47,798	48,385	47,881	48,680
중서부테라이	117,550	120,262	116,175	126,730
중서부지역	173,720	**177,254***	172,313	183,174
극서부산지	14,305	14,796	14,796	14,796
극서부언덕	28,541	33,541	37,005	40,458
극서부테라이	106,655	112,155	108,900	120,246
극서부지역	149,501	160,492	160,701	175,500
합계	1,496,476	1,531,493	1,420,570	1,486,951

주: * 원본 통계합 오류

자료: 네팔 통계청. Statistical Pocket book of Nepal 2014 (2015).

쌀은 재배에 소요되는 물의 양이 많아 관개시설 의존도가 높고 몬순에 따라 한해 작황이 결정되는데 경작집약도(Crop intensity)[29]는 평균 1.8로 낮은 편에 속한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1984년 1헥타르 당 2톤을 처음 돌파한 이후로 2011년까지 2톤 수준에 머물러왔으며 2012년에야 기계 보급을 통해 헥타르 당 3.31톤으로 증가하였다. 총 생산량의 경우 1990년대까지 연 300만 톤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해도 있었다. 그러나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정부 정책과 관개지 증가로 2000년대 들어서 연 40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2년

29) 지배경작면적 중 수확되는 작물의 면적이 차지하는 백분율임.

처음으로 연 500만 톤 이상의 쌀 생산량을 달성한 이후 2014년에도 504만 톤의 생산량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2015년 지진으로 인해 생산량이 다시 478만 톤으로 하락하였으며 관개시설이 파괴되면서 향후 몇 년간 생산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30]

그림 10 네팔 쌀 총생산량과 면적당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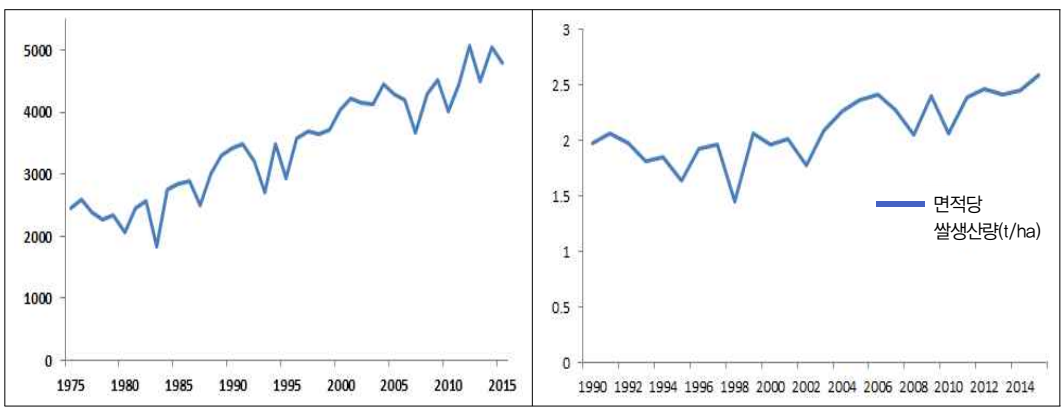

쌀 총생산량(1,000톤)
자료: CEIC(2016).

면적당 쌀 생산량(t/ha)
자료: CEIC(2016).

5만 5,000헥타르의 논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적은 몬순 강우량, 비료와 연료의 공급 제한으로 인해 올해 쌀농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16년에는 130만 헥타르에서 429만 톤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5년 평균보다 7.42%, 9.95%, 전년보다는 4.38%, 10.22% 감소한 수치이다.[31]

옥수수

네팔의 시원한 기후와 평야는 옥수수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언덕 지역의 농가들에게 중요한 영양공급원으로 주로 동부와 중부언덕과 평야지역에서 재배된다. 옥수수는 쌀과 달리 겨울재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겨울이 해충과 질병위험이 더 적어 생산량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32] 쌀만큼 생산량이 많지는 않으나 산지를 포함한 네팔 전역에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다.

옥수수는 쌀에 이은 네팔의 제2경작물로 전체 곡물경작 면적의 25.4%, 생산량의

30) CEIC.
31) WFP. 2016. Crop Situation Update 2015/16.
32) Govind KC et al. Journal of Maize Research and Development (2015) 1(1):1-9. Status and prospects of maize research in Nepal.

22.9%를 차지하고 있다.[3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농산물 수입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1년 기준 4,697만 달러에 상당하는 19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였다.

옥수수 총생산량은 1970년대 70만 톤 수준에 그쳤으나 1980년대 100만 톤으로 크게 급증하여 2011년부터는 매해 200만 톤 규모의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옥수수 생산량은 224만 톤으로 네팔인들의 소비량인 290만 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현재 연간 66만 톤의 가금류의 사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네팔의 옥수수 생산량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34] 다만 경작지 대비 생산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1970년대부터 2004년까지 옥수수 생산량은 1헥타르 당 2톤을 넘지 못하고 매해 1.4~1.8톤 수준의 수준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개량종자 보급 노력에 힘입어 2005년 처음으로 헥타르 당 2.02톤을 기록한 이후 2015년에는 2.43톤을 생산하면서 생산성 개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네팔 옥수수 총생산량과 면적당 생산량

단위: 1,000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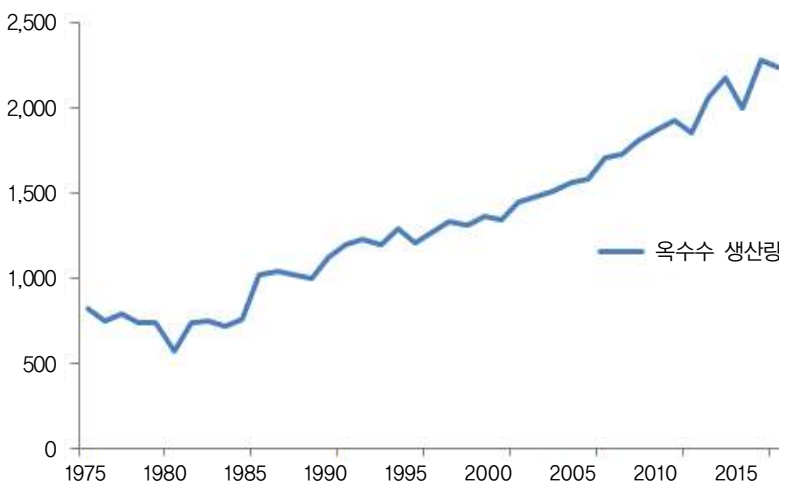

자료: CEIC.

33) WFP. 2016. Crop Situation Update 2015/16.

34) Govind KC et al. Journal of Maize Research and Development (2015) 1(1):1-9. Status and prospects of maize research in Nepal.

그림 12 지역별 옥수수 생산량

단위: 100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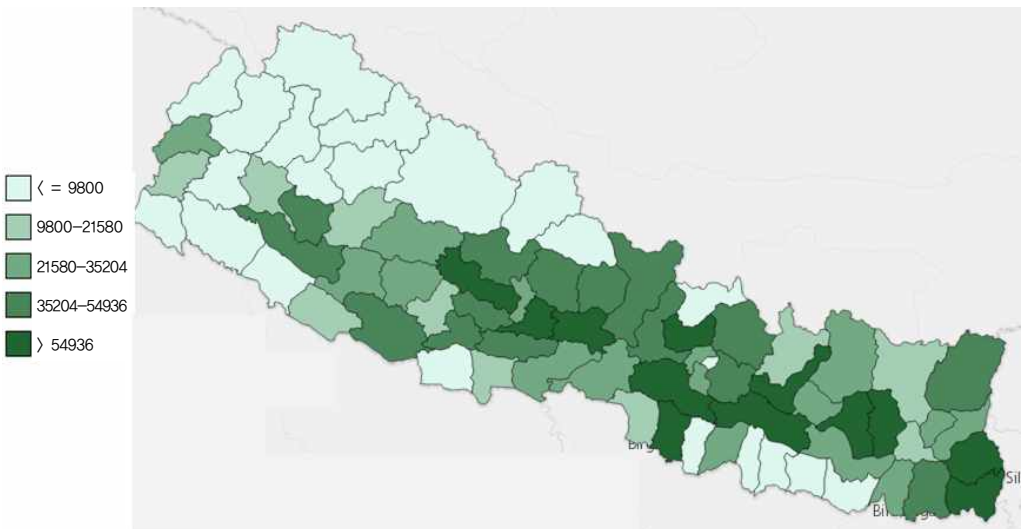

자료: MOAD. Nepal Agriculture Atlas. 1979/80–2013/14.

밀

밀은 네팔에서 세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곡물로 전체 곡물 재배면적의 22.7%, 전체 곡물 생산량의 21.5%를 차지한다. 중부지역이 밀 전체 재배면적의 30%, 생산량의 3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으며 헥타르 당 생산량은 2.75톤으로 생산성도 전국에서 제일 높다.

과거 밀 재배지는 네팔의 중부와 서부 언덕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멕시코에서 반왜성(semi-dwarf) 종이 도입된 이후 밀의 재배가 국가 전반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1965년 10만 헥타르에 불과하였던 밀 재배면적은 2015년 76만 헥타르로 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생산량 또한 같은 기간 11만 톤에서 197만 톤으로 급증하였다.[35] 재배면적은 해에 따라 소량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꾸준히 확대되어왔고 총 생산량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년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하는 다른 곡물들과 차이가 있다.

35) WFP. Crop Situation Update 2015/16.

그림 13 네팔 밀 총생산량과 면적당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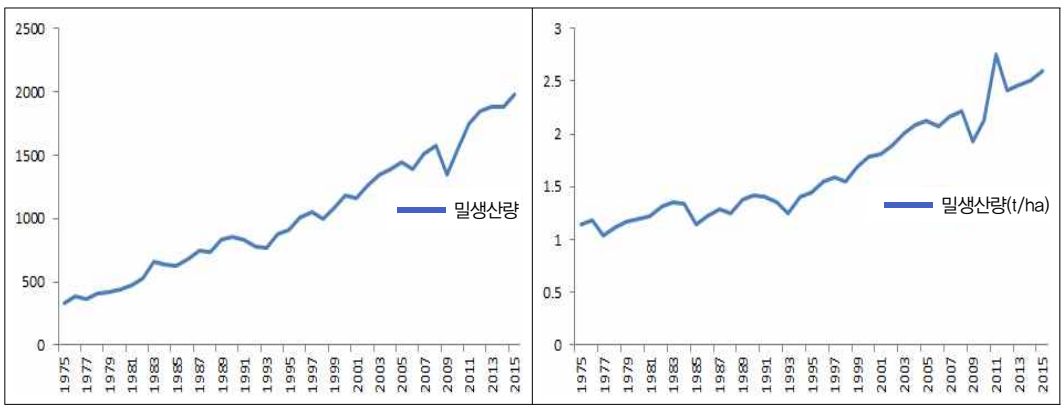

밀 총생산량(1,000톤)
자료: CEIC(2016).

면적당 밀 생산량(t/ha)
자료: CEIC(2016).

감자

감자는 유럽과 비슷한 시기인 1793년 네팔에 도입되었으나 1960년대까지 생산량이 미미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감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 네팔에서 1인당 소비가 제일 높은 식품 중의 하나이다. 고도 100m의 남쪽 평야부터 북쪽의 해발 4000m의 고산지대까지 네팔의 모든 기후대에서 자라서 고지대에서는 생산성이 쌀이나 옥수수보다 더 높아 산지에서는 쌀 대신 감자를 주식으로 삼고 있다. 주로 소규모 농가에서 재배하는데 약 20%가 산지, 50%가 언덕, 30%가 테라이에서 생산된다. 또한 여름과 겨울 모두 재배가 가능하여 네팔의 영양공급과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지대에서는 주로 쌀 추수나 황마를 재배한 후 이모작을, 고지대에서는 옥수수와 섞어서 재배한다. 동부와 중부지역이 감자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테라이 지역에서는 겨울에만 감자 재배가 이루어지나 산지와 언덕에서는 여름과 겨울 모두 감자를 재배하고 있다.[36]

36) Robert E. Rhoades. 1985. INTERNATIONAL POTATO CENTER (CIP). POTATOES IN FOOD SYSTEMS RESEARCH SERIES Report No. 2. Traditional potato production and farmers' selection of varieties in eastern Nepal

그림 14 네팔 지역별 감자 생산량

단위: 백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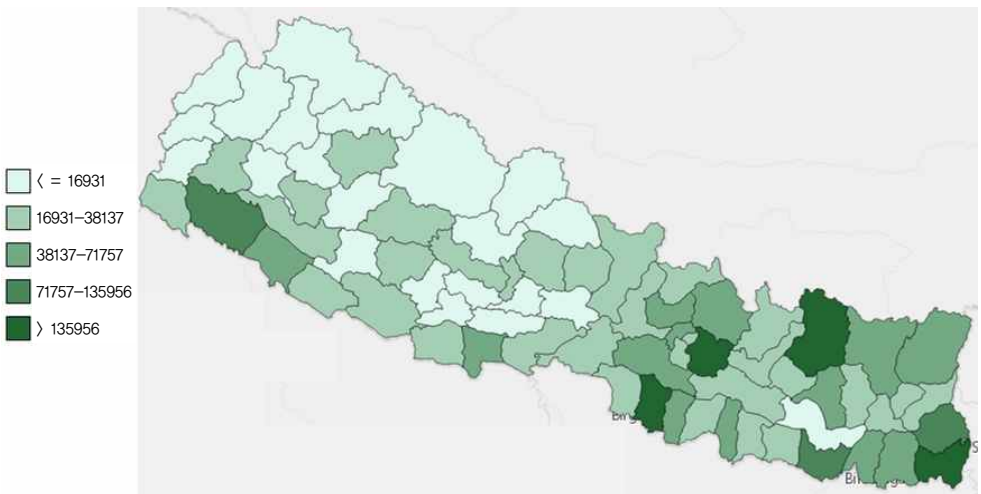

자료: 네팔농업부(MOAD). Nepal Agriculture Atlas. 2003/4–2013/14 생산량.

기존 재래종은 질병에 취약하였으나 멕시코에서 새 종자가 도입된 이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37] 감자 생산량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로[38] 98년 총 생산량은 93만 톤으로 90년대까지 100만 톤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5년에는 284만 톤으로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그림 15 네팔 감자 총생산량과 면적당 생산량

단위: 1,000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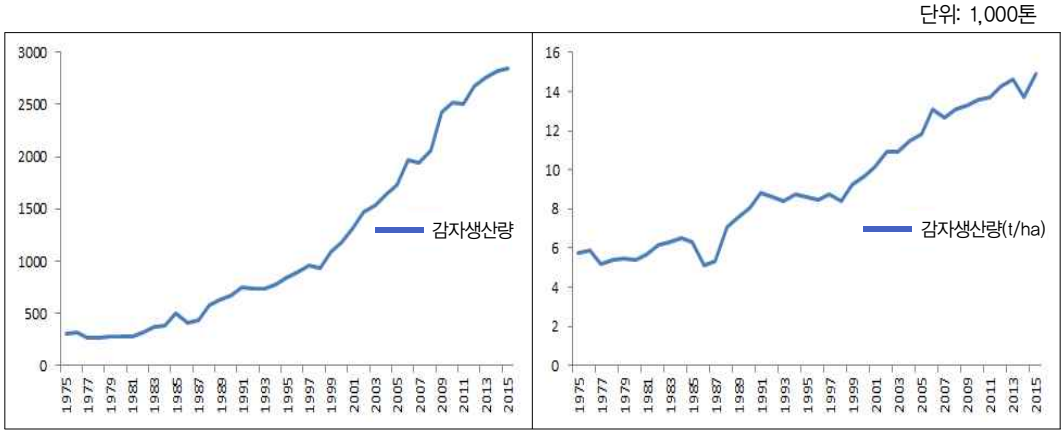

감자 총생산량(1000톤)
자료: CEIC(2016).

면적당 감자 생산량(t/ha)
자료: CEIC(2016).

37)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OTATO BOOM IN THE RICE REGION: PARTNERSHIP RESULTS.
38) WFP. Crop Situation Update 2015/16.

감자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재배면적 또한 같이 증가하였다. 재배면적은 95년 9만 7,000헥타르로 10만 헥타르를 넘지 못하였으나 96년 10만 6,000헥타르를 기록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12만 3,000헥타르, 2014년에는 20만 5,000헥타르로 90년 8만 4,000헥타르 대비 약 2.4배나 증가하였다.[39]

채소

채소가 2010년 기준 네팔 전체 경작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에 불과하였으나 그 소비량이 20년 전 연간 60kg에서 105kg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농작물 재배 다각화를 위해 채소 재배를 권장하면서 2000년부터 10년간 채소 생산량은 연평균 6.9%, 재배면적은 연평균 4.6% 상승하였다. 그러나 채소 재배 농가의 90%가 농가 당 재배면적 0.5헥타르 이하로 소규모 농가이며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은 18%, 채소재배가 주요 수입원인 농가의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연중 내내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는 12%에 불과하며 37%의 농가는 채소를 연중 4-6달만 재배하고 있다.

채소별로는 콜리플라워 재배면적이 3만 3,172헥타르, 토마토 재배면적이 1만 9,724헥타르, 양배추 1만 4,306헥타르, 호박 9,757헥타르로 가장 많은 양이 재배되고 있다. 산지에서는 주로 콜리플라워, 겨자 잎, 무, 양배추 등을 재배하며 언덕지역에서는 조롱박, 수박, 오이, 콩 등을 재배한다.[40] 가장 생산액이 많은 채소는 콜리플라워로 65억 루피이며 총 채소의 20%를 차지하며 토마토가 57억 루피, 양배추가 35억 루피 순이다. 광저기(asparagus bean)과 오이, 겨자 잎이 각각 20억 루피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 작물들이 채소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개량종자 보급률은 59%이나 극서부 테라이지역에서는 79%, 극서부 언덕지역에는 그 비율이 28%에 불과하여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41]

채소재배 농가의 대부분은 소규모 농가로 생산량의 61%만 판매하고 39%가 자가 소비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작다. 전체 생산량의 55%를 차지하는 테라이지역에서는 재배되는 야채의 79.2%가 판매되지만 전체 생산의 5%만을 차지하는 산지 채소의 판매비율은 15.5%에 불과하여 지역별로 상업화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상품으로 판매하는 농부들의 판매지의 60%는 지역시장이며, 도보, 자전거, 인력거 등으로 근거리

39) CEIC.
40) UKAID. 2015. Vegetable Sector in Nepal: Rapid Post Earthquake Market Analysis.
41) 네팔 통계청. 2010. Nepal vegetable crops survey 2009–10.

에 판매하는 농부들은 79%이다. 도매시장에 납품하는 농부들의 비율은 25%에 불과한데 지역별로 도매 창고가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 비율 또한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42]

저장기술의 미발달로 수확, 포장, 배송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이 많아 토마토의 손실비율이 33%, 콜리플라워 14%, 양배추 13%, 완두콩이 10%, 콩이 7%에 달한다. 이러한 손실이 가격에 반영되어 납품에서 붙는 마진이 2012년 기준 양배추 150%, 콜리플라워 113%, 완두콩 111%, 토마토 94%로 매우 높다.[43]

판매량이 많지도 않고 손실되는 양이 많아 네팔은 상당량의 채소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콜리플라워는 가장 많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한 해 수입량이 3,329톤에 달한다. 또한 국경 지역에서 밀수되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양이 많음을 고려할 때 실제 수입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채소를 인도에 수출하기도 하나 이는 7월~10월 일부 기간으로 제한되고 있다.[44]

3.1.2. 네팔 식량수급 현황

네팔은 식량 자급자족 달성이 목표인 식량안보 취약국가로 식품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난다. 2015년 기준 네팔의 식품가축 수출액은 약 202억 루피이지만 수입액 996억 루피의 1/5 수준에 불과하여[45] 큰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46] 식품은 전체 수입액의 약 18%를 차지하는데 내륙국가의 특성상 수입과 수출의 대부분이 인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출의 경우 84%, 수입의 경우 75%가 인도와의 거래로, 2015년 인도에서 수입된 쌀 거래액은 152억 루피에 이른다.[47] 2010/11-2014/15 연평균 곡물 수입량은 54만 8,000톤으로 2014/15년에는 63만 2,000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는 지진으로 인해 수입량이 전년대비 35% 증가한 85만 6,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량의 대부분은 쌀이지만 옥수수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옥수수의 수입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48]

FAO는 네팔을 낮은 수준의 식량위기국(minimally food insecure)으로 지정하고 있다.[49]

---

42) 네팔 통계청. 2010. Nepal vegetable crops survey 2009-10.
43) 네팔 농업부. 2011. A report on value chain analysis of off-season vegetables.
44) 네팔 농업부. 2011. A report on value chain analysis of off-season vegetables.
45) CEIC.
46) USAID. NEPAL ECONOMIC GROWTH ASSESSMENT Agriculture. 2008.
47) CEIC.
48) FAO. GIVIEWS Country cereal balance sheets. 2016.
49) FAO. 2015. Nepal Food Security Bulletin Year 2015, Issue 43.

낮은 식량자급률로 네팔의 식료품 가격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인데, 2014년 기준 국제적으로 식량 문제를 앓고 있는 20개 국가 중 아이티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5세 미만 영아의 영양실조 비율은 2011-13년 평균 16%에 달해 빈곤층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50]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네팔 정부 또한 농업분야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지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로 인도 6%, 중국 1.7%, 인도네시아 0.9% 등 타 국가보다 높다.[5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개시설인프라 투자와 종자보급 등의 노력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네팔은 곡물 필요량 생산을 달성하였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였던 1990년대와 달리 2000년대 들어서 곡물 잉여 생산에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05/06, 06/07, 08/09, 09/10년에는 곡물 자급자족에 실패하였으며 2011/12년에는 604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여 최대치를 갱신하였으나 2015년 지진 이후 농업인프라가 파괴되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자급 현황은 곡물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작물들이 자급량을 달성한 반면 물이 많이 소요되는 쌀의 경우는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의 생산 현황을 보았을 때 옥수수는 잉여 생산량이 26만 톤, 밀은 105만 톤으로 총 곡물생산은 필요량보다 40만 톤을 초과하였으나 곡물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은 소비가능 생산량이 245만 톤으로 실제 필요한 양보다 90만 톤이 부족하였다.

표 3 네팔의 곡물별 자급 달성 현황 (2013년 기준)

곡물	1인당 한해 실제 소비량(kg)	필요량(t)	소비가능 생산량(t)	편차(t)
쌀	122	3,359,832	2,455,136	−904,696
옥수수	41.6	1,145,648	1,408,017	262,369
밀	17	468,173	1,518,631	1,050,458
기장	9	247,856	248,168	312
보리	0.37	10,052	10,174	122
메밀	0.29	7,986	8,136	150
총합	190.26	5,239,548	5,648,262	408,714

자료: WFP(2013). Crop Situation Update.

50) FAO. 2014. Statistical year book.
51) FAO. 2014. Statistical year book.

그림 16 네팔 식량 수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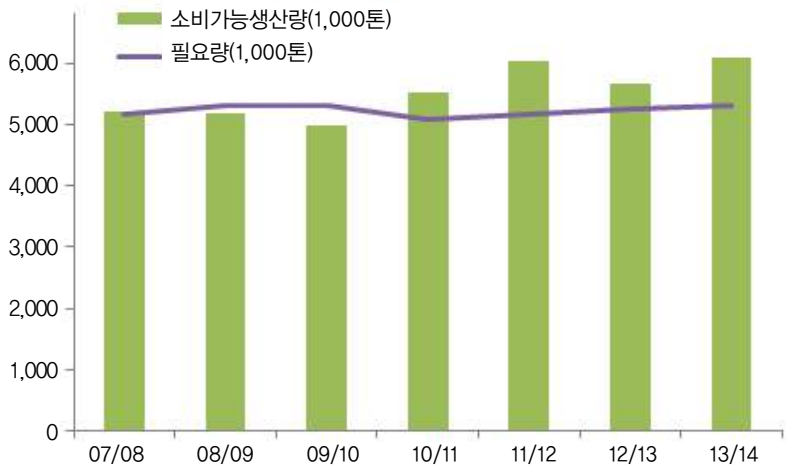

자료: 네팔 농업부(2014). Statistical year book.

대부분 작물의 자급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이 여전히 네팔 농업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불안정한 작황 뿐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네팔의 식량 공급은 테라이지역에서 생산되는 잉여 생산량을 도시와 산지로 수급하여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52] 그러나 농업 생산품을 시장에서 거래하기보다 자급에 의존하는 농촌의 소규모 농가들의 비율이 높아 지역별 곡물 자급현황이 이들 농가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네팔에서 곡물 자급을 달성한 지역은 테라이만으로 언덕지역과 산지의 곡물 부족분은 2013년 각각 5,029톤과 1만 5,767톤에 달했다. 곡물 생산량이 소비보다 많은 지역은 극동 테라이, 중부 테라이, 중서부 언덕지역, 동부 산지, 중앙 산지뿐이며 33개 지역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였다. 이 중 11개 지역은 수요가 공급의 30%를 초과하였으며 14개 지역은 부족분이 10~30%를 기록하였다.[53]

3.1.3. 네팔 농가 토지소유와 경제력 현황

과거 분쟁을 겪었던 농촌에서 급격한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농촌거주 인구 비율이 81%에 달할 만큼[54] 농촌 인구의 비율이 높다. 때문에 농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33.7%이나 네팔 경제에서 농업은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52) Kathmandu Post(2016.7.29). Mechanisation is key.
53) WFP. Crop Situation Update. 2012/2013.
54) World Bank database. 2015.

네팔 농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토지소유 불균형이다. 토지소유가 농가의 빈곤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나 금전적 이익을 볼 수 있을 만큼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은 적다. 실제로 인구의 절반이 전체 토지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5%의 인구가 2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0%의 농가는 보유 토지가 전혀 없어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는 자본능력이 부족하여 관개 등 인프라 투자가 어렵고 이는 낮은 토지생산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55]

이로 인해 농촌의 빈곤율은 도시의 2배에 달하며, 빈곤층의 95%가 농촌지역에 거주할 정도로 지역 간 빈부격차가 심하다. 특히 동부 언덕지역은 국가 전체적 빈곤율이 감소하였던 지난 8년간 빈곤율이 19%나 증가하는 역행적인 모습을 보였다.[56] 농촌 안에서도 동부 언덕, 산지 지역은 빈곤율이 28%인 반면 중서부와 극서부 언덕, 산지 지역은 빈곤율이 72%에 달할 정도로 지역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토지 무소유 혹은 거의 토지가 없는 소규모 농업임금종사자의 빈곤율이 58%로 가장 높고 소규모 농가의 빈곤율이 50%, 과거 카스트제도의 불가촉천민의 빈곤율이 48%를 나타내고 있다.[57]

네팔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나 토지 임대 환경을 개선하거나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실패하였다. 만성적인 토지 문제와 토지개혁 실패는 정부와 네팔 공산당(마오이스트)의 분쟁 원인의 하나가 되었고 여전히 토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 과제로 남아있다.[58]

농가당 평균 토지 면적은 0.8헥타르이며 0.5헥타르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 1헥타르 미만의 토지 소유 농가는 전체 토지보유 농가의 3/4에 달하며 1961년부터 2001년간 평균 소유 토지 규모는 오히려 28% 감소하였다. 다만 무소유 농업종사자들이 점차적으로 농촌을 떠나면서 무소유 토지농의 비율은 1991년 32.1%에서 2008년 16.8%로 감소하였다.[59]

자급자족 가족 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네팔에서 78%의 농가가 판매가 아니라 자가 소비용으로 농작물을 재배한다. 판매가 주요 목적인 농가는 1%에도 미치지 못하며 21%의 농가만이 판매와 가정 내 소비를 비슷한 순위로 두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

55) USAID. USAID Country profile Nepal. PROPERTY RIGHTS AND RESOURCE GOVERNANCE.
56) USAID. NEPAL ECONOMIC GROWTH ASSESSMENT Agriculture. 2008.
57) Chhetry 2002; World Bank 2009a; Karkee 2008; Bennett 2005; Nepal and Bohara 2009. USAID Country profile Nepal 재인용.
58) USAID. USAID Country profile Nepal. PROPERTY RIGHTS AND RESOURCE GOVERNANCE .
59) USAID. 2008. NEPAL ECONOMIC GROWTH ASSESSMENT Agriculture.

다.[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농가들이 식량 자급자족에 실패하고 있는 데 60%의 농가들이 다음 수확까지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며 40%의 농가가 6개월 미만의 식량이, 20%의 농가는 6개월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다.[61]

관리부족, 도로 접근성, 관개시설 부족과 협소한 시장 등으로 농가 규모 확대에 제한이 있으며 자연재해와 농작물 재해에 취약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워 농가 규모 확대와 빈곤율 감소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다.[62]

3.2. 네팔 농업정책 동향

3.2.1. 네팔의 과거 농업정책

네팔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삶의 질, 식량 및 영양 안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포괄적인 농업 분야 개발'을 농업 분야 개발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구해오고 있다.[63] 네팔은 농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왔으며 특정 작물을 대상으로 한 단기 정책과 국가개발전략에 포함된 농업정책 또한 혼재하여 실행해 왔다.

농업전망계획(Agriculture Perspective Plan 1995/96-2014/15)은 네팔 농업부와 아시아개발은행이 함께 수립한 대표적인 장기 농업 계획이다. 농업전망계획은 20년간 장단기 지표를 수립하여 1) 요소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업 성장 촉진 2) 삶의 질 향상과 고용확대를 통한 빈곤 감소 3) 자급자족 형태의 농업을 재배작물 다양화를 통한 상업기반 농업으로 변화 4) 농업 발전을 통한 전반적인 경제개발 달성 5) 장단기 전략 수립과 전략 이행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농업의 발전이 승수효과를 통해 비농업부문에도 긍정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계획된 기술주도의 전략을 담고 있다. 식량 수급 안정이 사회 경제를 안정시켜 국가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동 전략은 농업주도의 성장정책을 통한 빈곤감소와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비료, 관개시설, 도로, 전력보급, 기술 등의 투입요소 확대에 따른 요소생산성 증대에 중점을 둔 녹색혁명을 추진하였다. 또 정책 목표를 달성을 돕기 위해 2001년 농업전망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조율과 정책(Policy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the Effective

60) CBS, WB, DFID, and ADB, 2006.; FAO and Emergencies. Country Brief에서 재인용.
61) USAID. 2008. NEPAL ECONOMIC GROWTH ASSESSMENT Agriculture.
62) FAO and Emergencies. Country Brief. (http://www.fao.org/emergencies/countries/detail/en/c/161540/).
63) 한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3. 네팔 국가협력전략.

Implementation of Agriculture Perspective Plan)을 발표하여 정책 이행을 촉진하였다.[64]

장기계획 외에도 네팔은 수시로 농업정책을 수립·실행해왔는데, 2004년 농업 주도의 농촌개발을 이끌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표로 발표된 국가농업정책(National Agriculture Policy)이 대표적이다. 이 정책은 상업작물 재배 장려와 농가규모를 토지소유 4헥타르 이상과 4헥타르 미만 두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농가에게 더 많은 재원을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자급자족 농업 시스템을 상업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빈곤감소와 식량수급 안정을 도모하였다.[65]

2006년 추진된 농업비즈니스(Agro-Business) 진흥정책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재배작물 다양화 및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자급자족 수준에서 벗어나서 농업 상업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네팔 정부는 시장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작물 생산을 장려하였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07년 상업농업정책(Commercial Agriculture Policy)로 이어졌다. 네팔 농업부는 상업화에 좀 더 중점을 두기 위해 동 정책을 발표하여 토지 무소유 농가에게 상업작물 재배를 위해 정부 소유의 황무지를 장기임대하였다. '1마을 1작물' 프로그램을 통해 상업작물 재배를 촉진하였으며 낙농업사업도 함께 추진되었다. 정부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상업작물로 차와 커피를 선정하여 동부지역에서는 차, 서부 언덕지역에서는 커피재배를 장려하였다.

상업농업정책 뿐만 아니라 개별작물의 재배확대를 위한 정책도 발표·추진해왔다. 차 재배가 소득증대와 고용확대, 외화획득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한 네팔은 2000년 국가 차·커피개발위원회법(National Tea and Coffee Development Board Act)에 따라 국가차생산정책(National Tea Policy)를 발표하고 민간의 차 재배, 가공, 무역 산업을 장려하였다.

또한 네팔의 낮은 농업생산성의 원인이 낙후된 종자에 있다고 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0년 국가종자정책(National Seed Policy)를 발표하고, 고품질의 개량종자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였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인프라 보급정책도 수립되었다. 네팔의 주식인 쌀은 관개시설이 부족하여 천수답의 형태로 생산되는 비율이 높으며 그 외의 작물 재배도 관개시설 보다는 강수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네

64) 네팔 농업부; ADB. 1995. Nepal Agriculture Perspective Plan 1995/96-2014/15.
65) FAO. 2010. National Medium-Term Priority Framework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CPF)(2010/11 - 2014/15).

팔 정부는 관개시설을 확장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2003년 관개정책(Irrigation Policy)를 발표하였다. 빗물 재활용, 연못, 스프링클러, 펌프 등 다양한 관개시설의 활용을 촉진하였으나 관개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이는 네팔 농업의 중요한 목표로 남아있다.

농업정책은 단독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개발의 큰 틀에서도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다. 2010년 발표된 네팔의 국가개발계획인 3개년 국가개발계획(Three Year Interim Plan 2010/11-2012/13)에서는 농업의 상업화와 현대화를 촉진하여 식량을 확보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안을 담고 있다. 농업 개발을 위해 ① 농축산물 상업화 및 지역 인프라 개발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② 개량종자의 접근성 개선 및 농축산 생산비용 감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 ③ 농축산 생산품의 품질 관리, 모니터링 및 규제 효율화 ④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및 생물다양성 활용-증진 및 보호 ⑤ 유기 농업 확대 ⑥ 연구, 확장 교육, 일반 교육 과정 조정 ⑦ 계약 농업 및 협동 농업 확대 지원 ⑧ 농업 시장 개발 및 확대 8가지 안을 담고 있다.[66]

표 4 네팔 주요 농업정책 목표

연도	정책	주요목표
2004	국가농업정책 (National Agriculture Policy)	• 농업 생산량, 생산성 증대 • 상업농작물 재배 확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 • 환경과 생물다양성, 천연자원 보존
2000	국가차생산정책 (National Tea Policy)	• 차 재배농가에 신용대출 • 세제혜택 • 경매시스템 개선 • 가공, 포장기술 개발
2000	국가종자정책 (National Seed Policy)	• 다양한 작물의 개량종 보급 • 생산된 개량작물의 수출 장려 • 종자산업 개발
2002	국가비료정책 (National Fertilizer Policy)	• 비료 공급 시스템 개선 • 통합적식물영양관리시스템(IPNS) 관리
2003	관개정책 (Irrigation Policy)	• 연중 사용가능한 관개시설 확대 •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 관개시설 관련 기술 보급
2006	농업비즈니스진흥정책 (Agro-business Promotion Policy)	• 상업작물 재배 장려 • 농업인프라 개선 • 농작물 수출을 위한 민간의 역할 확대
2007	상업농업정책 (Commercial Agriculture Policy)	• 1마을 1작물 상업화 추진 • 정부소유 황무지 농가 임대

자료: 네팔 농업부, FAO.

66) Nepal National .lanning Commission. Three Year Interim Plan 2010/11-2012/13.

3.2.2. 농업정책 현황

2013년 발표된 네팔 농업개발전략(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는 기존에 추진되었던 농업전망계획(Agriculture Perspective Plan 1995/96-2014/15)이 완료되면서 네팔정부와 주요원조기관(ADB, IFAD, EU, FAO, SDC, JICA, WFP, USAID, DANIDA, World Bank, DfID, AusAID, UN Women)이 함께 수립한 정책이다. 농업전망계획 실행 당시보다 농업 전반의 수준이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생산성이 낮으며 식량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20년간의 후속 장기전략이다. 농업전망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공여국간 통합적 접근을 통한 농업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식량안보와 영양공급, 가계경제 향상에 공헌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자족(Self-reliant)적이며, 지속가능하며, 경쟁력있고 통합적인 농업"을 달성하기 위해 발표된 농업개발전략은 2010년 네팔 농업분야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비전에 따라 5/10/20년 단위의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표 5 네팔 농업개발전략 지표와 목표치

비전	지표	2010 현재	단기(5년)	중기(10년)	장기(20년)
자급자족	곡물 자급자족률	곡물의 5% 무역적자	0% 무역적자	0-5% 무역흑자	0-5% 무역흑자
지속가능	연중 사용가능 관개설비 보급률	18%	30%	60%	80%
	유기농 퇴비 활용	1%	2%	4%	4%
	척박토지 면적(Ha)	320만	288만	256만	160만
	산림비율	40%	40%	40%	40%
	헥타르당 토지농업생산성	$1,804	$2,302	$2,938	$4,787
	GDP대비 농업비즈니스 비율	10%	12%	14%	20%
경쟁력	농업 무역수지	$3억5,000만 적자	$3억1,000만 적자	$1억8,100만 적자	$6억9,000만 흑자
	농업 수출액	$2억 4,800만	$4억	$7억	$20억
통합	여성 단독/공동소유 농토 비율	10%	15%	30%	50%
	농업프로그램 활용 농가비율	12%	17%	25%	50%
성장	농업GDP 연평균증가율	3%	4%	5%	6%
생계	농업종사자당 농업GDP	$794	$979	$1206	$1833
	농촌 빈곤율	27%	21%	16%	10%
식량안보, 영양공급	식량부족	24%	16%	11%	5%
	영양상태	발육부진 41.5% 체중미달 31.1%	발육부진 29% 체중미달 20%	발육부진 20% 체중미달 13%	발육부진 8% 체중미달 5%

자료: 네팔 농업부(2013).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전략 우선순위로는 ① 농업관련 과학 기술 분야 투자 촉진. 지식 순환구조 (연구-교육-확장) 지원 ②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농업 성장. 사회적·지역적 불평등 개선 ③ 소농의 경쟁력 있는 가치사슬 창출 지원 ④ 지역 인프라와 개발 및 기업농 육성 4가지로 설정하였다.[67]

장기전략 뿐만 아니라 단일 전략 또한 꾸준히 수립하고 있다.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국제기구와 NGO에서도 꾸준히 개량종자 보급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네팔 정부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2000년 발표된 국가종자정책(National Seed Policy)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3년 국가종자비전 2013-2025 종자분야 개발전략(National Seed Vision 2013-2025 Seed Sector Development Strategy)를 발표하여 개량종자 보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 개량종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종자 수입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동 정책에서 정부는 1) 네팔 종자 산업 육성 2) 농업생산성 증대 3) 농가수입증대 4) 수입 종자 대체 5) 종자수출 등의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나가고 있다.[68]

2014년 도입된 농업기계화 촉진정책(Agriculture Mechanisation Promotion Policy)은 도농현상으로 인해 농촌인구가 감소하면서 기계화를 통해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또한 네팔 농토의 상당수가 경작되지 않고 있어 기계화를 통해 미경작지 감소와 생산량 증대를 꾀하고 있는데 보급률이 낮은 만큼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은 농업개발전략에도 포함되어 있어 농업개발전략의 목표를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네팔 정부는 농기계를 도입하는 농가에게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소규모 농가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농기계를 대여하고 있다.[69]

농업부 차원의 정책 이외에도 네팔 정부는 총리농업현대화사업(Prime Minister Agriculture Modernisation project)을 통해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 사업은 1) 농산물 가공센터, 저장시설, 판매처와 냉장보관시설 설립, 작물 조직배양실험에 50%의 비용 보조 2) 2,100개 구역에 도로망을 확장3) 농가 신용대출 4) 보험비 보조 5) 농업에 필요한 자재 수입 관세 1%로 인하 6) 쌀, 밀, 옥수수, 사탕수수 가격보조 등의 안을 담고 있다.[70]

67) ADB et al. 2013. Agricultural Development of Nepal.
68) 네팔 농업부. 2013. National Seed Vision 2013-2025 Seed Sector Development Strategy.
69) The Himalayan Times(2016.4.27). MoAD framing strategy to implement agriculture mechanisation policy.
70) The Himalyan Times(2016.5.28). Govt aims to boost productivity to make Nepal self-reliant in agriculture.

참고문헌

외교부. 2011.「서남아시아태평양국 네팔개황」. 외교부.

한국 정부관계부처 합동. 2013.「네발 국가협력전략」.

한국수출입은행. 2016.「네팔 국가개황」. 한국수출입은행.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0. *Nepal vegetable crops survey 2009-10.*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4. *Population Atlas of Nepal 2014.*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E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 *Nepal Country Report 2nd Quarter 2016.* Eonomist Intelligence Unit.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01. *Crop Diversification In Nepal.*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14. *Statistical year book 2014.*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15. *Statistical year book 2015.*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15. FAO and Emergencies. *Country Brief.* FAO. (http://www.fao.org/emergencies/countries/detail/en/c/161540/).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15. *Nepal Food Security Bulletin Year 2015, Issue 43.*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15.11.19. *GIEWS Country Brief Nepal.*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16. *GIEWS Country cereal balance sheet*s. FAO

Govind KC et al. Journal of Maize Research and Development. 2015. 1(1):1-9. *Status and prospects of maize research in Nepal.*

Kathmandu Post. 2016.7.29. "*Mechanisation is key.*"

Ministry of Agrigultural Development. 1995. A*griculture Perspective Plan 1995/96-2014/15.*

Ministry of Agrigultural Development. 2000. *National Seed Policy.*

Ministry of Agrigultural Development. 2000. *National Tea Policy.*

Ministry of Agrigultural Development. 2001. *Policy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griculture Perspective Plan.*

Ministry of Agrigultural Development. 2003. *Irrigation Policy.*

Ministry of Agrigultural Development. 2004. *National Agriculture Policy.*

Ministry of Agrigultural Development. 2006. *Agro-Business Policy.*

Ministry of Agrigultural Development. 2007. *Commercial Agriculture Policy.*

Ministry of Agrigultural Development. 2010. *Three Year Interim Plan 2010/11-2012/13.*

Ministry of Agrigultural Development. 2011. *A report on value chain analysis of off-season vegetables.*

Ministry of Agrigultural Development. 2013.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Ministry of Agrigultural Development. 2013. *National Seed Vision 2013-2025 Seed Sector Development Strategy.*

Ministry of Agrigultural Development. 2014. *Agriculture Mechanisation Promotion Policy.*

Ministry of Agrigultural Development. 2014. *Statistical yearbook.*

Robert E. Rhoades. 1985. INTERNATIONAL POTATO CENTER (CIP). POTATOES IN FOOD SYSTEMS RESEARCH SERIES Report No. 2. *Traditional potato production and farmers' selection of varieties in eastern Nepal.*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2008. *POTATO BOOM IN THE RICE REGION: PARTNERSHIP RESULTS.*

The Himalayan Times. 2016.4.27. "*MoAD framing strategy to implement agriculture mechanisation policy.*"

The Himalyan Times. 2016.5.28. "*Govt aims to boost productivity to make Nepal self-reliant in agriculture.*"

UKAID. 2015. *Vegetable Sector in Nepal: Rapid Post Earthquake Market Analysis.* UKAID.

UNDP. 2008. Climate change country profiles Nepal. UNDP.

USAID. 2008. *NEPAL ECONOMIC GROWTH ASSESSMENT Agriculture.* USAID.

USAID. 2011. *PROPERTY RIGHTS AND RESOURCE GOVERNANCE* USAID.

USAID. 2014. *USAID/Nepal Feed the future overview.* USAID.

USAID. 2015. Country profile Nepal. USAID.

World Food Programme. 2013. *Crop Situation Update 2012/13.* World Food Programme.

World Food Programme. 2016. *Crop Situation Update 2015/16.* World Food Programme.

Worldbank. 2014.4.11. *"Nepal: Irrigation and Water Resource Management."* Worldbank.

참고사이트

네팔 국가기획위원회 (www.npc.gov.np/)
네팔 농업부 (www.moad.gov.np/en/)
네팔 재정부 (www.mof.gov.np/)
네팔 중앙은행(www.nrb.org.np/)
네팔 통계청 (www.cbs.gov.np/)
세계식량기구 (www.fao.org/home/en/)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아시아개발은행 (www.adb.org/)
외교부 (www.mofa.go.kr)
한국국방연구원 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www.kida.re.kr/woww/)
CEIC (www.ceicdata.com/)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http://cbs.gov.np/atlas/maps.html?chapter=2&map=2.4)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FAOSTAT (www.fao.org/statistics/en/)
GIEWS (www.fao.org/giews/)
Knoema USDA International Agricultural Productivity (https://knoema.com/USDAIAP2015/usda-international-agricultural-productivity-201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Agricultural Productivity (http://www.ers.usda.gov/data-products/international-agricultural-productivity.aspx)
World Bank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 (sdwebx.worldbank.org/climateportal)

PART 4

국제기구동향

OECD

OECD국가 간 농가 규모 분포 비교 논의 | 엄진영

세계농업 HISTORY

ㅁ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시아의 농업 주스
	2월	**세계무역기구(WTO)** WTO 농업분야 논의 동향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국제식량안보 논의동향
	4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UNCTAD와 OECD 논의 동향
	5월	**지구환경기금(GEF), 농식품 국제포럼(GFFA)** 국제기구 논의 동향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개발은행(ADB) 동향 OECD의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조사·분석 결과(1)
	7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FAO 2013년 통계연감 : 기아와 지속가능성 문제 OECD 농산물 수출제한조치 조사·분석 결과(2)
	8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The World Bank)** WTO 및 세계은행 농업관련 논의 동향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OECD 및 WT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10월	**아시아개발은행(ADB), UN식량농업기구(FAO)** ADB 및 FAO 농업 관련 논의 동향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3년 OECD 회원국의 농정 검토와 평가
	12월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 위험관리 분석

ㅁ 국제기구 동향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4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 타결과 향후 전망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농업투자정책 논의 동향 농업분야 무역원활화 지표 개발
	3월	**국제연합(UN)** UN 세계 가족농의 해: 가족농의 의미와 가치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식품쓰레기 감소 방안 논의 동향
	5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FPRI의 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의 기후변화보고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영세농 문제와 식품쓰레기 정책에 관한 OECD 논의 동향
	7월	**UN환경계획(UNEP)·세계은행(The World Bank)·UN식량농업기구(FAO)** UNEP의 세계 토지사용에 관한 평가 세계은행과 FAO의 도시농업 논의 동향
	8월	**세계은행(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 글로벌 식량위기
	9월	**OECD·FAO Outlook** OECD·FAO 농업 전망 2014~2023
	10월	**OECD·FAO** 2014년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평가 ICT를 활용한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
	11월	**FAO** 세계 식량안보의 진단
	12월	**FAO** 지속가능한 식품과 농업 확립을 위한 비전 **WTO** 2014년 WTO/DDA 농업협상 동향

ㅁ 국제기구 동향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월	**OECD** 2014년 OECD 세계농업포럼
	3월	**World Bank ·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 다보스포럼의 논의 동향
	4월	**OECD** Post-2015 국제개발협력 체제
	5월	**세계물위원회(WWC)** 제7차 세계물포럼 미래식량을 위한 물
	6월	**World Bank · UN** 세계은행의 민관협력사업 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논의동향
	7월	**WTO** 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9월	**Expo Milano 2015** 2015 밀라노엑스포에서 제기된 식량과 영양안보 논의
	10월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현황
	11월	**WTO** 2015년 WTO 공공포럼의 논의 내용
	12월	**UN** UN사막화방지협약 논의 동향
2016년	1월	**WTO** 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2월	**OECD** 2015 OECD 농촌정책 논의
	3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16년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의 체계적 지도력에 관한 논의 내용과 시사점

ㅁ 국제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4월	**OECD, SDGs** 새로운 농촌 정책(New Rural Policy)의 웰빙(well-being)측정 지표 논의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
	5월	**OECD** OECD 농업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시사점
	6월	**OECD** 정책성과 지표에 관한 OECD 논의
	7월	**EU** BREXIT가 농업과 농정에 미칠 영향

세계농업 「국제기구 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7

OECD국가 간 농가 규모 분포 비교 논의*

엄 진 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농촌의 인구, 특히 농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농가의 수는 지난 20여 년 간 감소하였다. 산업화·도시화와 맞물려 농촌인구,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상의 차이만 있을 뿐 OECD국가도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농가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가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동절약형 기술개발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농가는 규모를 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소규모 농가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농업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편향된(skewed) 농가 규모 분포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농업 구조에서 대규모 농가가 존재하지만, 많은 수의 소규모 농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jeom@krei.re.kr). 본고는 OECD에서 2016년에 발간한 R. Bokusheva & S. Kimura의 "Cross-country comparison of farm size distribution"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그림 1 캐나다와 미국의 농가 수와 규모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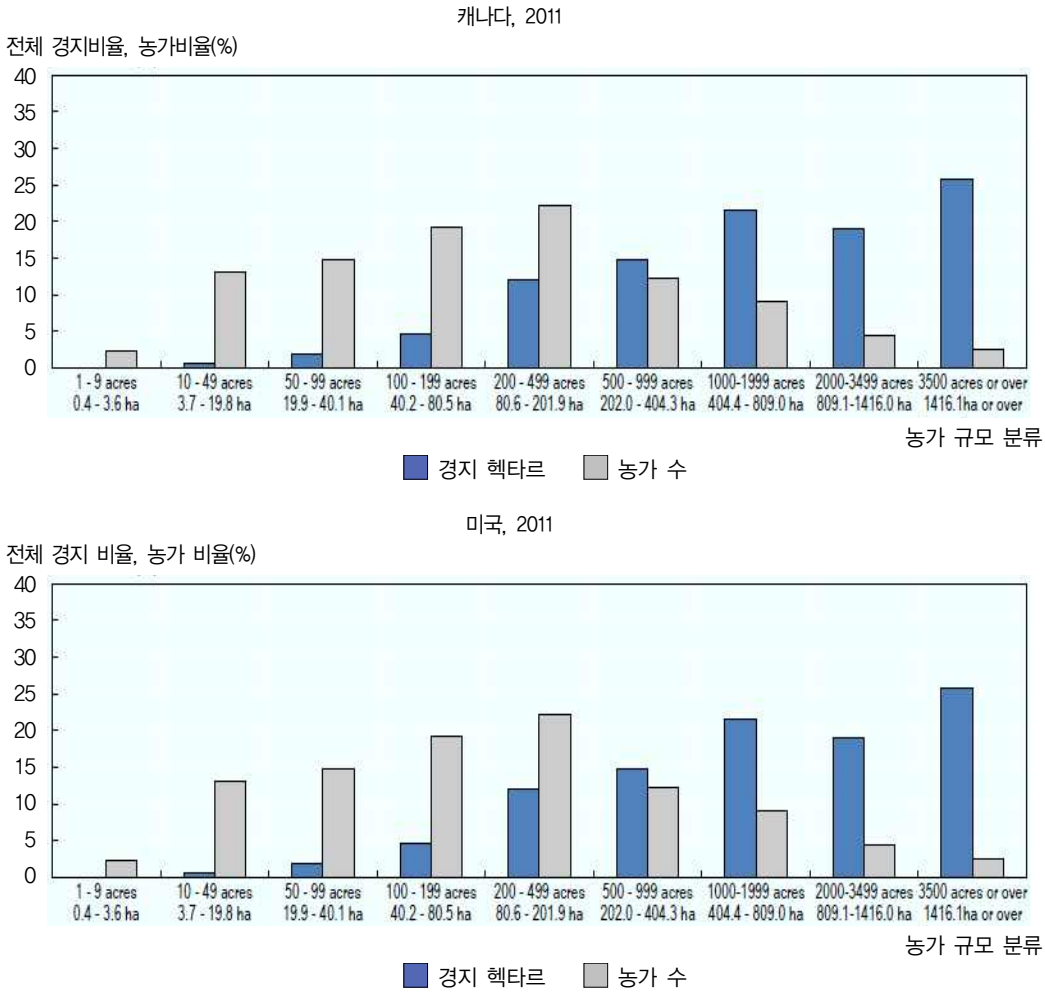

자료: Boukusbeva and Kimura, 2016:8

이러한 농업의 이중적 구조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즉, 대규모 토지 소유와 기술개발, 임금근로자 고용을 기반으로 대규모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소규모 가족 단위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농업의 이중적 구조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산술 평균으로 농가 규모를 측정하고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농가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농가 규모 변화와 농업 구조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최근 발표된 OECD의 농가 규모 분포도 측정 방법 관련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올해 발간된 “Cross-country comparison of farm size distribution”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2. 농가 규모 측정 방법

2.1. 기존 측정 방법의 한계

농가 규모를 측정하는 데 흔히 쓰였던 지표는 산술 평균이었다. 산술 평균에 더하여 중위수를 보완적으로 함께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산술 평균과 중위수는 분포가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을 가질 때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아낼 수 있다. 그러나 왜도(skewness)가 심한 분포에서의 산술 평균과 중위수는 정보를 왜곡시켜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산술 평균과 중위수는 전체 관찰수와 농가 인구의 정의에 따라 값이 민감하게 변화한다.

또한 각 국의 농가 규모를 비교할 때, 농가 규모의 최저 임계점(minimum threshold)에 적용되는 평균 농가 규모를 평균과 중위수만으로 일관된 비교를 할 수 없다. 또한 많은 수의 소규모 농가가 존재하는 경우, 한 나라 안에서도 농가 규모의 기간 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농업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단순한 산술 평균과 중위수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로 인해 농가의 이중적 구조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산술 평균과 중위수로 시간에 따른 농가 규모 변화와 각 국 간 농가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2.2. 새로운 측정 방법 논의

2.2.1. 농가 규모 분포 측정

Lund and Price(1998)와 MacDonald et al.(2013)은 농가 규모 측정에 있어서 간단한 측정 방법인 헥타르-가중 중위수(hectare-weighted median)를 제안하였다(Bokusheva and Kimura, 2016). 헥타르-가중 중위수 측정 방법은 농가 규모 분포를 우선 두 부분으로 나눈다. 가중-헥타르 중위수 경지보다 많은 토지를 경작하는 농가 50%와 헥타르-가중 중위수 경지보다 적은 토지를 경작하는 나머지 농가 50%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헥타르-가중 중위수를 이용하면 토지사용 집중 정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는 로렌즈 곡선(Lorenz curve)을 통해 기존의 측정방법과 헥타르-가중 중위수 측정방법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첫 번째 그림은 농지가 각 농가에 균등하게 분포된 경우를 나타내고, 두 번째 그림은 농지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된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수평축은 농가 수의 누적 백분율을, 수직축은 헥타르(hectare)의 누적 백분율을 나타낸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농지가 균등하게 분포되었기 때문에 평균과 중위수, 그리고 헥타르-가중 중위수는 서로 같은 지점에 놓인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농지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어 농지의 50%이상이 평균보다 규모가 큰 농가가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로렌즈 곡선을 이용한 평균 농가 규모 측정 방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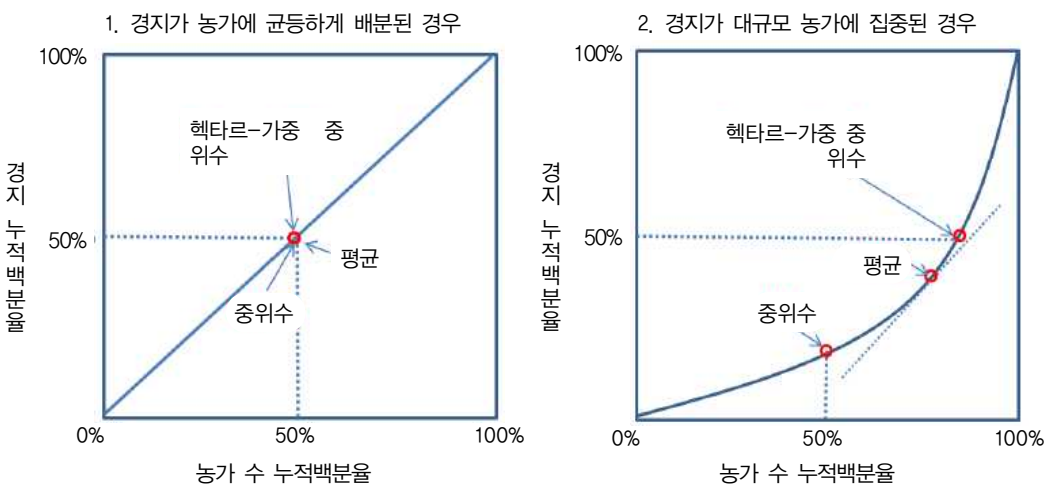

자료: Boukusbeva and Kimura, 2016:11.

<그림 3>은 또 다른 예로, 농가 규모 분포에 왜도가 존재할 경우, 산술 평균, 중위수, 헥타르-가중 중위수가 농가 규모 통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준다. <그림 3>에서 왼쪽 그림은 각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균등한 경우이다. 이때는 산술 평균과 중위수, 헥타르-가중 중위수가 같다. 그러나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처럼 농지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된 경우, 헥타르-가중 중위수는 산술 평균, 중위수보다 크다.[1)]

1) 물론 〈그림 3〉에서는 헥타르-가중 중위수는 산술 평균, 중위수와 같은 값임. 그러나 보통의 경우 토지가 일부 농가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가중-헥타르 중위수는 산술 평균, 중위수보다 높은 값을 가짐.

그림 3 평균 농가 규모 측정 방법에 농지 분포가 미치는 영향

1. 경지가 농가에 균등하게 배분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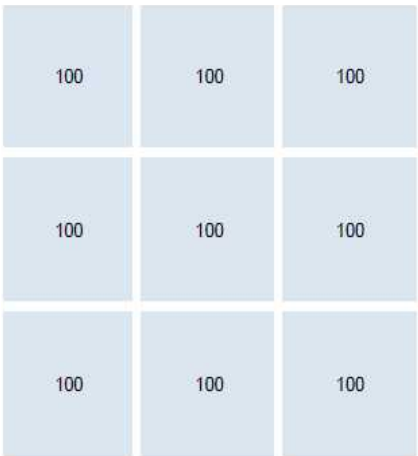

평균(μ)	100
중위수(m)	100
헥타르-가중 중위수(m_{hw})	100

2. 경지가 대규모 농가에 집중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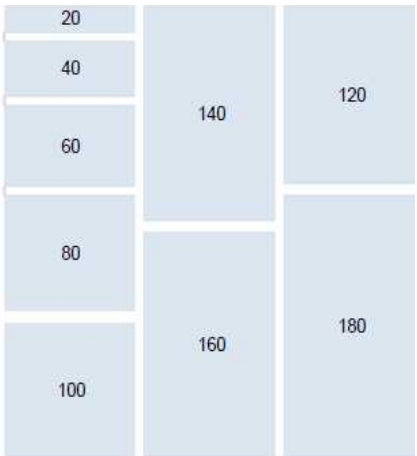

평균(μ)	100
중위수(m)	100
헥타르-가중 중위수(m_{hw})	100

자료:Boukusbeva and Kimura, 2016:11.

일반적으로 산술 평균을 이용하여 농가 규모를 측정하면 농가 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이상 평균값은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중위수 역시 중간지점에 있는 농가의 규모가 감소 또는 증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산술 평균과 중위수는 대규모 농가에 농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

헥타르-가중 중위수는 많은 수의 소규모 농가가 전체적으로 적은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값의 변동이 작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농가 인구 정의의 차이에 따른 측정값의 변동은 헥타르-가중 중위수보다 평균과 중위수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헥타르-가중 중위수 측정에도 여전히 한계는 있다. 첫째, 이 측정방법에서는 농가의 합병(merging), 분화(fragmentation)와 같은 특정한 유형을 반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헥타르-가중 중위수 아래에 분포하고 있는 두 농가가 합병했는데 그 결과가 여전히 헥타르-가중 중위수 보다 작다면 전체적인 헥타르-가중 중위수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헥타르-가중 중위수 보다 상위에 있는 두 농가의 합병 또는 분화 과정도 헥타르-가중 중위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점들로 인해, OECD 국가의 농가 규모 변화과정 비교를 이끌어 내려면 보완적으로 농가규모-가중 분위 통계와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헥타르-가중 중위수 측정 방법은 농가수와 농지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농가수와 농지 이외에도 농가 규모는 다른 기준과 단위로 측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가 규모를 농업 생산량 또는 투입재로 측정할 수 있으며, 단위로는 화폐 단위 또는 물질적 양의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농업 생산량 기준으로 농가 규모를 측정할 경우, 매년 측정값의 변동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입재 기준으로 농가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 또한 화폐단위보다는 물리적 양으로 측정하는 것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변동요인에 덜 민감하고, 시간에 따른 국가별 농가 규모 비교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투입재 기준 농가 규모 측정 예로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노동 요구 지수(Standard Labor Requirement Indicator)"를 들 수 있다. 농가의 년간 표준 노동 요구 지수는 각각 다른 작물 면적과 각각의 다른 가축 수에 적절한 표준 노동 요구 계수를 곱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전체 연간 노동 요구 시간을 상용 근로자의 숫자로 전환하여 나타낸 것이 표준 노동 요구 지수이다. 이러한 지수는 상대적으로 산출물의 가격 변동보다 생산에 있어 필요한 노동력의 변동 폭이 작으므로, 농가 규모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

2.2.2. 농가 인구와 변수의 정의

각 국의 농가 규모를 비교할 때 농가의 범위와 농가 인구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다. 본고에서는 4종류의 주요 농가 — 작물, 낙농, 소, 돼지 농가 — 를 중심으로 농가 규모를 비교한다. 한 가지 이상의 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 소득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작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즉, 만약 한 농가가 작물과 낙농을 동시에 산출하는데, 대부분의 소득액(산출물)이 작물에서 발생한다면, 작물 농가로 분류한다.

농촌 관련 통계에서 농가 인구에 대한 정의는 농지 또는 농업총생산액(gross agricultural output)의 최소 규모 기준선(minimum size threshold)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각 국에서의 정하는 농지 또는 농업총생산액의 최소 기준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EU국가와 북미 또는 아시아 국가를 비교할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U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북미 또는 아시아 국가들보다 최소 농가 규모 기준선이 높아, 대다수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농가 인구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차이는 전체 농가

인구수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농가 규모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OECD 각 국의 농가 규모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서로 다른 농가 인구의 정의와 농가 범위를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 본고에서는 모든 농가 규모 측정에는 경지와 농업총생산액의 헥타르를 사용하고, 낙농, 소, 돼지 농가 규모 측정은 표준 가축단위(standard livestock units)를 기준으로 측정한 지표를 사용한다. 총 14개국 —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 대상으로 농가 규모를 비교하였다. 각 국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기본적인 분석 시점은 1995년부터 2010년이다.

이와 관련된 통계는 총 조사로 이뤄진 곳은 총 9개 국 —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 이고, 표본조사로 이뤄진 곳은 나머지 5개 국 —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스웨덴, 아일랜드 — 이다. 참고로 총 조사인지 표본조사인지에 따라 최소 농가 규모 기준선이 달라지고 표본채집 방법상의 오류와 무응답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재적 문제를 인지하고, 두 자료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때는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는 각 국 간의 비교를 위해서 편의상 총 조사로 이뤄진 나라의 경우, 전체 농가 인구에서 각 부문별로 농업총생산액의 최저 10%의 농가를 제외한 통계를 이용하여 표본조사로 이뤄진 나라의 통계와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2)]

2) 이러한 방법은 물론 통계적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 원 저자가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농가 규모 분포의 정도가 과소 추정될 위험이 있으며, 농업의 구조적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데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

3. 국가 간 농가 규모 비교

3.1. 평균 농가 규모 추세

15개국 중 캐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대상으로 헥타르-가중 중위수를 이용하여 농가 규모 성장속도를 측정하면, 농가 규모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일본이고, 그 다음으로 캐나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순서이다<그림 4 참조>. 농가 규모 성장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위의 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추세는 농가 규모의 가중-헥타르 중위 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규모 농가의 확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10개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4 5개국 작물 농가 규모 분포의 장기적 추세

캐나다,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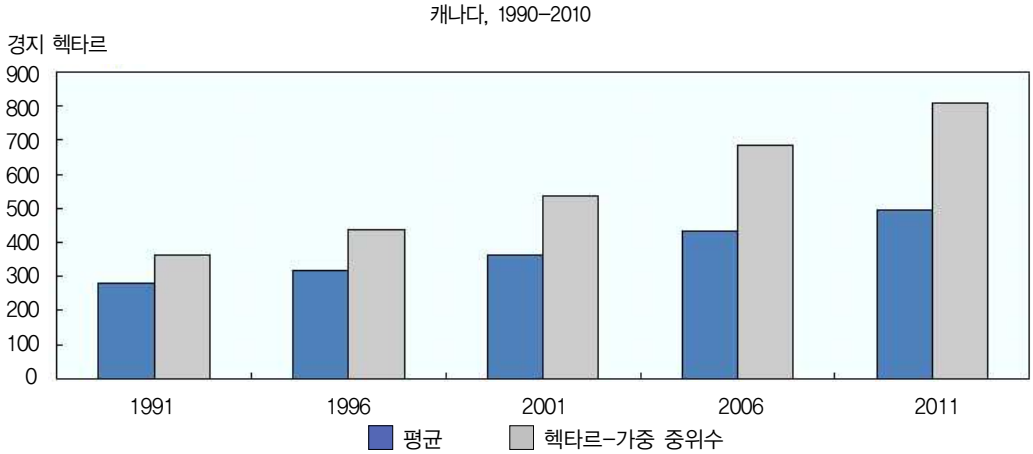

미국, 198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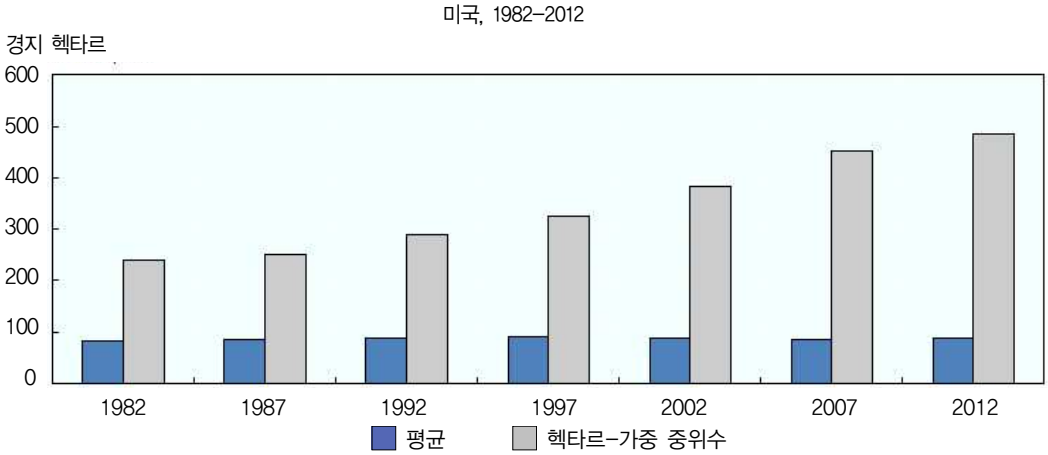

일본, 198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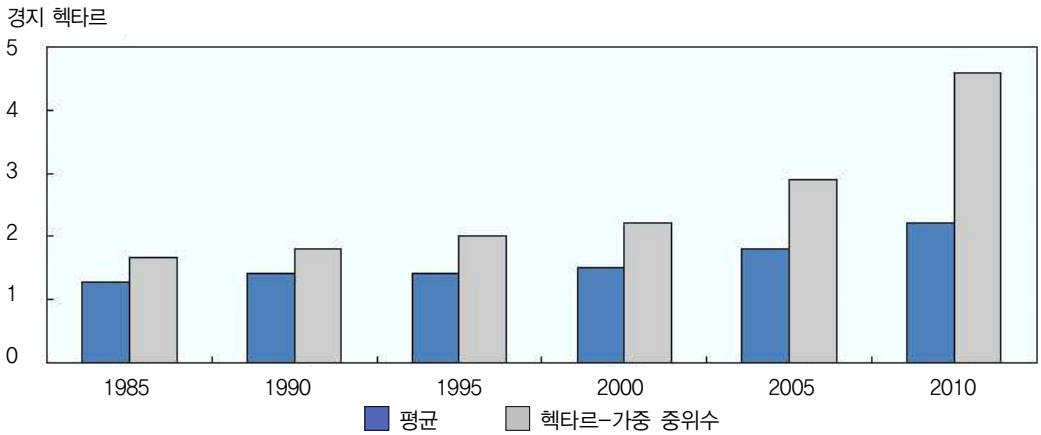

프랑스, 197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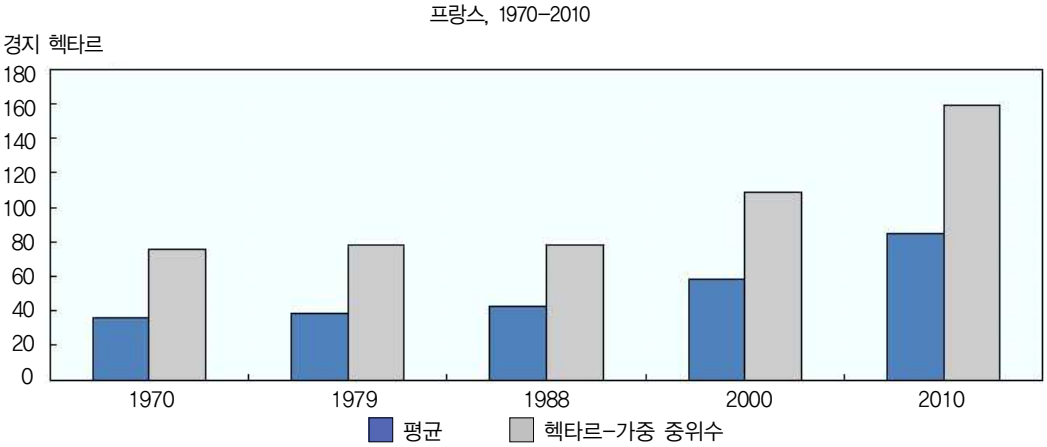

네덜란드, 1971–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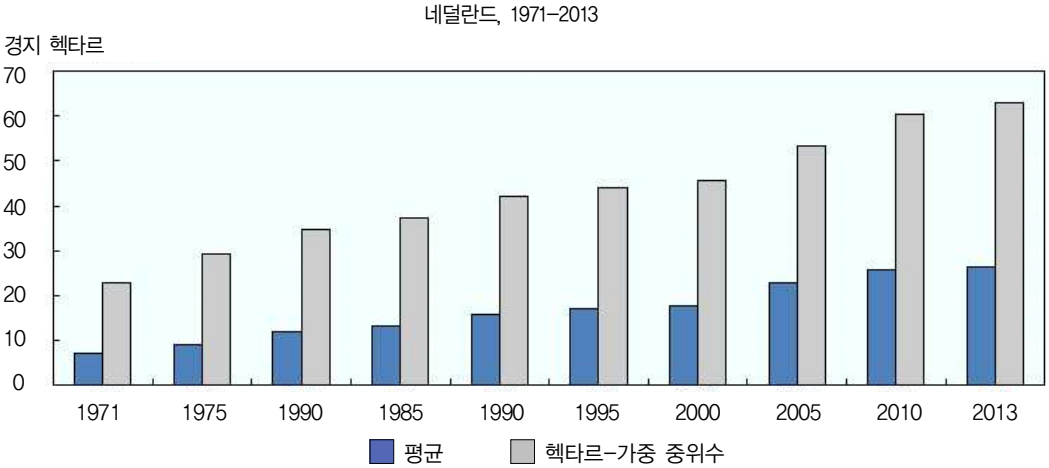

자료:Boukusbeva and Kimura, 2016:16–17.

그림 5 각 국의 농가 규모 비교-평균, 헥타르-가중 중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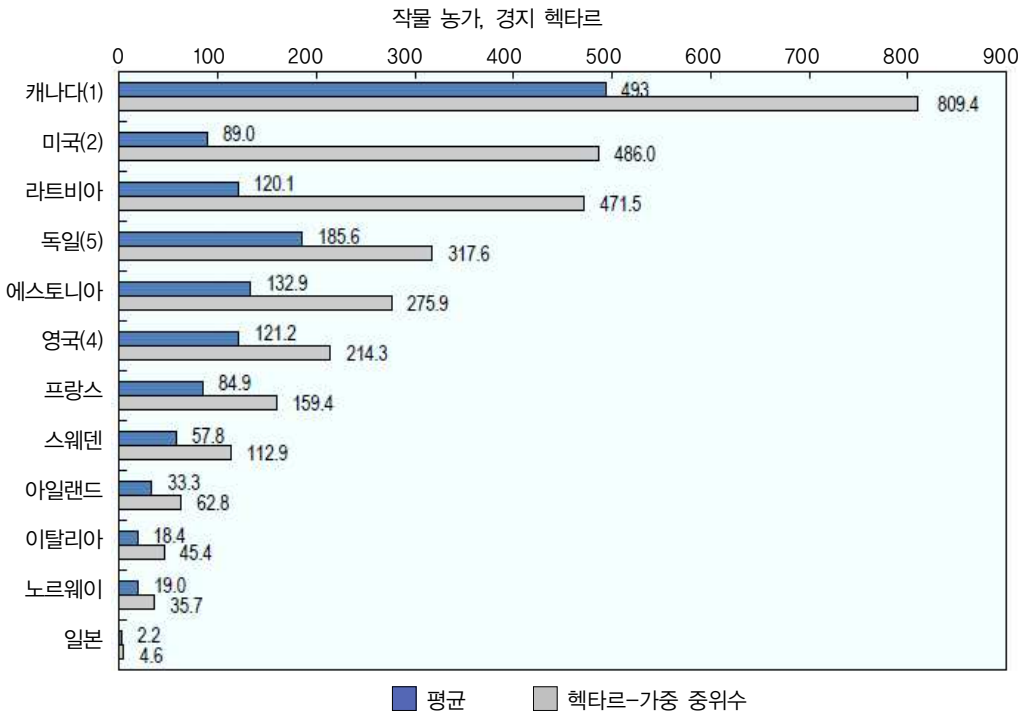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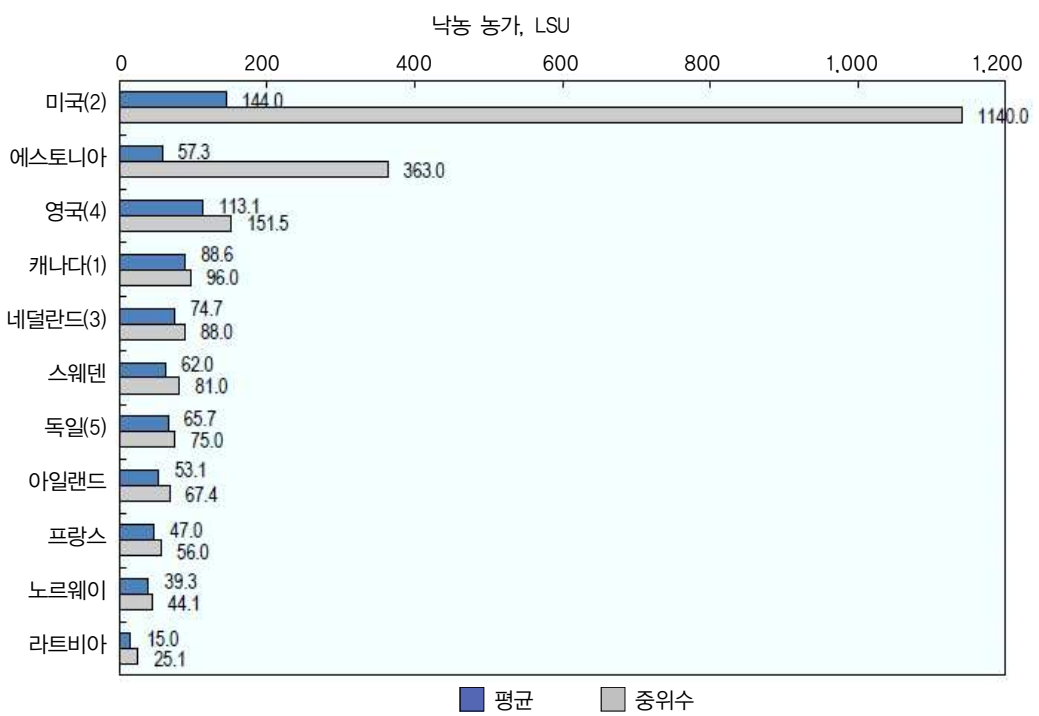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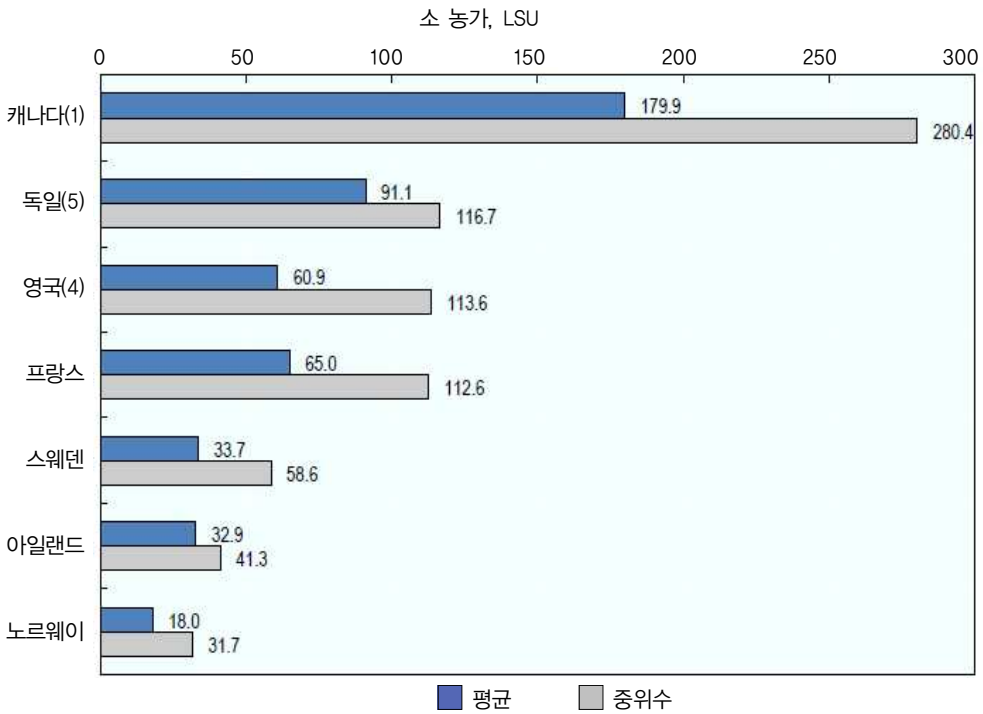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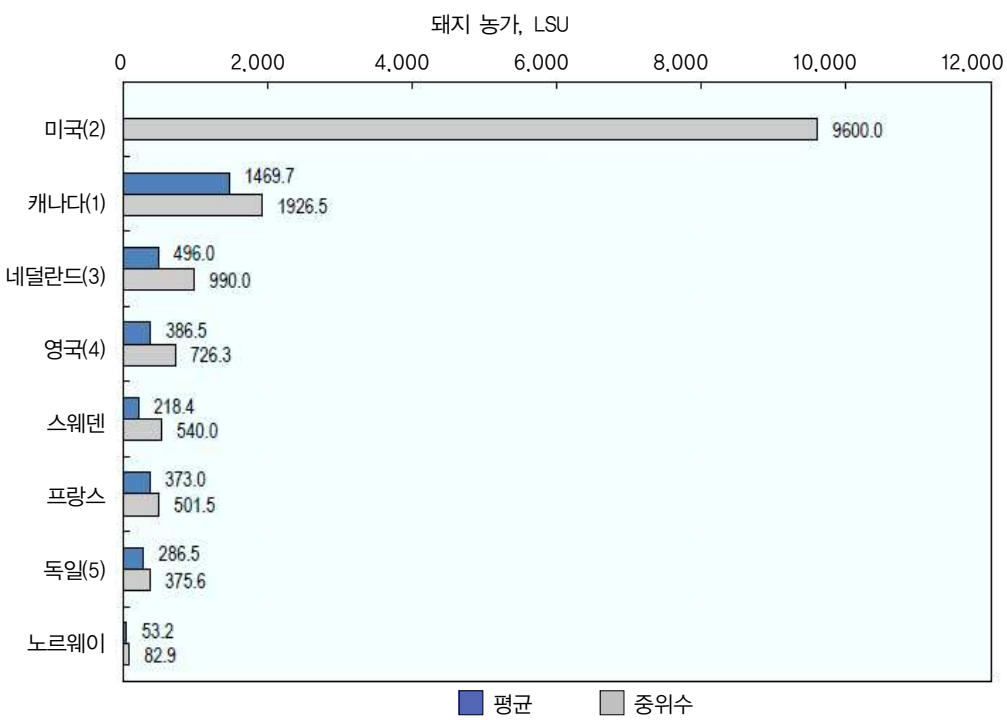

자료: Boukusbeva and Kimura, 2016:31-32.

그러나 헥타르-가중 중위수 성장률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의 예를 들면, 중위 농가 규모는 2000년 이후로 급속히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 농업은 최근 10여 년 간 구조적 변화를 급격히 겪었음을 의미한다.

이 외의 다른 OECD 나라의 평균 농가 규모 성장률을 보면 규모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표 1>에서 미국 낙농가는 지난 2세기 동안 규모가 확장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위수가 평균값보다 3.5배 더 빨리 성장해 왔다는 것을 볼 때 대규모 낙농 시스템의 확장이 주효하게 작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 형태별로 살펴보면, 돼지농가의 농가 규모 평균 성장률이 다른 부문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농가형태별 농가 규모 평균 성장률, 1995–2010

국가	평균 성장률, 1995–2010, 년간 %							
	작물농가, 경지 헥타르		낙농농가, LSU		소농가, LSU		돼지농가, LSU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총조사 기준								
캐나다[2]	2.98	4.21	3.36	3.78	3.10	3.87	7.53	7.24
미국[3]	−0.15	2.74	4.17	15.01				10.55
일본	3.06	5.71						
한국[4]	4.03	5.11						
프랑스[5]	3.52	3.64	3.39	3.18	3.38	3.04	3.50	3.39
독일[6]	4.21	3.84	3.24	3.04	2.00	1.67	3.19	1.10
네덜란드[7]			3.35	2.82			6.93	6.87
노르웨이	4.50	3.45	3.65	3.65	6.95	7.40	13.22	13.66
영국[8]	0.81	0.61	2.66	3.16	2.71	3.32	0.40	0.00
표본조사 기준								
에스토니아[9]	8.75	14.44	2.06	3.31				
아일랜드	2.02	2.57	3.01	3.06	1.44	1.07		
이탈리아[10]	−1.81	6.85						
라트비아[10]	2.95	7.98	1.92	5.73				
스웨덴	−0.16	1.73	5.67	5.96	4.07	4.80	10.88	7.90

자료:Boukusbeva and Kimura, 2016:21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 유념할 점은 캐나다, 미국, 일본에서 농가 인구의 정의는 EU 국가들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EU에 비해 캐나다, 미국, 일본의 농가 인구에는 많은 수의 소규모 농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경우 평균값으로 농가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나, 농가 인구의 최저 농가 규모 기준선을 달리 적용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전체 농가 규모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농가 규모의 분산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로 이어진다.

3.2. 농가 규모 분산 추세

앞서 언급한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를 통해 분석하면, 분석대상인 15개국에서의 지니 계수는 지난 2세기 동안 증가해 왔다. 즉, 농가 규모 분포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농가의 양극화 구조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농가 규모 분포의 각 분위에서 평균 성장률을 보면, 농가 규모의 중위수에서는 괄목할만한 상승이 있었으나 소규모 농가의 평균 규모는 몇몇 나라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 구조에서 양극화가 진행 또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나라 또는 농업의 각 부문에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대규모 농가의 규모 증가와 같이 발생하였다.

"사라진 중간 농가(disappearing middle)"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규모의 경제로 인한 대규모 전업농의 규모 확대로 설명되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업 외 일자리(off-farm employment)를 찾기 위해 농업 규모를 작게 유지하거나, 규모를 다소 줄이는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Koester 1999).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유기 작물 생산 농가의 증가 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Brock and Barham 2009).

이렇게 농업 구조의 양극화 현상은 진행 또는 심화되고 있지만, 앞 절에서 설명한 농가 규모의 평균과 중위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니 계수를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6>은 작물과 낙농농가의 지니 계수 값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에 나타난 지니 계수를 추세를 보면, 캐나다, 일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스웨덴의 작물 농가 규모 분포가 더욱 분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농 농가의 경우, 캐나다, 에스토니아, 독일, 라트비아, 스웨덴, 영국에서 농가 규모 분포 분산이 더욱 벌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니 계수를 통해 프랑스의 낙농 농가 규모 분산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덜 양극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프랑스의 우유 쿼터 관리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우유 쿼터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이는 토지에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부처에서 그 양을 정하게 된다. 또한 쿼터는 젊은 낙농가, 소규모 농가에게 먼저 배정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낙농가 규모 확대를 자연스레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6>에서 국가 간 비교를 하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와 같은 전환기에 있는 나라들에서 농가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 형태별 비교를 하면, 낙농가 보다 작물 농가의 규모 분포 분산이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낙농가가 작물 농가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균등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 주요 OECD 국가의 지니 계수 추세, 199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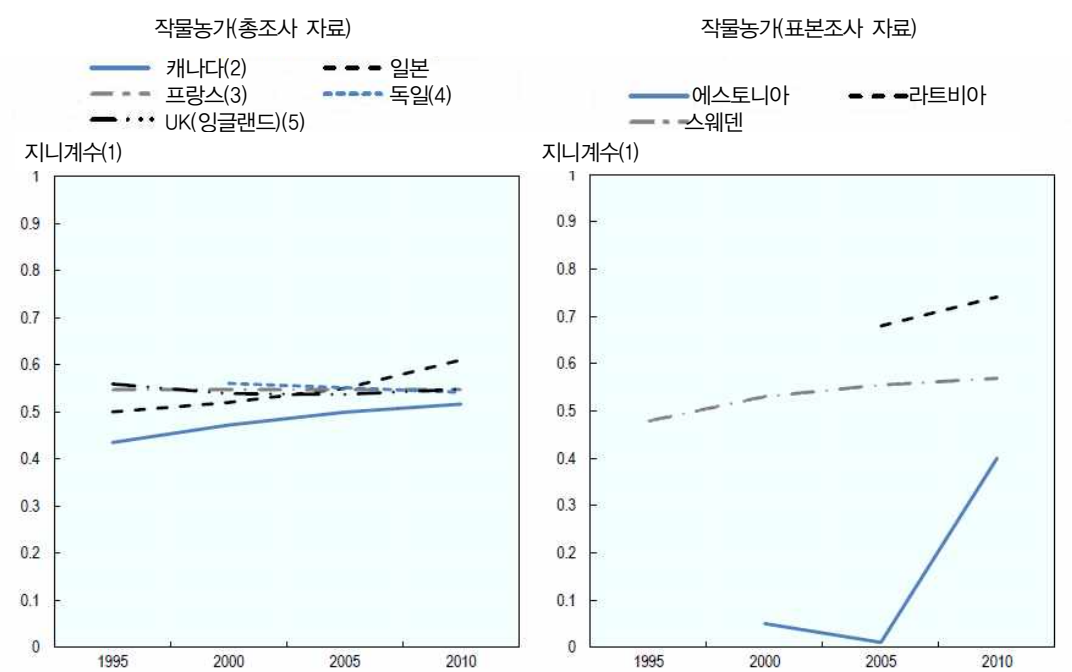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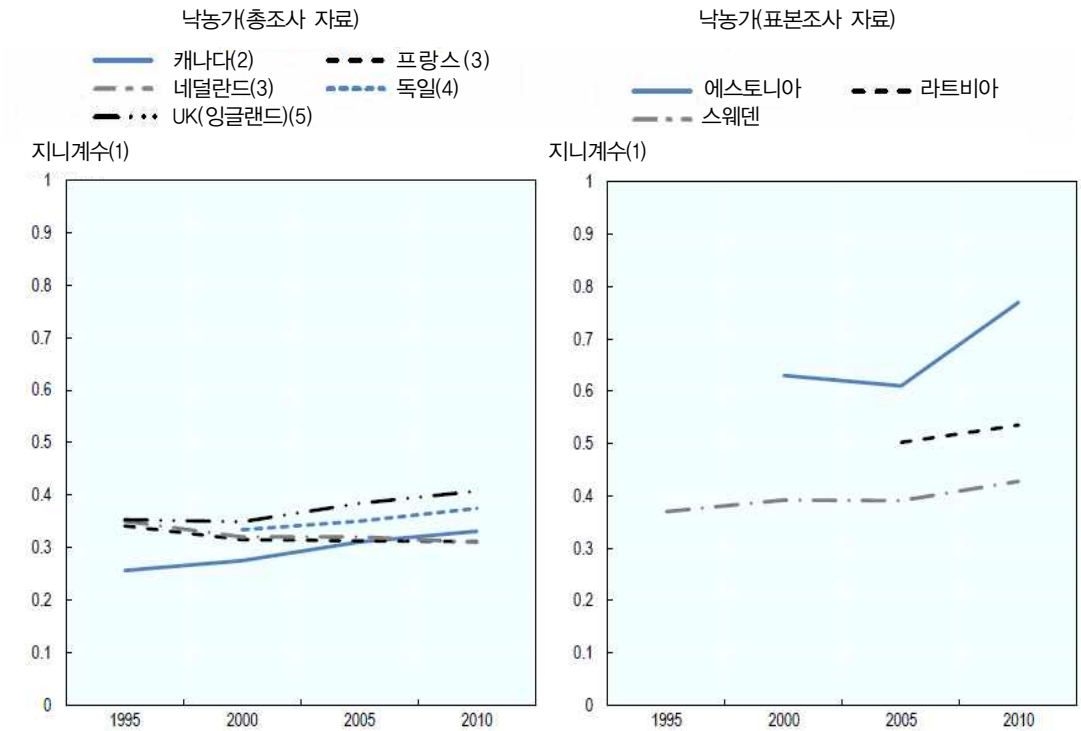

자료: Boukusbeva and Kimura, 2016:22.

3. 맺음말

본고에서는 14개국의 농가 규모 분포 측정에 대해 소개하였다. 각 국에서의 농가 규모 분포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규모 측정에 사용된 평균, 중위수와 더불어 헥타르-가중 중위수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헥타르-가중 중위수가 갖는 한계를 고려하여 지니 계수를 소개하였다.

헥타르-가중 중위수와 지니 계수를 통해 14개국 각 국의 농가 규모 분포를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지난 2세기 동안 농가 규모 분포의 불균등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가 구조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대규모 농가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수의 소규모 농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 구조 변화가 단순히 경제적 요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규모의 경제가 농가 규모 확대를

이끌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적 요인,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의 혁신, 그 외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인들이 함께 농업 구조 변화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니 계수 추세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 농가 규모 분포의 불균등은 높은 수준의 정책개입-예를 들어 EU국가의 낙농 산업 정책 등-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농업 구조 변화는 단순히 대규모 농가의 규모 확대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농업 구조 변화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또한 각 국이 갖고 있는 생산 시스템, 기술력 변화, 제도적 요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더불어 대규모 농가의 규모 확대로 농업구조 변화가 진행되어 왔지만, 유념할 점은 대규모 농가만 결국에 남는 것이 아니라 중소농가도 함께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중소농가는 유기농산물, 지역/전통 농산물 시장과 같은 틈새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농업 외 일자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소규모 농업의 규모를 유지 또는 감소하면서 농업에 여전히 종사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소개하고 있는 농업 규모 분포 측정 방법 — 헥타르-가중 중위수와 지니 계수 — 으로 각 국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의 평균과 중위수만으로 나타낼 수 없었던 농가 규모의 분포를 상대적으로 자세히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고려해 볼 만한 측정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측정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 각 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농업구조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점이다. 즉, 농가 규모의 불균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업에 있어 규모의 양적 확대를 주장해 왔지만, 대규모 농가만이 농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수의 소규모의 농가도 농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의 양극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러한 불균등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소개된 프랑스의 낙농가에 대한 정책들,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틈새시장 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 그리고 이들에게 지역 사회 내에서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농업 외 일자리 정책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우리의 농업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논의,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Bojusheva, R. and S. Kimura, 2016. Cross-Country Comparison of Farm Size Distribution.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94.

Brock, C. and B. Barham. 2009. Renewable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Renewable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24(1): 25-37

Koester, U. 1999. The Evolving Farm Structure in East Germany.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World Bank European Union Accession Workshop in the Rural Sector.

Lund. P. and R. Price. 1998. The Measurement of Average Farm Size.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49, pp.100-110

MacDonald, J.M., P. Korb and R.A, Hoppe. 2013. Farm Size and the Organization of U.S. Crop Farming. ERR-152.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PART 5

해외 농업·농정 동향

1. 프랑스, 원산지표기법 의무화
2. 미국-EU, 브렉시트 여파 속 TTIP 협상 강행
3. 미국, 새로운 글로벌 식량안보법
4. EU,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플랫폼 구축
5. 일본, 지리적표시(GI) 보호 요청
6. EU, 스웨덴의 동물복지 양돈농장 벤치마킹

해외 농업·농정 동향 (2016. 8)

프랑스, 원산지표기법 의무화

❑ 프랑스, 원산지표기법(COOL) 의무화를 위한 승인 절차

❍ 프랑스는 지난 7월 26일 자국 헌법재판소를 통해 우유 및 육가공식품의 원산지표기법(COOL)의무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음.

- 프랑스 주 의회는 2017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원산지표기법에 대한 기틀을 다지기 위한 적합한 의견을 정부의 법령안 수립에 모았으며, 프랑스 총리는 이러한 의회 의견들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힘.

❍ 프랑스 농림부 장관(Stephane Le foll) 또한 원산지표기법은 소비자들에게 우유 및 육가공식품의 품질 및 제조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함.

❍ 관계자들은 소비자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원산지표기법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우유와 육가공식품에 적용할 구체적인 함유량 및 기준치를 논의하고 있음.

❑ 원산지표기법에 대한 논란

❍ EU집행위원회는 EU의 일부 식품 및 낙농업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산지표기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유럽식음료협회(Food Drink Europe)는 원산지표기법(COOL)의 추진은 산업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와 같으며, 이는 유럽 시장에 중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 반면 일부 농업단체들은 원산지표기법의 의무화는 국내 제품 소비를 장려할 것이며, 이는 각 지역의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유익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힘.

❍ 프랑스에서 원산지표기법 의무화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EU보건위원

회 집행위원(Vytenis Andriukaitis) 또한 이미 자발적으로 원산지표기법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올해 초 진행된 투표에서 대부분의 유럽의회의원은 우유 및 육류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기법을 찬성하였으나, 유럽의회의 최대 정당인 유럽국민당(EPP) 측은 이러한 움직임은 비현실적이며, 대중적 선호를 얻기 위한 선전책에 불가하다고 평가하였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7.29.)

미국-EU, 브렉시트 여파 속 TTIP 협상 강행

❑ 미국과 EU, TTIP 연내 타결 목표

❍ 미국과 EU의 양측 협상 대표단들은 영국 브렉시트 여파와 미국 대선의 민감한 시기 속에서도 연내 미국-EU간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타결할 것을 강조함.

❍ 지난 7월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14번째 TTIP협상에서 미국 측 협상대표(Dan Mullaney)는 이번 협상은 브렉시트를 충분히 염두에 둔 상태로 진행 중이며, 미국 대통령(Barack Obama)도 연내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밝혔음.

- 미국 측 협상대표(Dan Mullaney)는 영국탈퇴는 유럽시장에 큰 여파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잠재적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이 부분을 협상에 반영할 것을 언급함.
- 또한 이번 협상이 강력하게 발휘되는 데에는 양측의 명확한 정치적인 당위성이 고려되며, TTIP체결에 따른 장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올해 말까지 최대한 빨리 협상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만약 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동 협정을 다시 진행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명시하며 연내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함.

❍ TTIP와 브렉시트에 따른 여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EU 측 협상대표(Ignacio Garcia Bercero)는 미국과 EU 양측의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EU는 기한까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EU 측 협상대표(Ignacio Garcia Bercero)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브렉시트에 대한 고려와 함께 EU집행위원회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권한을 EU정부들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밝혔음.

❍ EU집행위원회 위원장(Jean Claude Juncker)은 EU집행위원회가 협상 타결여부에 대한 방향성 논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일부 소수만이 반대의사를 밝혔을 뿐이라

며 협상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브렉시트가 동 협상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함.

❑ TTIP 협상 현황

❍ EU측 대표는 30여개의 협상안이 진행되어 왔으며, 포괄적인 문서로 이는 모든 영역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을 밝힘.

- 특히 일반위생 및 식품위생 관련 법안과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관련 부분이 고려되어졌으며 기타 어려운 현안들과 관련 내용들은 9월 말까지 모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그는 97%의 무역상품 관세가 결정된 가운데, 농산품이 대부분인 나머지 3%는 여전히 협상 중인 상황에서, 협상단은 관세부과와 지리적표시와 같은 다른 중요한 이슈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함.

❍ EU집행위원회에 의해 개최된 지난 7월 13일 관계자 회의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EU의 지리 표시제의 보호가 가장 논쟁적인 이슈이었음.

- EU측은 초기 협상에서 200여개의 지리적 표시제 보호를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 '페타치즈(Feta)', '샴페인(Champagne)' 등의 EU원산지 이름의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시장보호와 관련한 추가 승인을 주장하고 있음.
- 실제 EU의 원산지표기에서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일반 명칭으로 판매되는 제품들(generic names)은 논의에서 제외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힘.

❍ EU 측 협상대표(Ignacio Garcia Bercero)는 지리적표시제에 있어 현재 실용적인 접근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부분에는 많은 과업이 따름을 언급하며, 9월 말에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협의안 관련 논의를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음.

❍ 미국 측 협상대표(Dan Mullaney)는 지리적표시제 관련 논의는 긴급현안으로 다뤄졌으며, 관세부과 관련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7.22.)

미국, 새로운 글로벌 식량안보법

❑ 국제기구들, 미국의 새로운 법안 환영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의 사무총장들은 향후 글로벌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법안을 환영함.

❍ 미국 대통령(Barack Obama)은 지난 7월 20일 양원의 지지와 함께 '2016 글로벌 식량안보법(Global Food Security Act, GFSA)의 입법을 승인함.
- 동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파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음.

❍ GFSA는 미국의 글로벌 기아 종식을 위한 'Feed the Future'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하며, 농업 개발, 소규모 생산자 지원,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영양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정치적으로 지원함.
- 또한 이 법은 가난한 지역의 물 공급 및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가뭄과 홍수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 GFSA는 미국의 국제재해지원(International Disaster Assistance, IDA)과 비상식량안보 프로그램(Emergency Food Security Program, EFSP)을 수립하여 해외 원조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의 조정 개선을 목표로 함.

❍ FAO사무총장(José Graziano da Silva)은 GFSA가 기아와 빈곤 해소를 위한 소규모 가족농의 역할을 중심으로 식량안보와 경제개발의 밀접한 조화를 강조할 것이라며 GFSA 입법을 환영함.

❍ WFP사무총장(Ertharin Cousin) 또한 GFSA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왜 미국이 세계 식량안보 증진의 선두인지를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덧붙임.

❍ 미국 대통령(Obama)은 GFSA입법이 외교정책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미국 농업부 장관(Tom Vilsack) 또한 GFSA 입법을 환영함.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7.29.)

EU,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플랫폼 구축

❍ EU집행위원회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70여개의 단체들과 함께 2030년까지 식량손실 및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EU플랫폼(EU Platform on Food Losses and Food Waste) 개발을 착수함.

- EU정부는 최근 식량 손실 및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이사회의 결정을 채택하고, EU집행위원회를 통해 회원국 정부들과 음식물쓰레기를 정의하고 각 식품공급망 단계에서 이를 정량화하는 방법 등을 결정하는 안을 채택함.
- 또한 이사회는 광의의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안을 채택하고 회원국별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 모니터링을 요구함.
- EU집행위원회는 처음 2025년까지 식량손실 및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EU 차원의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그 계획은 이번 전략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제거되었음.

❍ 2016년 8월 1일 식량손실 및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EU플랫폼이 발표되었으며, 33개의 공공부문과 37개의 민간부문으로 총 70개의 회원이 참여함.

- 공공부문에는 28개의 모든 EU회원국들과 EU지역위원회(EU Committee of REgions, CoR),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등이 참여함.
- 민간부문에는 유럽연합농업협동조합협회(Copa-Cogeca)와 유럽작물보호협회(European Crop Protection Association, ECPA), 유럽낙농협회(European Dairy Association, EDA), 유럽과채류무역협회(European Fruit and Vegetables Trade Association, EUCOFEL), 유럽사료생산자연합(European Feed Manufacturers Federation, FEFAC)등이 참여함.
- 또한 음식물쓰레기 방지 및 식품가치사슬 관련 활동 등에 관심이 있는 NGO, 시민단체들(Slow Food, WRAP(Waste and Resource Action Programme), Zero Waste 등)과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Wageningen University)과 농식품연구기관 등이 참여함.

❍ EU플랫폼은 UN SDGs의 세부목표12.3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2030년까지 최종소비자 및 소매단계의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50% 감축과 식품제조 및 공급과정에서의 식량손실 감축을 목표로 함.

-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이며,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의제로 2015년 9월에 채택되었음.
- SDGs는 17개의 목표(goal)아래 169개의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아·빈곤 근절, 식량안보를 포함하여 농업 및 농촌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SDGs 목표2는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2030년까지 소규모 농가를 위한 농업생산성 및 소득향상,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 등을 다루고 있으며, SDGs 목표12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을 다루며 음식물쓰레기 및 식량손실 감축을 목표로 함.

❍ EU플랫폼과 관련한 첫 번째 회의는 2016년 11월 29일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임.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플랫폼은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관련하여 식품가치사슬에 따른 분야별 필요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협력 증진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축 목표를 위한 진행사항 등을 평가해 갈 것이라고 함.
- EU에서는 매년 8,800만 톤의 식량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8.05.)

일본, 지리적표시(GI) 보호 요청

❑ 일본, EU와의 EPA협상에서 GI 보호 요청

❍ 일본은 EU와의 경제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협상에서 고베(こうべ , Kobe)쇠고기와 식용 설육(offal) 등의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보호를 추구하고 있음.

- 지리적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GIS)는 농·특산물이 특정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보호하는 제도임.

❍ EU집행위원회는 7월 19일 EU공식저널을 통해 일본이 제시한 8개의 지역에 대한 GI등록 여부를 2개월 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함.

❍ GI승인과 관련한 반대의견 제기 시, EU식품법 보고서에 따라 명확한 반대 근거를 밝혀야 하며, 다음 경우와 같이 명확한 근거만을 인정함.

- 다양한 동·식물 품종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름 또는 상표인 경우
- EU에서 음료라벨규정(drink labelling rules)아래 이미 보호되고 있는 GI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름 또는 상표인 경우
- 오랜 시간 상표 또는 이름으로 사용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알려진 것이나 명성 등이 실제 제품의 진정한 가치와는 다르게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 제안된 GI가 동일한 제품 이름이나 상표(trademark)로 최소 5년간 법적으로 존재해온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실제적으로 상표 없이 일반 명칭으로 판매되는 제품(generic product)과 관련한 경우에도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안된 GI승인에 반대하는 의견은 9월 19일까지 EU집행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함.

❍ 일본이 제안한 GI등록 요청목록은 다음과 같음.

- Aomori Cassis: 아오모리(あおもり, Aomori)현의 까막까치밥나무 열매(blackcurrant)로 만든 리큐어(liqueur)
- Tajima Gyu/'Tajima Beef: 효고(ひょうごけん, Hyogo ken)현에서 길러 등급이 매겨진 흑모화우(Japanese black cattle)[1] 쇠고기 및 식용설육
- Kobe Beef/ Kobe Niku / Kobe Gyu: 고베 지역에서 길러 등급이 매겨진 흑모화우 쇠고기 및 식용설육
- Yubari Melon: 유바리(ゆうばり, Yubari)시 온실에서 재배된 칸탈로푸 멜로(cantaloupe melon)
- Yame gyokuro: 야메(やめ, Yame)시에서 재배되는 녹차(야메 교쿠로차(玉露茶)
- Kagoshima Kurozu: 가고시마(かごしま, Kagoshima)현의 흑식초(rice vinegar)
- Miwa Somen: 나라현 사쿠라이시의 미와지방의 가는 면(noddles)
- Nihonshu: 사케(さけ, Japanese Rice Wine)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7.22.)

1) 일본 재래종에서 순수 육용종으로 개량되어 사용되고 있는 일본산 육용종 소로서 성숙한 암소는 420kg이며, 수소는 700kg임(농업용어사전:농촌진흥청).

EU, 스웨덴의 동물복지 양돈농장 벤치마킹

❑ EU, 스웨덴의 동물복지 양돈농장 벤치마킹(benchmarking)

❍ 5개의 EU회원국들은 스웨덴의 새끼돼지의 꼬리 자르기(tail docking)를 금하는 동물복지 사육환경을 조사하고 돼지사육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단계를 고려하고 있음.

- 벨기에, 프랑스, 체코, 헝가리, 영국의 각 국 전문가들은 2016년 2월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를 방문하여 동물복지환경을 조사·연구함.
- 새끼돼지의 꼬리 자르기는 꼬리 물기(tail biting)로 인한 세균감염 및 질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양돈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돼지사육 시 꼬리를 자르지 않았으며, 1988년 이후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수의사가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꼬리를 자르는 것이 금지되어 왔음.

- 스웨덴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새끼돼지의 꼬리를 제거할 수 없었으며, 이에 꼬리를 자르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했음.
- 스웨덴은 돼지 생산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돼지 분만상자(farrowing crates) 사용 또한 금지하고 넓은 공간과 쾌적한 분만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스웨덴의 돼지사육은 복지를 고려한 환경개선으로 비록 돼지 생산량은 지난 20년간 감소해왔지만, 산업측면에서는 발전을 보임.

- 스웨덴은 최근 돼지 사육마리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발전에 대해 양돈농가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사육환경 개선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EU 보건·식품안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돼지 사육 시, 스트레스를 줄이고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돼지의 꼬리물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임.

- 스웨덴은 EU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음.

❑ 국가적 조치

❍ 스웨덴을 방문한 EU회원국들은 국가별 돼지생산모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 관찰된 좋은 동물복지 사례 중 일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벨기에는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의사소통 방안을 개발하고, 체코는 새끼돼지 꼬리를 자르지 않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음. 또한 헝가리는 동물복지의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함.

❍ 영국은 관련 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방문연구와 EC보고서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새끼돼지 꼬리자르기의 필요성을 줄이는 방법과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입법을 논의할 예정임.

❍ 한편 프랑스 당국은 작업반을 설립하여 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또한 작업반은 EU권고지침 (EU)2016/336에 따라 새끼돼지 꼬리자르기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프랑스 당국은 관행을 바꾸기 위해 새끼돼지 꼬리를 자르지 않고 유지·관리하는 시범 농가를 지원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금번 방문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6.08.05.)

자료 작성: 홍예선 연구원

PART 6

세계 농업 브리핑

주요외신동향

세계 농업 브리핑 (201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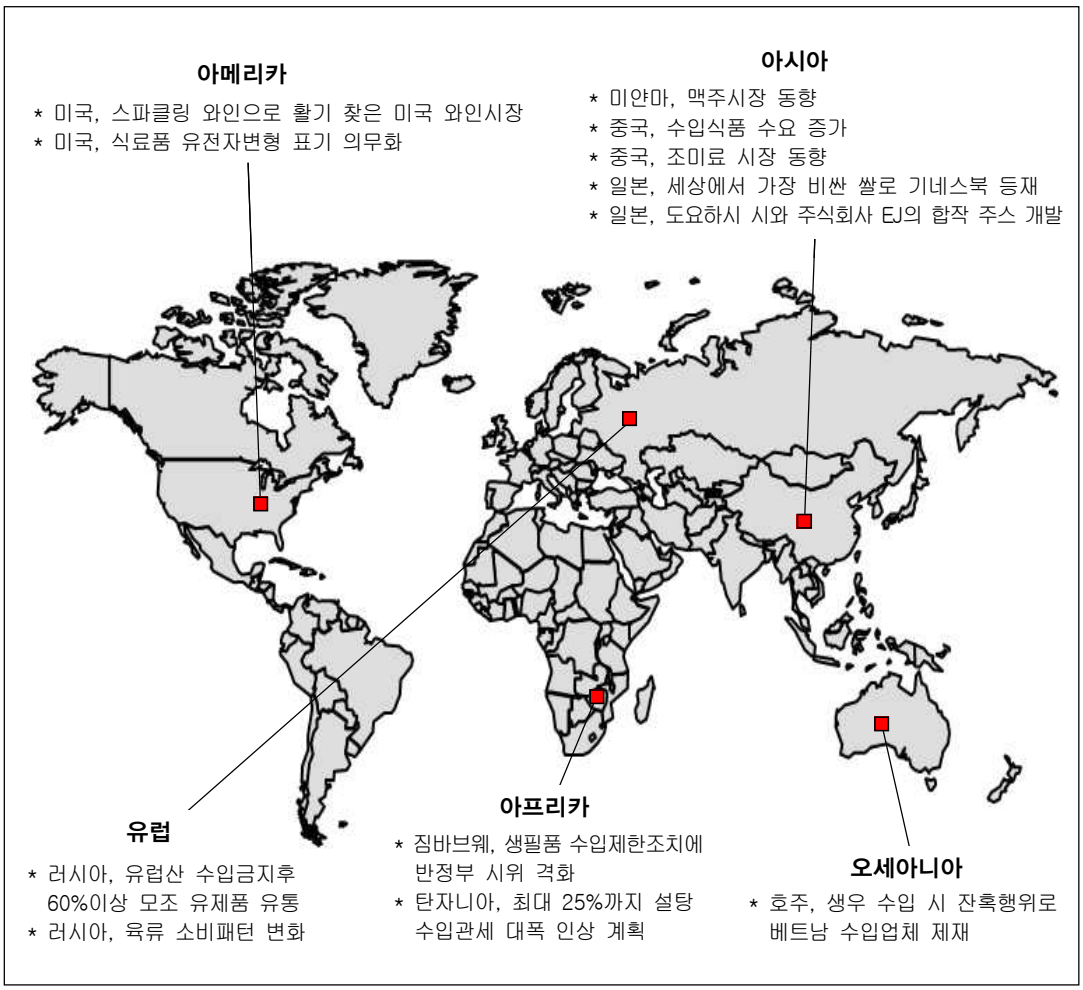

1. 아시아

□ 미얀마, 맥주시장 동향

-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의 연간 맥주 소비량은 1인당 6리터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 미얀마는 국민의 89% 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국가지만 더운 날씨와 긴 우기로 인해 시원한 맥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 많음.
- 특히 'Myanmar Beer'는 맛이 좋아 미얀마 국내 소비자와 여행객 모두에게 인기가 많음.
  - 일부 외국인 여행객은 City Mart와 같은 대형 마켓에서 'Myanmar Beer'를 기념품으로 사기도 함.
- 미얀마 내 맥주 소비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양조기업의 미얀마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 2016년 기준, 4개의 합작기업과 1개의 미얀마 국영기업이 미얀마 맥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
- 최근 KIRIN 맥주로 유명한 일본 Kirin Holdings Co. Ltd가 미얀마 군부 소유의 국영기업인 UMEHL(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와 파트너십을 맺고 Myanmar Brewery Co. Ltd. 합작회사로 미얀마 맥주시장에 진출함.
- Myanmar Brewery Co. Ltd는 기존 미얀마 대표 맥주인 Myanmar Beer와 Myanmar Premium Beer를 인수해 미얀마 맥주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음.
- 태국에서 수입하는 맥주인 'Chang'과 'SINGHA'가 미얀마 맥주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함.
- 불가리아 Brewinvest와 미얀마 군부 소유 국영기업 MEC(Myanmar Economic Corporation)가 합작한 Dagon Brewery Co.Ltd가 'Dagon Lager Beer', 'Dagon Extra Strong'로 미얀마 맥주시장의 10%를 점유함.
- APB Alliance Brewing Co. Ltd.와 Myanmar Carlsberg Co. Ltd.는 각각 네델란드, 덴마크 기업이 미얀마 기업과 합작해 만든 회사로, 미얀마 맥주시장에서 10% 미만의 점유율을 차지함.
- 미얀마 국영 맥주기업은 'Mandalay Beer'로 미얀마 맥주시장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 맥주 기업이 미얀마 기업과 합작 형태로 미얀마 맥주시장에 진출하면서 미얀마의 맥주 종류가 다양해짐.
  - 합작 기업의 맥주를 판매하는 바, 클럽 등과 새로운 맥주를 맛보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 미얀마는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5,300만 명의 소비자를 가진 매력적인

시장임.

- 미얀마 맥주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미얀마 정부 산하의 MEC, UMEHL 등 미얀마 국영기업 혹은 미얀마 현지기업과 합작형태로 진출하거나 City Mart와 같은 대형 유통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진출 기업은 종교적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는 미얀마 소비자를 고려해 다양한 맛과 향의 맥주, 무알코올 맥주 등으로 진출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07.15.)

□ 중국, 수입식품 수요 증가

-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중국 일용소비재(Fast-moving consumer goods) 시장의 성장률 또한 2012년 12%에서 2015년 5%으로 하락함.
- 최근 일용소비재 중 식품 및 음료산업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하락했으나 수입식품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함.
  - 2010년 중국의 수입식품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3% 성장했으며, 2015년 기준 중국의 수입식품 규모는 562억 달러로 2006년 110억 달러 대비 411% 증가함.
- 2015년 1월 1일, 중국 정부는 기존에 비해 엄격한 식품안전 기준이 적용된 식품안전법을 시행함. 많은 중국 식품기업은 식품안전 기준 미달로 운영 자격을 박탈당함.
- 자국 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상승함.
  - 특히 한국, 일본, 유럽의 식품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음. 또한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중국의 식품수입이 증가하였음.
- 특히 중국 소비자가 식품안전 문제에 민감해지면서 쉽게 상할 수 있는 버터, 유아용 분유, 치즈 등 유제품등의 수입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임.
  -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분유 중 59%가 수입품이며, 이는 2008년 30%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임.
- 중국 식품정보 주간지 탕옌지우주간지(糖烟酒周刊)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식품류에서 전년대비 수요 증가세를 보인 식품류의 41%가 수입 식품임.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는 2015년 5월부터 1년간 총 193개국의 식품을 수입했으며, 현재 112개국에서 지속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음.

- 2015년 중국의 주요 식품수입국으로 한국, 일본, 프랑스, 호주, 대만 등이 있음.
  - 한국과 일본 식품은 중국 전체 수입식품의 31%를 차지함.
  - 세부 수입품목으로 한국과 일본의 과자 및 뻥튀기 등 튀겨서 부풀린 식품, 밀전병, 과일음료, 영양보건식품 등이 있음.
- 최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류를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최근 4년간(2012~2015년) 중국의 간식류 수입량의 연간 성장률은 80%를 초과함.
- 2015년 중국 수입 간식류 중 품목별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과자·뻥튀기, 초콜릿이 여타 품목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임. 다음으로 사탕·젤리, 제과 및 제빵류, 당절임·말린 과일, 견과류·볶은 견과류, 기타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2015년부터 한국 브랜드 '길림양행'사의 '허니버터아몬드'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아몬드 등 견과류는 중국 여행객, 유커(游客)의 한국 방문 시 필수 구매상품으로 인식됨.
  - 중국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타오바오(淘宝网)의 한 매장에서 1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허니버터아몬드'가 단품으로 약 1만 3,000개가 판매됨.
- 2016년 현재, 수입 간식류의 구매자는 여성이 2/3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직장인은 점심시간에 밖에서 식사를 사먹는 것보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음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인식함.
  - 그로 인한 중국 소비자의 수입 요리재료 구매율이 높아지는 추세임.
- 조리된 음식을 냉동 혹은 진공포장 후 소비자가 바로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포장식품 또한 대도시의 젊은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음.
- 고급 수입식품 시장에서는 베이커리 재료, 수산물(해삼, 새우 등), 과일(체리, 두리안 등) 또한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음.
-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 시장 진출 및 홍보 시 자사의 제품이 중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시장 진입 시 리스크와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장 반응을 살핀 후, 오프라인 매장으로 정식 진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07.15.)

□ 중국, 조미료 시장 동향

- 중국 조미료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0월 중국 조미료 기업의 전체 영업수입은 2,30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 성장하였음.
- 2015년 10월 간장 및 식초의 총 영업수입은 79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46% 증가하였음.
  - 2015년 기준 중국 간장 및 식초 매출액이 중국 조미료 전체 매출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 조미료 시장의 선두 기업 '하이텐(海天)'은 소비자의 수요를 분석한 다양한 제품 출시로 2015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하이텐은 최근 굴소스, 양념장, 식초, 청주 등 신제품을 개발하였음.
- 최근 중국 조미료 시장에서 과일식초와 유기농식용유가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음.
- 특히 과일식초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중국 여성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음.
  - 2014년 중국 과일식초 총 소비량은 13만 9,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8.8% 증가하였음.
- 중국 국민 1인당 과일식초 평균 소비량은 연 0.19kg임. 이는 일본의 1/9, 미국의 1/7에 불과한 수치이며 중국 과일식초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 과일 식초 수요 증가와 함께 중국 과일식초 대표 기업인 '탠디타이하오(天地壹号)'의 최근 3년 영업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음.
- 하이텐은 과일식초 생산 기술과 대형 유통망을 활용하여 올해 '과일식초 음료'를 개발·판매할 예정임.
-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비(非)유전자변형(Non-GMO) 식용유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
- 2013-15년 중국 식용유 시장에서 옥수수식용유의 매출액이 가장 높았음. 식품안전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 증가와 함께 Non-GMO 옥수수식용유 판매량도 증가할 전망임.
- 다양한 조미료를 사용하는 중국 요리의 특성상 중국 조미료 시장은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은 미용과 식품안전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여 중국 조미료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2016.08.09.)

□ 일본, 도요하시 시와 주식회사 EJ의 합작 주스 개발

- 일본 도요하시 시(豊橋市)가 지방자치제 110주년 기념으로 주식회사 EJ가 운영하는 도쿄 고지마치(麹町)의 'EJ JUICE & SOUP'와 합작하여 저온착즙주스를 개발하였음.
  - 이는 도요하시 시의 '지방자치제 110주년 기념 시민제안 이벤트로 채택된 것으로 지방농산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함.
- 'EJ JUICE&SOUP'은 2015년에 개점한 저온착즙 주스 및 스프 전문점으로 유기농이나 저농약재배를 하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여 전문 영양사와 조리사가 개발한 건강메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주식회사 EJ는 못생기거나 상처로 인하여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표준 규격에서 제외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생산자의 수익 향상과 식품손실 절감을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자료: 일본 글로벌농업뉴스(グローバル農業ニュース, 2016.08.01.)

□ 일본, 세상에서 가장 비싼 쌀로 기네스북 등재

- 도쿄 중앙구에 위치한 주요 쌀 제조업체 중의 하나인 토요 쌀(Toyo Rice) 주식회사는 일본에서 생산된 자사 브랜드의 쌀이 기네스북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쌀"로 등재되었다고 발표함.
  - 토요 쌀 주식회사가 생산한 쌀은 8월 11일, 소비세와 운송료를 포함하여 1kg당 1만 1,304엔의 가격으로 세계 기네스 기록에 등재됨.
  - 이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쌀'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일반 쌀의 약 30배가 넘는 가격임.
  - 7월 3일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세계 최고급 쌀' 30박스(박스당 840g)가 판매 완료됨.
- 토요 쌀은 다양한 쌀 종자를 개량하여 최고급 쌀을 생산하였음.
  - 2015년 국제 쌀 맛 평가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니이가타-코시히카리", "쿠마모토-니코마루"와 같은 최상급 쌀을 까다롭게 선택하여 혼합함.

- 토요 쌀은 엄선된 현미를 도정과정에서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미강을 벗겨내는 독특한 기술을 적용시킴.

※ 자료: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 2016.08.01.)

2. 아메리카

□ 미국, 스파클링 와인으로 활기 찾은 미국 와인시장

- 미국 경제 안정화로 소비자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비싼 가격대의 와인 소비도 증가함.
- 국제와인협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vine and wine)의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와인 총 소비량은 204억ℓ, 약 325억 병에 해당하는 높은 기록을 보임.
  - 특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중국 다섯 개 나라의 소비량이 세계 와인 총 소비량의 50%을 차지함.
- 국제와인협회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은 약 31억ℓ의 와인을 소비함.
- 미국의 와인 생산량 또한 꾸준하게 증가해 전년대비 0.5% 성장한 8%를 기록하며 세계 생산량 순위 4위를 차지함.
- 특히 독특한 맛과 낮은 도수, 저렴한 가격대의 특징을 가진 스파클링 와인은 미국에서 젊은 연령대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음.
  - 스파클링 와인은 미국에서 2015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미국 와인 수요 증가율은 1.4%에 그쳤지만 스파클링 수요는 4.1%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와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주요 와인 생산지인 캘리포니아에 방문하는 현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와인의 80% 이상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와인과 경치,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를 통해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음.
- Napa Valley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49마일(약 79km) 떨어진 와인 생산지로, 와인 열차, 경치가 빼어난 드라이브 코스 등을 통해 연평균 33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와인의 명소로 발전하였음.

- 미국의 주요 와인 수입국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있으며, 세 국가가 미국 와인 수입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68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내 와이너리 E&J Gallo는 2009년부터 미국 와인시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E & J Gallo의 대표 브랜드인 Barefoot Cellars Brand는 저렴한 가격과 백인 박스(Bag in Box) 스타일 포장을 통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
-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The Wine Group은 E & J Gallo의 성장세에 부딪혀 2011년부터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음.
  - 특히 대표 브랜드인 Franzia는 과거 중간 가격대 제품 형성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소비자의 와인 양극화가 심화되며 위기를 겪고 있음.
- 주요 산업에서 가장 높은 소비력을 보이고 있는 20-30대는 와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높은 와인 섭취량을 기록해 와인 판매업체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
- Wine Market Council에 의하면 20-30대가 미국 와인 소비층의 절반을 차지하며 캘리포니아 원산지 와인보다 수입 와인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와인 판매업체인 The Italian Job과 Marks & Spencer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도록 와인을 튤립 모양의 플라스틱 일회용 잔에 담아 파는 'The Tulip'을 각각 출시함.
- 또한, 맥주처럼 캔에 담아 들고 다닐 수 있는 와인 등 야외활동이 많고 편의성을 찾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 국순당의 과일맛 막걸리는 미국 국제 동부와인 품평회에서 베스트 오브 클래스 및 골드메달을 수상하며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입증함.
- 영천시의 와인 브랜드 '반하리' 또한 미국 첫 수출에 성공하며 한국의 전통주뿐만 아니라 와인 또한 경쟁력이 있음을 입증함.
-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 와인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지 박람회, 전시회 활용 및 현지 바이어 확보에 중점을 둔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소비자에게 낯선 한국 브랜드는 가격경쟁력 및 심플한 포장을 통해 가시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07.22.)

□ 미국, 식료품 유전자변형 표기 의무화

-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료품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식품(GMO) 함유 여부가 표기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 하원을 통과한 이 같은 GMO표기 법안에 29일(현지시간) 서명함.
- 이에 따라 미국 농무부는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 식품 제조업체들이 충족해야 할 기준을 명시한 제반 시행 규정을 2년 동안 설계할 예정임.
- 새 법률에 따르면 식품 제조업체는 GMO를 포함한 제품을 출시할 때 영문, 그림, 스마트폰용 코드 중 하나로 그 사실을 표기해야 함.
- 식료품제조협회는 "식품에 포함된 성분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투명해지는 시대가 열렸다"고 환영함.
- 미국 식료품업계는 자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75-80%가 GMO와 연관된 재료를 함유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GMO가 포함된 식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GMO함유 여부가 알권리로서 충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GMO가 해롭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음.
- 최근 과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 100여명은 GMO가 해롭다는 증거가 없다며 GMO를 반대하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음.

※ 자료: 매일경제(2016.07.30.)

3. 유럽

□ 러시아, 유럽산 수입금지후 60%이상 모조 유제품 유통

- 2014년 8월 이후 서방국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대한 경제 제재로 시행한 유제품 수출금지 조치로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유제품의 60% 이상이 모조품인 것으로 밝혀짐.
- 러시아 소비자단체 로스콘티롤에 따르면 이들이 최근 조사한 46개 러시아산 유제품 중에 60%가 모조품으로 밝혀졌으며, 육류제품인 경우 모조품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한 뉴스매체는 러시아산 코테지 치즈(cottage cheese)가 팝콘처럼 부서지고, 태울 때 회색 연기를 내며 오랫동안 타는 장면을 방영하여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음.
- 모조 유제품의 만연에 대해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럽산 유제품 수입금지 이후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우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원인이며, 이러한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 실제로 러시아 농업부문 시장조사기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 생산되는 연간 우유량은 800만 톤에 불과하며, 이에 반해 지난해 모조 유제품을 만드는 야자유 수입액은 25%가 늘었다고 발표하고 있음.
- 이 같은 소비자 불신이 확산되자 한 농산물 감시기구는 실제로 우유와 유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들이 조사한 모조 유제품에는 베이킹 소다, 분필, 비누는 물론 석고가루도 섞은 유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한편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서방국 유제품 금수조치가 자국산 낙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최근 당초 예정했던 금수 기간을 18개월 늘려 201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한바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6.07.18.)

□ 러시아, 육류 소비패턴 변화

- 주로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만을 소비하는 러시아인의 육류 소비패턴이 다양화되고 있음.
- 2014-15년 러시아 전체 육류 소비량의 약 98%는 가금류, 돼지고기, 쇠고기임. 러시아인이 주로 섭취하는 가금류로는 닭, 오리, 칠면조 고기가 있음.
- 러시아인의 가금류 소비량이 높은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임.
  -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쇠고기와 돼지고기 1kg의 평균가격은 각각 451루블(7달러), 344루블(5.4달러)로 닭고기 가격(129루블, 2달러)의 약 3배임.
- 한편 러시아에서 '미식가를 위한 요리'로 여겨지던 칠면조 및 토끼 고기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러시아 내 칠면조고기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한 20만 5,000

톤이었음.

- 현재 러시아에서 칠면조고기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5년 내 러시아의 연간 칠면조생산량이 약 5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러시아 인구 1인당 칠면조 소비량은 연 0.6㎏이었으나 2013년에는 0.88㎏, 2016년에는 1.5㎏로 증가하였음.
  - 칠면조고기 생산량 증가가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경우 러시아 인구 1인당 칠면조 소비량은 연 2.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농축산업 전문 분석기관(AB-Center)에 따르면 2015년 러시아 토끼고기 시장 규모는 1만 7,500톤으로 2014년 1만 6,600톤에 비해 5.4% 증가하였음.
- 최근 러시아의 토끼고기 소비량 증가율은 생산량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남.
  - 2014년 러시아는 중국, 헝가리 등에서 토끼고기를 약 4,400톤 수입하였음. 하지만 루블 평가절하로 2015년 러시아의 토끼고기 수입량은 1,600톤 이하로 감소함.
- 러시아 식품 기업 AFG National LLC, APK Vesta LTD 등은 약 35억 루블(약 6,000만 달러)을 투자해 토끼고기(현재 2,400톤 생산)를 7,400만 톤까지 증산할 계획임.
- AFG National LLC의 자회사인 LLC Krolik은 제20회 상트경제포럼(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SPIEF)에서 러시아 레닌그라드 주에 12억 루블(약 1,850만 달러)을 투자해 연 1,200톤 규모의 토끼고기 생산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음.
  - 공장은 2017년 가동 예정이며 약 15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개고기는 러시아의 전통 식재료는 아니지만 러시아 내 아프리카와 베트남 이민자가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음.
- 축산업은 러시아 수출육성정책의 핵심 산업임. 축산업에 대한 러시아 농업은행 및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러시아 투자자는 칠면조, 토끼 등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육류시장에 투자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07.22.)

4. 오세아니아

□ 호주, 생우 수입 시 잔혹행위로 베트남 수입업체 제재

- 호주 농무성이 호주산 생우를 수입해가는 베트남 업체가 축우에게 잔혹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디오 영상이 방영된 후 수출업무를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함.
- 이번 수출업무가 중단된 업체는 모두 8개 업체로 이들이 운영하는 대형 비육우 시설을 갖춘 목장 3개소, 도축장 18개소 등 모두 21개 시설에 대한 호주산 생우 수입 취급이 전면 중단되었음.
- 이번 공개된 비디오 영상에 대해 호주 수의사협회는 생우 취급이 대단히 혐오스럽고 충격적이라며 즉각적인 정부 개입을 촉구한바 있음.
- 호주 관련당국은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베트남에 수출되는 모든 생우들에 대해 개체 관리, 이력제 추적, 검증절차가 작동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이 같은 결과보고 체계 강화, 감시 감독기능 강화에도 나설 예정임.
- 한편 호주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 수출된 생우 300두에서 요네병이 발견되어 수출이 중단된 사례와 관련 전반적인 수출절차에 대한 미비점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자료: 낙농진흥회(2016.07.21.)

5. 아프리카

□ 탄자니아, 최대 25%까지 설탕 수입관세 대폭 인상 계획

- 탄자니아 설탕위원회(Sugar Board of Tanzania, SBT)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국내 설탕 소비량은 42만 톤으로 국내 생산량은 평균 30만 톤에 불과하여 약 10만 톤의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 주요 수입국가는 태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임.
-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 EAC)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설탕 수입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할 예정임.
  - 지난 2016년 6월 8일에 발표된 「2016/17 국가예산조치」에 따르면, 오는 7월 1

일부터 설탕 수입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할 예정임.

- 탄자니아 재정부 장관(Philip Mpango)은 설탕 수입관세를 매년 5%씩 인상하여 2018/19년까지 최대 25%로 증세한다고 밝힘.

▪ 탄자니에서는 저품질의 수입설탕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국내 설탕 생산자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저품질 설탕 수입 근절이 필요한 상황임.

- 실제 2014년 바가모요항을 통해 브라질산 설탕 15톤이 밀수입되다가 탄자니아국세청(TRA)에 의해 적발된 바 있음.

▪ 탄자니아 농업위원회(Agricultural Council of Tanzania, ACT)에 따르면 설탕 수입관세 인상으로 투자 증대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탄자니아의 설탕 수입관세 인상으로 청량음료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지난 3년간 8,000억 실링(약 3억 6,700만 달러)이 투자된 청량음료시장은 탄자니아 내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시켜왔으나, 상업용 설탕 수입관세 인상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탄자니아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현재 설탕 가격은 1kg당 1.05달러에서 최대 2달러까지 판매되며, 약 3배 이상 설탕 가격이 급등함.

- 설탕 수입관세 인상으로 설탕뿐만 아니라 소다 및 주스 등 청량음료, 과자류, 유제품류 등의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탄자니아에서 생산되는 설탕량은 국내 설탕 수요와 약 17만 톤의 상업용 설탕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불가피하게 설탕 수요의 부족분을 수입해야 함.

- 이에 설탕 수입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국민소득 및 정부수익 감소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생산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 축소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탄자니아의 펩시 제조사인 SBC 대표(Avinash Jha)는 "탄자니아는 상업용 설탕을 생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탕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증세를 시행하는 것은 근거 없고 비현실적인 조치이며, 이로 인해 설탕은 가장 비싼 원재료가 될 것"이라고 비판함.

▪ 탄자니아 정부는 설탕 수입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부문에서도 증세 조치를 계획 중임.

- 세금 인상으로 물가가 급증하고 중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턱없이 부족한 설탕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공장 건설과 기술지원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탄자니아 전 대통령(Jakaya Kikwete)은 2030년까지 10여 개의 새로운 생산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탄자니아 정부는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향후 중고의류 수입제한 조치 등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07.12.)

□ 짐바브웨, 생필품 수입제한조치에 반정부 시위 격화

▪ 2015년 6월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자국 화폐의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감당하지 못해 자국 화폐 사용을 중단하고 남아공의 랜드 및 미국 달러를 통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은행의 자금부족으로 예금 인출이 제한 또는 금지돼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자금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짐바브웨는 과거 발달된 제조업 및 대규모 상업영농을 바탕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공 다음으로 산업화의 기반과 국제 경쟁력을 잘 갖춘 것으로 평가됐었음. 하지만 1999~2008년 짐바브웨는 경기침체로 산업이 무너지고 점차 수입에 의존하게 됨.

▪ 경찰과 치안부대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급여 지급이 2주 넘게 지연되자 2016년 7월 5일, 짐바브웨 공무원이 파업 및 시위에 돌입하였으며, 시위과정에서 100여 명이 체포됨.

- 이에 짐바브웨 정부는 7월 중순에 지급 예정이었던 6월분 급여를 즉시 지급함으로써 사태 마무리를 시도함.

▪ 최악의 가뭄사태로 400만 명이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짐바브웨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기본 식품 및 생필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발표함.

▪ 짐바브웨 정부는 국내 내수산업 보호 및 수입으로 인한 외화유출 금지를 골자로, 2016년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기본 식품 및 생필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 수입금지 품목은 식품(시리얼, 마요네즈, 치즈, 과일 및 채소 통조림, 감자칩,

커피크림 등), 화장품, 중고 타이어, 철강제품 및 천 등이며, 수입제한조치 대상 국가는 남아공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임.

- 금지품목 물품의 수입을 원하는 수입업자는 사유를 명시해 특별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 다수의 현지 기업은 수입 제한조치를 환영했으나 현지 기업들의 생산능력이 낮아 생필품 공급부족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반면 남아공과 짐바브웨를 오가며 소규모 유통을 해오던 수백 명의 상인이 Beitbridge 국경에서 시위를 벌임.
-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짐바브웨 정부는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 매월 1회, 1인당 한정된 양의 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음.
  - 짐바브웨 정부는 매월 1회, 1인당 반입 가능한 품목의 수량을 커피 크림 1㎏, 캠퍼 크림(Camphor cream, 보습크림) 180㎖, 시리얼 2㎏, 잼 및 땅콩버터 2㎏, 세탁세제 4㎏, 비누 24개, 주스원액 4ℓ 이하로 제한하였음.
- 공무원 급여지급 지연 및 수입 제한조치로 불거진 반정부 시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짐바브웨 국내 정세 불안성이 가중되고 있음.
- 또한 짐바브웨 정부는 수입제한조치로 인해 관세 수입을 잃게 됨에 따라 재정난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2016년도 1분기 짐바브웨 정부의 세수 7억 2,500만 달러 중 21%가 수입 관세였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07.18.)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 김승애 인턴

E 03 세계농업 제192호 (2016. 8.)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6년 8월 16일
발 행 2016년 8월 16일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팩시밀리 061-820-2211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61-332-7120 팩시밀리 061-333-2247
E-mail: dongyt@chol.com

ISSN 2288-5587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